



2017년
춘계 공동학술대회

한국기업법학회 / 한국상사법학회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7. 04. 21.(금) 13:00~18:00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실

주최 | (사)한국기업법학회 / (사)한국상사법학회 / (사)한국상사판례학회

세 부 일 정

진행사회: 최영주 교수(부산대)
학술사회: 노혁준 교수(서울대)
육태우 교수(강원대)

- ◆ 등 록 : 13:00 - 13:30
- ◆ 개회식 : 13:30 - 13:50
- ◆ 개회사 : 임재호/김효신/김재형 학회장
- ◆ 환영사 : 맹수석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 ◆ 기조발제 및 주제발표 : 13:50 - 18:00
 - 기조발제 : 13:50 - 14:20
 - 발표자 : 최준선 교수(성균관대 명예교수)
상법 교육의 과거, 현재, 미래
 - 단체사진촬영 : 14:20 - 14:30
 - 제1세션 : 14:30 - 15:20 사회 : 송종준 교수(충북대)
 - 발표자 : 안성포 교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과목구성과 상사법 교육의 발전방향
- 자본시장법, 보험법, 해상법, 어음수표법의 위기 속에서 -
 - 토론자 : 정준우 교수(인하대)
: 최민용 교수(경북대)
 - 제2세션 : 15:20 - 16:10 사회: 맹수석 교수(충남대)
 - 발표자 : 김흥기 교수 (연세대)
일본 법과대학원의 교육현황과 신사법시험의 출제경향 및 시사점
- 상사법 분야를 중심으로 -
 - 토론자 : 박인동 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
: 강영기 박사(고려대)
 - Coffee break : 16:10 - 16:20
 - 제3세션 : 16:20 - 17:10 사회 : 김택주 교수(국민대)
 - 발표자 : 이중기 교수(홍익대)
학부 상사법 교육의 발전방향
- 홍익대학교의 경험을 중심으로 -
 - 토론자 : 최한준 교수(순천향대)
: 김한중 교수(성신여대)
 - 제4세션 : 17:10 - 18:00 사회 : 강희주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 발표자 : 천경훈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 변호사시험
 - 토론자 : 윤영신 교수(중앙대)
: 정응기 교수(충남대)
- ◆ 폐회식 및 만찬 : 18:00 - 20:00 [만찬장소 : 충남대학교 영탑홀]

목 차

■ 기초발표

- 상법 교육의 과거·현재·미래 최준선 7

■ 제1섹션

- 법학전문대학원의 과목구성과 상사법 교육의 발전방향
 - 자본시장법, 보험법, 해상법, 어음수표법의 위기 속에서 – 안성포 23
- 토론자 : 정준우 교수(인하대) · 최민용 교수(경북대)

■ 제2섹션

- 일본 법과대학원의 교육현황과 신사법시험의 출제경향 및 시사점
 - 상사법 분야를 중심으로 – 김흥기 57
- 토론자 : 박인동 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 · 강영기 박사(고려대)

■ 제3섹션

- 학부 상사법 교육의 발전방향
 - 홍익대학교의 경험을 중심으로 – 이증기 111
- 토론자 : 최한준 교수(순천향대) · 김한중 교수(성신여대)

■ 제4섹션

-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 변호사시험 천경훈 133
- 토론자 : 윤영신 교수(중앙대) · 정응기 교수(충남대)

■ 기조발표

상법 교육의 과거 · 현재 · 미래

최 준 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상법 교육의 과거·현재·미래

최준선*

I. 科擧試驗이 조선시대 書堂, 書院, 成均館의 수업과 교육을 결정했다

1. 科擧試驗 概要

시험이 수업과 교육을 결정한다. 인간은 놀기 위해 태어난 동물이고, 놀기 위한 시간도 이미 부족하므로 law school학생들에게는 눈앞에 닥친 시험 외에 인격완성과 같은 관념은 사치에 불과하다. 반드시 완벽하게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일은 빨리 끝낼수록 좋은 것이다. 아무리 시험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해도, 아무리 훌륭한 인격, 균형감각, 폭넓은 지식, 변호사로서의 소양과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해도 공허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조선시대에는 고을의 首領(사또)이 民·刑事 재판을 진행했다. 사또 재판에 불복하면 관찰사가 지명한 수령이 다시 재판을 했으며, 이에 불복하면 한양의 掌隸院이나¹⁾ 漢城府에 上告했다. 오늘의 법무부에 해당하는 刑曹가 있었고, 실무를 담당하는 관리를 郎廳이라 했으며, 형조관리를 교육하는 律學廳이 있었으며 그 교수는 律學教授(중 6품)라 했다. 암행어사나 사헌부에 상고할 수도 있었다. 안동 의성 김씨 집안 고문서 決訟立案은 1583년 소송과정과 판결 내용을 명시한 판결문이었는데, 元告(원고) 윤원, 隻(피고) 임경수가 등장한다. 소장은 所志라 했고, 재판정을 訟庭이라 했다. 광대들의 ‘형조낭청놀이’에서 보듯이 無錢有罪 판결이 흔했다고 하며, 최후의 수단으로 고을 앞을 지나는 王에게 달려가 하소연을 하기도 했다 한다. 세 번의 소송에서 두 번 승소하면 다시 소송할 수 없다는 삼도득신법(三度得伸法)이 있었다. 법전은 經國大典, 소송지침서는 詞訟類聚, 소송 건수는 연 600여건에서 어떤 해는 1만여 건에 이르렀다고 한다.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1) 조선시대 노비의 부적(簿籍)과 소송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정3품 관청. 사헌부(司憲府)·한성부(漢城府)와 더불어 사법삼사(司法三司)라 하였다.

사또를 비롯하여 관리를 선발하는 조선시대에 인재등용문이었던 科擧²⁾ 과목은 文科와 武科로 나뉘었다. 겨우 33명을 뽑는 과거시험은 3년마다 보는 것이 원칙(式年試 = 大比科)이었으며,³⁾ 물론 중간 중간 여러 가지 이유로 특별한 기회를 부여하기도 했다. 경기도 파주사람⁴⁾ 파주의 특산물 “밤”을 가리키는 栗谷 李珥은 13세 때 초시에 합격하고 29세에 대과에 합격하여 과거시험에 9번이나 합격한 공부의 達人이었다고 한다. 初試는 평균 34.5세에 합격하며,⁵⁾ 大科는 36.4세에 합격했다 한다. 文科는 文科(大科)와 生進科(小科 = 司馬試)로 나뉘는데 小科는 生員科와 進士科로 나뉜다. 드물게는 83세, 85세, 심지어는 90세에 합격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⁶⁾ 최연소 합격자는 15세, 17세였다고 한다.⁷⁾

대략 5세부터 초등교육기관인 書堂에서 공부하다 중등교육기관인 서울의 四學,⁸⁾ 지방의 鄕校, 陶山書院이나 紹修書院 같은 書院에서⁹⁾ 큰 스승을 만나 공부한 다음 初試에 합격하면 하급 관리가 되거나 成均館에 입교하여 대과를 준비한다. 대과는 성균관 출신만이 응시할 수 있었다. 7년 내에 합격하지 못하면 퇴교처분을 받았다. 과거시험에 합격해도 발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 경우 그냥 生員과 進士라는 호칭을 달고 살게 되었다고 한다. 시험을 치러 가는 길은 聞慶(기쁜 소식을 듣는다)을 거쳐야만 합격한다는 전설이 있다. 평균 3만명 ~ 6만명이 시험을 치는데, 당일 채점이 불가능하여 선착순 300명만 채점하는 편법이 등장했다고 한다. 初試 합격인원은 전국에서 총 240명을 선발했는데 성균관에 등록한 후 300일 이상 기숙한 사람 중에서 50명, 한성부 40명, 경기도 20명, 충청도 25명, 전라도 25명, 경상도 30명, 강원도 15명, 평안도 15명, 황해도 10명, 함경도 10명 등 지역별로 정해져 있었다고 한다. 復試는 會試라고도 했는데 여기서 33인을 뽑았으며, 마지막으로 殿試는 임금 앞에서 보는 시험으로 復試에서 합격한 33인을 대상으로 등급을 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떨어지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6만명 중 최종적으로 33명만 합격했다고 하므로 Hell Chosun이 바로 이때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이렇게 장황하게 조선의 과거를 이야기 한 것은 도대체 시험의 내용이 어떠했나가 궁금했기

-
- 2) 시험과목에 따라 인재를 선발하여 擧用한다는 뜻. 고려 光宗 때 중국인 雙冀의 건의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되었고 함.
 - 3) 중국 주(西周) 시대의 사회조직과 정치제도에 대한 기술과 해설을 담고 있는 유학의 경전인 周禮에 “3년은 ‘大比’로 이 해에 그 덕행과 道藝를 고찰하여 현명하고 유능한 자를 뽑아 권리로 등용한다”는 구절에서 유래. ‘大比’란 향시를 말하는데, 과거의 제1차 시험을 말함. 명청(明清)대에 3년에 한 번 각 성(省)에서 실시된 과거 시험으로, 합격자는 거인(擧人)의 칭호를 받음. 式年試는 선조 36년 1603년 이래 3년마다 실시한 과거시험.
 - 4) 태어난 곳은 신사임당의 친정인 강릉 오죽헌.
 - 5) 퇴계 이황은 3번 실패후 11년만에 34세의 나이로 합격.
 - 6) 정순교 85세에 합격, 조수삼(1762~1849)과 박문규 83세 합격, 1861년(철종 12년) 때 김재봉과 1888년(고종 25년) 때 박화규는 90세에 합격했다 함.
 - 7) 고종 4년인 1866년에 합격한 15세의 “이건창”, 장원급제는 1854년 17세에 합격한 “박호”라고 한다.
 - 8) 위치에 따라 중학(中學)·동학(東學)·남학(南學)·서학(西學)이 있었는데, 태종 11년(1411)에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고종 31년(1894)에 없앴다.
 - 9) 서원은 전국의 648개가 있었으며, 9대 서원으로 소수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병산서원, 필암서원, 돈암서원, 도동서원, 남계서원, 무성서원을 말한다.

때문이다. 시험이 수업과 교육을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2. 小科試驗科目

소과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 (1) 生員試: 역사 또는 경전에 관한 문제
- (2) 進士試: 사회 폐단 또는 논란에 관한 문제
- (3) 訓練院試: 병법 또는 전쟁사에 관한 문제

3. 大科 試驗科目과 內容

大科는 文科와 武科로 구분된다. 시험 문제와 응시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文科(文科) : 시대의 책무, 폐단에 관한 문제 : 생원, 진사, 전현직 문관, 성균관 문과 유생
- (2) 武科(武科) : 국방, 군사, 안보에 관한 문제 : 장재, 전현직 무관, 성균관 무과 유생

4. 大科 文科의 試驗의 內容

태종 7년 1407년 문제(일부)

올바른 신하를 얻기 위한 방법은?

논밭에서 거둬들일 세금 책정 기준은?

號牌제도 개선방향을 논하라.

冠婚喪祭의 예는 중국 제도를 따라야 하는가?

태종 14년 1414년 문제(일부)

水災와 旱災 대비책은?

세종 11년 1429년 문제(일부)

불합리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문제해결방법을 논하라.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원만한 처리방법을 논하라

세종 16년 1434년 문제(일부)

풍문탄핵의¹⁰⁾ 폐단을 막을 방법을 논하라.

세종 18년 1436년 문제(일부)

북쪽의 오랑캐와 남쪽의 왜구를 제어할 방법을 논하라.

10) 風聞彈劾 - 소문만으로 해당 고을의 관리를 조사하게 하는 제도.

단종 1년 1453년 문제(일부)

민생안정대책에 대하여 이를 강구할 근본대책을 모조리 논하라.

성종 3년 1472년 문제(일부)

독도문제 처리방법은?

연산 4년 1498년 문제(일부)

현 시대의 많은 폐단에 대하여 대책을 논하라.

이와 같이 문제가 매우 현실적인 것이었다.

II. 근대 및 사법시험시대, 법관시험이 법학 수업과 교육을 결정했다

1. 개화기 官費 일본유학생들

(1) 1900년대 초 한국의 개화기에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던 분들이 귀국하여 상법 교재를 저술하였다. 李冕宇(商法總論 및 會社法), 張憲植(李冕宇著 商法總論의 부록으로 상행위 추가), 俞致衡(海商法), 申佑善(魚驗法論), 金祥演(商法總論), 安國善(商行為法), 金祥演(會社法) 등이 있다.¹¹⁾

(2) 1905 普成專門學校 창립 당시 필수 교과목에는 초창기에는 상법총론만을 강의하다가, 곧이어 상행위법, 회사법, 어험법(어음수표법) 내지 해상법까지 설강되었다.¹²⁾

(3) 1895년 당시 법원이었던 평리원 내에 설립된 관립 단기법률교육기관인 법관양성소는 초기 6개월만에 법관을 양성하는 기관이었지만, 차츰 1년 6개월, 2년, 1907년에는 3년으로 연장되었다.¹³⁾ 1909년 명칭이 법학교로 개칭되었다. 법학교는 2010년 한일 병합 조약 체결 후 경성전수학교로 개편되었으며, 1922년에 경성법학전문학교가 되었고, 이것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연원이 되었다.

초기에는 법학통론,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기타 현행법률 및 연습을 강의하였

11) 崔鍾庫, 傳統的 韓國法學과 西洋法學의 初期接觸, 『法史와 法思想』, 1980, 383-420면; 崔鍾庫, 開化期の 法學教育과 韓國法律家の 形成 - 『法官養成所』와 『普專』의 敎科와 敎授陣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22권 1호(1981), 68~69면; 崔鍾庫, 開化期の 韓國商法學, 서울대학교 법학, 제26권 1호(1985), 205면 이하 등 참조.

12) 김정호, 고대 법대와 한국법학의 발전 상사법분야(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술사소재), 2011, 고려대학교 출판부, 281~290면.

13) 김효전, 『법관양성소와 근대한국』, 소명출판, 2014 참조.

으며, 상법 과목이 없었으나 법관양성소가 개편되면서 정규 교과목은 법학통론,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상법, 국법학, 행정법, 국제공법, 국제사법, 명률(明律), 경제학, 실무연습, 외국어, 한문, 수학, 부기, 및 체조 등이었으며, 여기서 비로소 상법이 정규 과목으로 등장한다.¹⁴⁾

다시 1908년 법관양성소 과목에서도 상행위법, 회사법, 상법총칙, 어험학(魚驗學)이 필수과목으로 들어가 있었다. 2017년 현재 상법은 1908년도 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하겠다.

(4) 1906년 11월 6일에는 법부령 제5호로 법관전고(法官銓考)세칙이 제정되고, 고과목(考課目)에 행정법대의, 민사소송법,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상법대의, 국제법대의, 경제학대의로 정하여 상법도 시험과목에 들어가게 되었다.

(5) 1885년에 설립된 廣惠院과 1886년에 설립된 경신학교를 모체로 1917년에 설립된 延禧專門學校의 1918년 교과목을 보면 상법과목으로 총칙, 회사, 상행위, 수형법이 개설되었으며, 1924년 경성제국대학에서 상법과목이 2개가 개설되었다고 한다.¹⁵⁾ 1924년 선택과목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생성되어, 연희상과대학에 상법이 선택과목이 되어, 법학과 외에 상과대학에서도 상법강의가 개설되었다.¹⁶⁾

(6) 이와 같이 근대 법학교육에서도 상법의 각 분야는 법학교육의 핵심 필수과목이었으며, 고시의 주요과목이기도 했다. 2000년대의 국가의 부는 공무원도 정치인도 아닌 바로 기업이 일군다는 엄연한 사실 앞에 상법의 멸시는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고 하겠다.

2. 1962 상법 제정 이후

1963년 제1회 사법시험 이후 사법시험 시대에는 상법이 그런대로 대접을 받았다. 사법시험 후사법의 하나로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과 함께 상법이 중요 시험과목 중 하나로 인정되었다. 사법시험 2차시험의 1/7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출제비율도 회사법에서 거의 고정적으로 50점문제가 출제되고, 상법총칙·상행위법 20점~30점, 어음·수표법 20~30점, 보험법이 20~30점의 비율로 해마다 교차 출제되었다. 그러므로 이때는 상법 전반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고, 상법총칙부터 보험·해상법까지 필수과목으로 유지되었다.

14) 법관양성소 관련 자료는 梁承斗, 法官養成所에 관한 小考, 世林韓國學論叢 第1輯, 1977; 田鳳德, 近代司法制度史(2), 大韓辯護士協會誌, 1972, 5, 會報 3호; 鄭熙喆, 股本會社(企業法の 行方所收), 1991, 108면 참조.

15) 정선이, 경성제국대학연수, 2002, 109-110면.

16) 연세법학 90년사(1921-2011), 2011, 79-80면.

Ⅲ. 현대 변호사시험이 Law School 수업과 교육을 결정했다

1. 2009년 Law School제도의 도입 이후의 법학교육

현재의 변호사시험을 논의한다면 마땅히 재학생 수와 합격비율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지방소재 law school의 경우 해당 지역 지방대학 출신을 20% 이상 선발하는 지역할당제로 인하여 지방대학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포함한 입학생 선발제도와 선발인원수,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은 변호사 수급과 관련이 있고,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 간에도 의견차이가 심하여 오늘 제가 다루어야 할 주제를 벗어나므로 이 문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겠다.

아무튼 2009년 한국 법학은 law school제도의 도입으로 paradigm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Law school제도의 도입은 사례연구 방식 교육의 강화를 통한 분쟁 해결 능력 배양하고, 지식의 일방적 전수보다는 리갈 마인드(legal mind)의 함양을 위한 문답식·토론식 수업과 법학실무교육을 병행하며, 각 law school은 특성화주제를 선택하여 예컨대 기업법무, 국제통상, 지식재산, 세법, 금융법, 인권법, 여성법 등 특성화 분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출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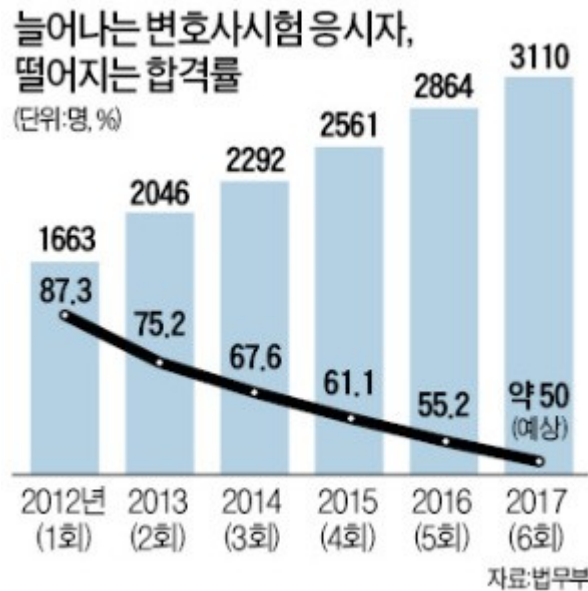
문답식·토론식 수업방식, 이른바 Socrates¹⁷⁾ 교육방식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례연구 방식 교육이 합당한 law school의 교육 방식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의 변호사 시험제도 아래서는 결코 실행할 수 없는 방식이다. 한국의 현재 law school system 하에서는 토론할 시간이 없다. 헌법, 민법, 형법 시험이 선택형으로 치루어지고 leading case라는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미국이라면 이 방식이 통할지도 모르겠다.¹⁸⁾

지금의 한국 law school system은 설계가 완전히 잘못되었다. 학생들은 3학년에 진학하면 갑자기 당황하게 된다. 2학년말까지 중요 법률과목에 대한 1회독도 마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Law school이 출범하고 10년이 되는 현시점에서 투자 대비 교육서비스의 질이 과연 학

17) 소크라테스(그리스어Σωκράτης: 기원전 469년 - 기원전 399년 5월 7일)는 기원전 469년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태어나 일생을 철학의 제 문제에 관한 토론으로 일관한 서양 철학의 위대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펠레토스, 아니토스, 리콘 등에 의해 '신성 모독죄와 청년들을 타락시킨 죄'로 기원전 399년에 71세의 나이로 사약을 마셔 자살을 했다.

18) 다만 미국도 더 이상 판례법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성문법 수가 압도적으로 증대되어, 현재 미국의 법체계는 이제 대륙계 법질서와 거의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변화되었다. 또한 "권위 있는 선례는 구속력이 있다"는 선례구속원칙은 "충분히 설득력 있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다(dicta "may be followed if sufficiently persuasive" but are not binding)는 것이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이다. Central Green Co. v. United States, 531 U.S. 425 (2001); See, Humphrey's Executor v. United States, 295 U. S. 602, 627 (1935) (dicta "may be followed if sufficiently persuasive" but are not binding). See also U. S. Bancorp Mortgage Co. v. Bonner Mall Partnership, 513 U. S. 18, 24 (1994). 판례가 생성되지 않은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흠결부분을 성문법이 대체할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도 성문법의 기능이 대륙법계만큼이나 중요하게 되었다. 류병운, "바람직한 법학 교육방식 : 현 law school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서강법률논총』 제3권 제1호, 2014, 155면.

보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응시자 대비 50% 대의 합격률로 law school은 길을 잃었다는 평가가 정확한 것이다.¹⁹⁾



2. LEET 시험의 문제점

필자가 보기에는 우선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LEET) 시험부터 틀렸다고 본다. 이 시험과 학업성취도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이미 증명되었다. 이 시험이 누구를 위한 시험인지, 무엇을 위한 시험인지 알 수 없다. 법학지식을 전혀 물어볼 수 없는 LEET 시험문제로 인하여 legal mind를 흡수할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을 대거 입학시키는 문제가 있다. 이것이 law school 입학전형 전체에 대한 의혹과 불신으로 이어지며, 전혀 법학에 대한 소양도 없는 학생이 LEET 시험 잘 보아 버젓이 law school에 진학하여 3년 내내 불안한 시기를 보내고 결국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비극을 만들어 냈다.

법학과를 나온 학생에게는 LEET 면제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LEET에는 법학개론 수준의 문제를 1/3 가량 출제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법학개론 강의가 모든 대학의 필수 교양과목처럼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많은 대학에서 ‘생활과 법률’, ‘여성과 법률’ 등의 이름으로 허접한 내용만 강의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대학에서는 법학개론 또는 그 유사과목 자체가 개설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성균관대학교). 그러니 법과대학 대학원에 다니는 박사과정 학생이나 졸업생도 강

19) 한국경제신문 “길 잃은 로스쿨 ... 특성화는 꿈도 못 꿰 - 변호사시험 ‘2명 중 1명 낙방’ ... ‘변시 학원’ 전략 우려”, 이상엽/고운상 기자. 입력 2017-04-11 18:52:46 | 수정 2017-04-12 03:39:58 | 지면정보 2017-04-12 A31면.

의를 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학문 후속세대 양성에도 중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또한 법학개론조차도 배우지 않은 대학생이 법률개념이나 법적 의식도 없이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어, 법을 경시하고 경제논리로 세상을 살아가고 기업을 운영하는 등, 한국에서는 이미 법치주의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타 전공 학생도 법학개론 정도는 수강한 후 law school에 진학하는 것이 법학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

3. 상법과목의 위축

한 가지 크게 주목할 것은 변호사 시험시대에 와서 상법은 크게 위축되었는 것이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이 2009년 8월 28일 공포됨에 따라 변호사시험법 시행일인 8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험의 합격 결정 방법에서 선택형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배점비율은 1대 3이다. 공법(헌법·행정법) :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 : 민사법(민법·상법·민사소송법) : 선택과목의 배점비율은 1 : 1 : 1.75 : 0.4 이다. 선택과목은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등 7개 과목으로 규정했다. 총점은 1,660점이다. 이 중에 상법의 비중은 민사법 제3문 100점과 객관식 19~20문항 내외 40점 정도로 결국 140점 정도이다. 변호사시험 전체에서 상법의 비중은 겨우 8.43%밖에 되지 않는다. 문제는 8.4%가 아니라 회사법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대한 공부는 아예 무시하게 된 점이다. 나머지 상법총칙, 상행위법, 어음수표법, 보험법에서 객관식 6~7문제만 출제되므로 이들 문제를 전부 오답이 되더라도 당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분야에 대한 공부는 아예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총점 1,660점 중에 회사법만 100점이고, 선택형 문제 40점 정도로, 과거 사법시험에서 1/7, 14%비중에서 140/1660의 0.84% 비중으로 축소되었다. 상법은 사법시험이 변호사 시험으로 전환되면서 최대의 피해과목이 되었다. 시험이 수업과 교육을 결정했다. 국가간의 무역이 중요시되는 한국에서 상법이 무시되는 참사를 가져왔다. 한국 상법학의 위축과 왜소현상을 가져왔다. 현대 국가의 부는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아닌 기업이 창출한다. 기업을 배우지 않고는 국가의 부흥을 꿈꿀 수 없다. 상법을 이렇게 홀대하고서야 한국인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는 오기 어렵다.

상법 홀대로 상법상의 legal mind형성의 기회는 거의 없어졌다. 경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팍한 요약본 상법교과서만 파고들어서는 경제현상에 대한 이해와 기업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통합적 사고가 불가능해졌다. 상법에 대하여 무지한 변호사만 양산하는 실정이다. 학문 후속세대 양성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게 되었다. 상법교수가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누구도 상법교수가 되기를 주저하고 민법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상법총칙과 상행위법, 어음수표법, 보험법과 해상법은 전혀 듣지 않은 학생이 많고, 보험법과 해상법은 강의가 개설되는 대학을 찾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것은 상법 과목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를 망치는 일이다.

IV. 미래의 변호사시험이 미래의 Law School 수업과 교육을 결정한다

1. 미래의 변호사시험과 법학교육

사법개혁위원회 건의문(2004.10.4.)에 따르면 law school 제도 도입취지에 대하여, “21세기의 법치국가를 뒷받침할 장래의 법조인은, 국민의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 및 자유 민주 평등 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보다 전문적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바람직한 법학 교육방식을 갖추고, 개방되어 가는 법률시장에 대처하며 국제적 사법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적인 경쟁력과 다양성을 지녀야 한다.”고 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의 변호사시험이 교육을 왜곡하여, 현재 law school의 교육내용은 본래의 목표와는 완전히 벗어나 있다.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교육내용은 법률서비스 자체에 대한 시장의 수요에 따라야 할 것이다. 현대는 변호사에게 전 지구 어디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business상의 문제해결능력을 요구한다. 미국의 law school 수업은 global business에 능한 인재 양성이 목표인 것처럼 보인다. 지구는 점점 작아지고 있고 세계 시장은 점점 통합되어 가고 있다. Global business 감각을 집중양성하는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현재 law school의 법학교육 내용은 개념법학의 바탕위에 헌법, 민법, 형법의 1차적 교육과 변호사 시험과목으로서 이들 과목에 대한 누차 반복교육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몇 回讀이나가 중요하게 되었다. 3년 내내 이들 기본과목에 집중하는데도 헌법, 민법, 형법 교수들은 강의시간이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균관대학교의 경우 회사법도 단 3학점, 3시간 강의만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교과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개념법학 논리”는 더 이상 law school 체제에서는 맞지 않다. 사례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 문제를 관통하는 원리, 즉 legal mind를 발견하게 해야 한다. 교수는 수업시간의 부족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분쟁해결에 목표를 두고 그와 관련된 쟁점과 논리를 압축하여, 쉽고 명확하게 학생에게 전달해야 한다. Socrates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상법 내 과목과 학점 수는 현실적 수요와 경제적 비중(economic weight)에 따라 재구

성되어야 한다.

종래 한국 법학교육을 지배했던 개념법학은 완벽한 개념체계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 국회가 만든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할 엉터리 법률체계로 인하여 개념법학은 점점 그 효용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사례해결을 목표로 하는 교육(Problem Based Learning)을 통한 실무교육을 강화하되 모의법정과목은 필수과목화 하여야 한다. 현재도 모의 법정은 필수로 되어 있으나 성적은 P/F로 채점하도록 되어 있고, 한 학기 중 몇 개 팀만이 實演을 하고 나머지는 참관하면 학점을 받는 식으로는 곤란하다. 모든 학생에게 엄밀하게 점수가 주어져야 한다.

“개방되어 가는 법률시장에 대처하며 국제적 사법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적인 경쟁력과 다양성”이라는 본래의 법학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국제기구와 국제기업(다국적 기업)과 국제도산, 해운, 국제금융, 국제투자 등 국제거래법, 국제통상법,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의 법학교육은 세계화 적응 능력도 빵점이다. 세계화에 발맞추어 적극적으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보다는 전차 개방되는 법률시장에 방어적으로 대응할 뿐이다. 국제법(국제경법), 국제거래법은 변호사 시험 선택과목일 뿐이다. 이는 빠르게 통합되어가는 국제사회, 대외 의존도가 80%에 육박하는 우리 경제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국제비즈니스에 대한 법률을 가르치려면 먼저 국내 기업법에 대한 교육이 크게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이해 아래 경제, 경영 및 기업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상법의 이념부터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자유시장경제에서의 기업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인식부터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 상법 교수 중에는 경제와 경영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이 전혀 엉뚱한 propaganda를 외치는 사람도 있다. 상법 교수라면 적어도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이더라도 인간의 본성에는 덕성과 선악을 감지하는 ‘도덕 감정’이 있으며, 이와 같은 덕성은 시장에도 존재한다는 「도덕감정론」이나²⁰⁾ 분업, 특히 절대 우위에 있는 상품 생산으로 국가 간의 분업이 을 중요시한 이론, 즉 「국가의 부의 본질과 원인에 대한 고찰」 정도는²¹⁾ 읽어보고 상법을 강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변호사 시험은 다음과 같이 개편되어야 한다.

첫째, 1차시험제도가 부활되어야 한다. 1차시험에서는 헌법, 민법, 형법만을 객관식으로 평가해야 한다. 객관식 선택형 1차시험에는 법전 없이 시험을 보게 해야 한다.

20)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1759.

21)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 of the Wealth of Nation, 1776.

둘째, 1차시험 합격자는 2회에 한하여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그 과목은 종합시험과목으로서 논점의 발견, 민형사책임 분석 및 소송수행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문제로 essay식으로 답하도록 출제되어야 한다. 예컨대 비즈니스로 인한 국내법적인 문제와 국제법적인 문제, 형사상의 문제와 소송상의 쟁점을 묻는 종합문제가 출제되고, 2차시험 1문 출제에 민법, 형법, 상법, 공법, 소송법 교수가 함께 참석하여 각 쟁점을 엮어 넣어야 한다. 특히 상법과 행정법 등 이른바 後四法 과목의 쟁점이 반드시 하나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요 비즈니스법과 세계화에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법률과목 및 실무능력을 측정하는 과목을 변호사시험의 2차 필수과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답안은 컴퓨터로 작성하고 시간 종료 후에는 더 이상 입력이 불가능하도록 프로그램 되어야 한다. 작성된 답안지는 그날 중에 중앙서브에 전송함으로써 시험이 완료되게 하여야 한다. 더 이상 필기속도 측정시험이거나 예쁜 글씨 경영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판사, 검사, 변호사 모두 컴퓨터로 작업하고 있으며, 미국 변호사 시험의 경우도 수 만명이 응시하는 대규모 시험에도 모두 컴퓨터로 진행되는 것을 한국은 왜 할 수 없다는 말인가. 제6회 변호사 시험에서 모 대학에서 법무부 직원의 실수로 1분 일찍 종료 종을 울려 시간부족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발생했고, 그 대학 모든 응시자들에게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결국 7명의 추가합격자를 낸 것은 참으로 후진적인 현상이라고 하겠다. 1분 일찍 답안작성을 종료하고 대기하고 있던 수험생에까지 모두 5점이 부여됨으로써, 구제된 7명 중에는 뜻하지 않게 합격한 행운아도 있을 것이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law school제도가 미국식 law school제도를 도입했으면서도 시험은 미국식과는 영 판판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미국식 law school제도를 도입하여 3년간 수업하게 되어 있는데, 시험은 사법시험제도를 답습하고 있고, 객관식과 주관식을 혼용하고 있으며, 공법, 형사법, 민사법 종합실무시험까지 치러야 한다. 사법시험과 비교해 보면 Law School 수업기간은 3년 뿐인데 변호사 시험 문항 및 난이도는 획기적으로 높아졌고 시험시간은 크게 단축되었다. 변호사시험이 사법시험보다도 훨씬 어려워진 것은 Law School 입학생에 대한 응징이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이다.

미국은 기본법 7과목을 객관식 선택형으로 시험보는 ① “전미 통일 택일 시험”(MBE: Multistate Bar Examination), ② 법률 지식을 활용하여 케이스를 해결하는 Essay, ③ 변호사로서의 lawyering skills을 테스트하는 PT(performance test)로 구성되어 있고 총 3일간 실시된다.

① MBE 과목은 Constitutional Law (헌법), Contracts (계약법), Torts (불법 행위

법), Real Property (부동산 법), Criminal Law & Procedure (형법 및 형사 소송 법), Evidence (증거 법)의 6 개의 법률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전 3 시간 동안 100 문항. 오후도 3 시간 동안 100 문항 등 총 200 문항 (상기 6 개의 과목이 무작위로 출제된다.)의 택일 식 4지 선다형 문제를 해결하는 시험이다.

② Essay 시험은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화요일과 목요일 아침에 치르는데, 위 MBE의 6 과목 이외에 Remedies (민사 청구권), Agency / Partnership (대리 및 조합법), Corporation (회사법), Professional Responsibility (변호사 윤리) Community Property (부부 재산법), Wills & Trusts (유언 및 신탁품), Civil Procedure (민사 소송법), Evidence (California Distinction) (캘리포니아 증거 법) 등의 과목을 시험본다.

③ PT 시험은 Essay 시험과는 다른데, 객관식 시험이 아닌 기술형 답안(Written Answer)을 작성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Essay 시험과 유사한 면도 있지만, PT 시험은 법률 지식을 테스트 하는 것이 아닌 주어진 사실관계와 법률을 활용하여 부여된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시험으로서, client와 관련되어 있는 특정한 문제(a specific problem involving a client)에 대한 업무(Task)를 변호사로서 해결하는 것으로, 시험이 시작되면 해당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facts)와 법률 및 판례를 책자 형태로 제공되고 이를 기초로 답안을 작성한다. 미국은 2000년 이후부터 대부분의 주(州)가 변호사 시험에 로이어링(lawyer)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MPT(Multistate Performance Test question)를 포함시켰다.

한국 정부에 제언한다면 헌법, 민법, 형법, 법조윤리는 2학년 수료생에 대하여 객관식 1차 시험으로 테스트하는 것으로 기본법 과목에 대한 테스트는 이로써 종료하여야 한다. 2차시험에서는 논술식으로 하되, 회사법, 행정법으로 하고, 이어서 미국의 PT(Performance Test)처럼 기록시험으로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법을 포함하여 테스트하면 충분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할 경우 반론은 변호사로서의 기본적 지식과 소양도 갖추지 못한 변호사를 양산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연간 4만 명이나 쏟아지는 변호사들, 무시험으로 law school 졸업만 하면 변호사 자격증을 주는 Wisconsin주의 변호사들을 그럼 모두 기본적 소양과 지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는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방식이 만연한 한국의 변호사시험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변호사로서의 기본지식과 소양, 그리고 실무능력은 변호사업계에 뛰어들어 그때부터 배우면 된다.

그리고 교수문제이다. 현재 law school에 재직하고 있는 실무교수는 모두 이론교수로 전환하여야 하며, 앞으로 실무교수는 일절 임명하지 말고 현직 변호사 및 검사와 판사에게 객원교수 자격을 주어 강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무가가 교수로 임명되어 개업을 하지 못하고 변화하는 실무를 접할 기회가 없게 된다면 그는 더 이상 실무교수가 아니다.

2. 미래의 상법시험과 법학교육

끝으로 상법시험의 문제이다. 이미 답이 나와 있는 바와 같이 1660점 총점 중에 상법에 대한 140점의 비중은 지나치게 적은 것이다. 2009년 Law School이 도입될 때 상법의 목소리는 없었다. 이제라도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상법의 비중이 적어도 200점은 되어야 한다.

상법 비중 200점은 현실적으로 이를 관철하기 어렵다. 변호사시험이 필자가 제안한 대로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현행의 변호사시험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 문제는 결국 140점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에 달렸다. 선택형과 사례형을 종합하여 140점을 회사법 70점, 상법총칙 35점, 어음수표법 35점, 보험법 35점의 비중으로 출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례형에서 70%는 회사법 나머지 30%는 상법총칙, 어음수표법, 보험법에서 출제하고, 선택형에서는 회사법 문제는 출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V. 결 어

한국 교육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정신적 부담과 경제적 비용, 획일화와 창의성 결여의 치명적 한계를 열거한다. 이 시스템을 바꾸려면 시험이 바뀌어야 한다.

Law school 교육도 다를 바 없다. 정신적 부담과 경제적 비용, 획일화와 창의성 결여의 치명적 한계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Law school 교육도 변호사 시험이 결정한다. Law school에서의 상법교육의 내용과 방법도 변호사시험이 결정한다. 한국의 법학교육과 변호사시험은 미국식 law school제도에다 학부가 존치되어 있는 일본식 변호사시험을 결합하여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매우 불합리한 모양으로 설계되어 있다.

법학과 졸업생에게는 LEET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 LEET에는 법학개론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어야 한다. 현재처럼 legal mind를 측정하지 못하는 LEET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예비 법학도를 엉터리로 선발하는 것이다.

미국식 law school제도처럼 변호사 시험에 있어서는 헌법, 민법, 형법은 4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처리하고, 이른바 後四法 즉, 회사법, 소송법, 행정법이 결합된 essay과목으로써 2차시험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 2차시험도 컴퓨터로 답안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현재 law school에 재직하고 있는 실무교수는 모두 이론교수로 전환하여야 하며, 앞으로 실무교수는 일절 임명하지 말고 현직 변호사 및 검사와 판사에게 객원교수 자격을 주어 강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과 시험은 Problem Based Learning으로 전환해야 한다.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superman이 되어 온갖 법률을 공부하며 실무능력까지 갖추라는 것은, 다시 변호사 시험을 볼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닌 타인에게 가혹한 굴레를 씌우는 것이며 law school학생들을 응징하는 것이다.

현재의 변호사시험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는, 상법 시험은 선택형과 사례형을 종합하여 140점을 회사법 70점, 상법총칙 35점, 어음수표법 35점, 보험법 35점의 비중으로 출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례형에서 70%는 회사법, 나머지 30%는 상법총칙, 어음수표법, 보험법 중에서 출제하고, 선택형에서는 회사법 문제는 출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여기서 어음수표법 등의 비중이 높아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옳은 지적일 수 있고 상법 각 부분에 대한 비중 문제는 재검토를 필요로 한다. 오늘의 필수품도 미래에는 추억의 물건이 될 수도 있다. 그러한 반론을 감안하더라도 확실한 것은 현재의 상법시험구조에서는 회사법 외의 과목에 대한 무관심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살리는 방법은 상법교수 여러분 뿐이다. 이제 9년간의 타성에 젖어 상법총칙, 상행위법, 유가증권법, 보험법, 행상법이 뭐가 중요한가라고 말하면서 회사법만 파고드는 상법교수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는지, 반성해 볼 때이다. 과거 상법교수는 사법시험에서 출제되는 모든 상법과목을 공부했고 강의했다. 오늘날 상법교수는 회사법교수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 제1세션

법학전문대학원의 과목구성과 상사법 교육의 발전방향

- 자본시장법, 보험법, 해상법, 어음수표법의 위기 속에서 -

안 성 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의 과목구성과 상사법 교육의 발전방향

- 자본시장법, 보험법, 해상법, 어음수표법의 위기 속에서 -

안 성 포*

I. 검토배경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 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라 한다)의 교육이념으로 삼고 있어, 로스쿨은 교양, 윤리, 지식, 능력을 골고루 갖추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직업적 법률가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로스쿨은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동법 제20조).

이처럼 로스쿨의 역할이 “체계적인 교육과정에 의한 법조인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로스쿨 입학자가 그 정규과정 기간 동안 교육내용에만 충실히 따라 학습하면 졸업 후 졸업인원의 70-80% 범위 내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배출하는 것을 예상하였으나, 매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500명(75%) 이상으로 정한 관계로 해를 거듭할수록 합격률이 감소하였고, 5번째의 재시가 치러진 2016년도를 기점으로 전체 응시생 대비 합격률은 50%대를 기록하고 있다.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은 응시자(3,110명) 대비 합격률은 51.45%로 전년도(55.2%)보다 3.75% 떨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변호사시험이 2016년 2월 1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되는 사법시험과 동일한 경쟁시험으로 변질되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나 합격률만을 중시하는 풍토가 로스쿨 시행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과 교원들은 변호사시험에의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을 위한 시험과목만을 중시하게 되어 로스쿨의 교육과정이 다양성과 전문성을 잃고 교육의 질마저 저하되고, 변호사시험과 관련없는 심화과목, 첨단과목, 특성화과목 등은 수강생 부족을 이유로 폐강되거나 설강 자체가 여의치 않게 된다. 결국에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은 로스쿨에는 학생들의 지원이 줄어들게 되어 로스쿨 지원자 수나 지원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로스쿨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로스쿨 도입 9년째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기존 논의의 반복하는 것은 무의미 할 것이다. 여기서는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전남대학교 법전원(이하 'CNU 로스쿨'이라 한다)에서 9년 동안 가르쳤던 상사법 교과목에 대한 자체 평가를 바탕으로 로스쿨에서의 자본시장법, 보험법, 해상법, 어음수표법의 강의의 형해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CNU 로스쿨의 상사법교육과정

1. CNU 로스쿨의 개요

CNU 로스쿨 법학전문석사과정의 입학정원은 120명이고, 2017년 2월 기준으로 재학생수는 383명이다. 전임교원은 45명으로 그 중 실무교수가 18명, 상사법담당교수는 4명(실무가교수 1명 포함)이다. 법학전문석사과정의 교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분류하고 필수과목은 법정필수과목(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과 지정필수과목으로 구분하며 법학전문석사과정의 수료를 위한 이수학점은 필수과목 34학점과 선택과목 56학점 이상으로 하고 있다.

2. 상사법분야 교육과정

CNU 로스쿨에서는 로스쿨 교육이념의 취지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체계로 상사법 분야의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상사법분야 개설표】

구분	필수과목 (학점)	선택과목(학점)			
		기본	심화	첨단	통합
변호사시험과목	기업유형론(3)	기업거래법(3)	기업지배구조(3) 보험법(3) 유가증권법(3)		통합기업소송 세미나(3)
전문변호사 양성과목			기업금융법(3)	M&A법(2) 자본시장법(2) 신탁법(2)	기업도산세미나(2)

경제활동의 발달과 더불어 상사법 분야는 다른 법률 분야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발전, 변화하고 있다. 상법의 각 편에 포함된 내용 이외에도 기업 활동 기타 상거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여러 실정법이 제정되고 있고, 다른 법 분야와 연계된 쟁점들도 증가하고 있다. 상법의 상법총칙, 상행위, 회사, 보험, 해상, 항공운송의 각 편을 기준으로 한 교과목 편성을 고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사법분야 개설강좌는 변호사시험관련 과목으로 상법총칙과 상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기업거래법, 회사법총칙, 주식회사의 설립, 주식, 주주, 신주발행, 사채, 회계를 내용으로 하는 기업유형론(회사법 1),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와 기업재편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지배구조(회사법 2), 어음법과 수표법을 내용으로 하는 유가증권법, 보험법 그리고 통합기업소송세미나를 들 수 있다. 해상법과 항공운송법은 따로 교과목으로 편성하지 않고 있다. 심화과목 내지 첨단과목으로 전문변호사 양성 과목인 자본시장법, 기업금융법, 기업도산세미나, M&A법, 신탁법을 개설하고 있다.

3. 변호사시험에서 상법과목의 비중

변호사시험에서 상법은 사례형 민사법 3문((100점/350점), 기록형에서 20점/100점 또는 25점/100점, 선택형 민사법 70문제 중 보통 20문제(50점) 정도가 출제되고 있다. 상법과목의 총배점은 약 170점으로 민사법 700점의 24%에 해당하고, 총점 1,660점의 10%에 그치고 있다.

제6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민사법 3문은 상업사용인 15점, 상인간의 매매 15점, 주주의 회계장부열람청구권 15점, 대표이사 55점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주로 회사법영역에서 출제되었던 것을 이번에는 상법총칙과 상행위에서 30점을 출제함으로써,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 부실등기의 효력 25점, 제3회 변호사시험에서 영업양도의 효력에 관한 20점 보다 5-10점을 더 많이 배점하였다는 것은 상법총칙, 상행위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제6회 변호사시험 선택형은 상법에 45.5점(18문제)이 배점되었는데 상호, 상호계산, 익명조합, 합자조합, 공중점객업에서 9.5점(4문제), 주식회사의 설립, 주식과 주주, 주식회사의 기관 등에서 30점(12문제), 어음의 발행, 이득상환청구권, 배서에서 3.5점(1문제), 보험계약의 효과에서 2.5점(1문제)이 출제되어 통상의 출제경향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제6회 변호사시험 기록형에서는 회사법영역에서 이사의 책임 5점, 이사에 대한 주주의 감독 15점이 배점되었다.

여전히 변호사시험에서는 해상법과 항공운송에 대하여는 출제가 되고 있지 않으며 주로 회사법영역에서 출제가 되면서, 상법총칙과 상행위가 어느 정도의 배점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어음수표법과 보험법은 각각 1개 정도의 선택형 문제가 출제되고 있었는데, 보험법은 몰라도 어음수표법은 선택형이나 기록형에서 그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제6회 시험에서는 사례형에서 15점 짜리 공동대표이사의 약속어음발행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어 상대적으로 선택형에서 어음수표법영역이 1문제만 출제된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법관련 교과목 개설 및 수강 현황】 (CNU 로스쿨)

학년도	유기증권법 (1학기)	보험법 (2학기)	해상법	자본시장법 (2학기)
2009			교과목 없음	
2010	28명	44명		
2011	29명	7명		8명
2012	11명	9명		개설 안됨
2013	9명	9명		9명
2014	5명	6명		7명
2015	24명	5명		5명
2016	19명	3명		4명
2017	개설 안됨			7명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 분석은 로스쿨 학생들의 수강신청시에 그대로 반영됨을 알 수 있다. 로스쿨 학생에게 주어진 물리적인 시간은 3년으로 채 1,000일(24,000시간)이 되지 않는다. 이 1000일 가운데 일요일만 제외(52시간)하고 매일 8시간을 공부한다고 할 때 공부시간은 총 6,752시간(약 2801일)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할 양은 어마어마하다. 변호사시험의 총점1,660의 10%에 그치는 상법과목에 대한 효과적인 공략 방법은 무엇일까? 게다가 상법과목은 상법총칙, 상행위, 회사법, 어음수표법, 보험법으로 나누어지고 보험법의 경우 객관식 1문제만 출제된다면, 1,660점 중 2.5점을 따기 위하여 보험법을 수강할 학생은 물론 설강하는 교수의 입장에서조차 난감하기 그지없다. 시험과목도 아닌 자본시장법의 경우는 보험법이나 어음수표법, 해상법보다 더욱 심각하다. 금융전문변호사나 보험전문변호사를 꿈꾸는 로스쿨 학생들에게 자본시장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CNU 로스쿨에서 특성화, 전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상법관련 교과목 개설 및 수강 현황】 (서울대 로스쿨, 입학정원 150명)

학년도	상거래법 (1학기)	보험법 (2학기, 특성화)	해상법(운송법) (2학기)	자본시장법 (1학기, 특성화)
2012	113명	63명	4명	35명
2013	49명	30명	4명	31명
2014	64명	?	7명	15명
2015	?	10명	9명	8명
2016	?	10명	?	14명

보험법과 자본시장법을 특성화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도 상법관련 교과목 수강 현황을 살펴보면 CNU 로스쿨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서울대의 특징은 전통적으로 별도의 과목으로 강의되던 어음수표법을 상법총칙, 상행위와 함께 상거래법에 포함시켜 설강

을 하고 있으며, 최초의 교과과정에서는 육상, 해상, 항공 운송을 모두 합하여 운송법으로 강좌를 개설했었는데 그 후 해상법으로 강좌명을 다시 바꾼 것으로 추정된다.

4. 소결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종래의 사법시험제도에 근거한 법조인 자격취득절차를 대체하여 변호사자격의 취득을 근간으로 하는 변호사시험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종래의 사법시험제도가 고시낭인의 사회문제화와 법조인력의 세계화 및 다양화에 약하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변호사시험제도는 이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전공과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변호사를 양성하는 것으로서, 미국의 로스쿨제도를 직도입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제도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로스쿨의 목적과 교육이념을 “법조인의 양성”에 두고, 교육과정에서도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 체계적인 교과목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동법 제1조, 제2조, 제20조). 그리고 이를 이어 받은 동법 시행령에서도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 법률지식 및 전문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과목을 개설하도록 하면서, 법조실무관련 과목들인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을 로스쿨에서 개설하여야 할 교과목으로서 명문으로 규정하였다(제13조).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동법은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 및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로스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제4조), 또 박사학위의 경우에는 학술학위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단서).

이러한 점에서 보면, 로스쿨법이 법조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또 법조인의 양성을 위한 전문법학교육을 요구하며 법조실무교육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로스쿨법상으로도 법학교육이 법조실무교육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법조인 양성을 위한 로스쿨의 교육이 법과대학의 법학교육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실무중심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고 또 이해가 가는 것이지만, 미국의 로스쿨 교육이 이론을 무시한 실무중심교육으로 생각하거나 우리나라에서의 로스쿨 교육도 실무교육에 치중해야 한다는 사고는 오해라는 지적도 많다.

로스쿨은 법조실무담당자로서의 완성된 법조인을 배출하는 곳이 아니라 예비 법조인을 대상으로 법률가처럼 생각하게 하는 법적사고(legal mind) 방식을 바탕으로 법응용능력을 배양하는 곳이어야 한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원과정의 로스쿨은 법조인이 지녀야 할 전문법률가로서 기본적인 법응용능력 -구체적인 사건에 어떤 법조문을 적용하는 것은 물론, 그와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사건과 현상을 분석, 이해하고 그 결과를 법적으로 평가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 을 배양하는 곳이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의 법조인 양성교육제도를 재검토하여 변호사시험과목을 제외한 로스쿨 법학교육의 형해화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Ⅲ. 외국의 법조인 양성교육제도

1. 미국의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1) 미국 로스쿨의 학위과정

미국 로스쿨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학위과정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법학전문석사학위로 유권 해석되는 J.D.(Juris Doctor), 법학석사학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LL.M.(Master of Laws)과 법학박사학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S.J.D.(Doctor of the science of Law) 내지 J.S.D.(Doctor of Juridical Science)가 있다.

미국에서 J.D. 과정은 전일 학생(full-time student)을 기준으로 통상 3년의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다. J.D. 과정의 전통적이고 표준적인 커리큘럼(curriculum)은 1L이라 불리는 로스쿨 1학년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1L의 필수과목은 계약법(Contract), 민사절차법(Civil Procedure), 불법행위법(Torts), 형법(Criminal Law) 그리고 법실무에서 요구되는 법률조사(legal research)와 법문서작성(legal writing)을 배우는 법조실무(Lawyering)로 구성된다. 이러한 J.D. 학위는 미국의 각 주에서 변호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요청되는 학위라고 할 수 있다.

J.D. 학위와 더불어 미국 로스쿨에서 운영되는 LL.M. 및 S.J.D.(또는 J.S.D.) 학위는 보다 연구 중심적(research-oriented) 학위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J.D. 또는 LL.B.와 같은 첫 법학학위(first law degree)를 입학조건으로 한다. LL.M.은 법학석사 과정으로서 이 과정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로스쿨들은 일반 LL.M.(general LL.M.)과 전문 LL.M.(specialized LL.M.) 과정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전자는 특정한 전문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1L 과목을 제외한 상위과정(upper-level)의 강의 및 세미나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미국법의 전반적인 이해를 도우며, 후자는 특정 법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둔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있다. 각각의 로스쿨에서 LL.M. 과정은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으며, 강의 및 세미나 수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코스웍(coursework) 또는 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예컨대 뉴욕 대학교(New York University) 로스쿨은 일반 LL.M.에 해당하는 Traditional LL.M.과 경쟁, 제도개혁 및 정보법(Competition, Innovation and Information Law), 회사법(Corporation Law), 환경법(Environmental Law), 국제경영규제, 소송 및 중재(International Business Regulation, Litigation and Arbitration),

국제법연구(International Legal Studies), 국제조세법(International Taxation), 법이론(Legal Theory), 조세법(Taxation)과 같은 전문 LL.M. 과정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러한 LL.M.은 대부분 1년의 과정이며, 학교마다 다양한 졸업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LL.M. 과정은 미국 외의 해외 법학학위(foreign law degree)를 가지고 있는 법조인 및 법학자들이 미국법을 익히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교육과정인 되어 왔으며, 해외 법학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변호사 자격취득을 인정하는 몇몇 주들에서 주 변호사시험의 응시를 위해 요구하는 기본적인 교육요건(education requirements)이라고 할 수 있다.

S.J.D. 또는 J.S.D.는 법학박사(Doctor of Philosophy in Law)에 해당하는 학위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미국에서 법학교수 내지 법학관련 연구원과 같은 법학자(legal scholar)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미국의 30여개 로스쿨에서 이러한 S.J.D. 또는 J.S.D.과정을 마련하고 있다. 대부분의 S.J.D.과정은 입학하기 위한 조건으로 첫 법학학위, 즉J.D. 또는 LL.B.와 이후의 LL.M. 학위를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S.J.D.는 주로 3년 이상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LL.M.학위의 경우 특정학점을 이수하는 코스웍(coursework)만을 졸업 요건으로 하고 석사논문제출을 의무화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의 S.J.D.학위는 박사논문(dissertation) 제출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2) Georgetown 로스쿨의 상법관련 교육과정

미국 Georgetown 로스쿨의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수백 개의 법률과목을 26개의 과목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중 상법관련 교육과정으로는 상사법(Commercial and Advanced Contract Law)과목군과 회사법(Corporate Law and Securities Regulation)과목군이 있다. 상사법과목군의 경우 1학년 때 계약법(Contracts)을 필수적으로 수강하도록 하고 있고, 2~3학년 때 다양한 선택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기본이 되는 과목들로는 담보부거래(Commercial Law: Secured Transactions), 결제시스템(Commercial Law: Payment system), 매매거래(Commercial Law: Sales Transactions)가 있다. 담보부거래 과목(Secured Transaction)에서는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제9조를 중심으로 대출과 관련한 동산담보의 제공, 다양한 대출거래, 채권자 간의 권리설정,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파산 관련한 법리를 배우게 된다. 결제시스템 과목(Payment System)에서는 통일상법전 제3조와 제4조를 중심으로 개인수표, 신용카드, 은행 간의 송금 등과 관련된 법리를 다루게 된다. 매매거래 과목(Sales Transaction)에서는 통일상법전 제2조를 중심으로 1학년 때 기초과목으로 다루었던 계약관련 법리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게 된다. 이 4개의 과목 외에도 다양한 강의와 세미나, 클리닉이 개설되고 있다.

회사법(Corporate Law and Securities Regulation)과목군에서는 회사법(Corporation)이 가장 기초가 되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Georgetown에서는 회사법 수업을 졸업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다른 관련 과목을 수강하기 위한 선제요건이 되므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2학년 때 회사법을 수강한다. Georgetown에서는 이 과목군에서만 강의, 세미나, 클리닉을 합쳐 약 50개 정도의 과목을 개설한다. 회사법 수업에서는 먼저 미국의 여러 가지 기업형태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처음 1~2주간은 조합 (Partnership)의 생성과 작용에 대해 다루는 것이 보통이다. 이후는 주로 주식회사(Corporation)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게 되는데, 주식회사의 창설과 형태, 주주의 권리와 이사의 의무·책임 등에 대해 배우게 된다. 이 때 상당히 많은 양의 수업이 이사의 주의의무(duty of care)와 이사의 충실의무(duty of loyalty)에 할애된다. 기존 주식회사의 대안형태인 유한책임회사 또는 유한책임조합에 대해서도 다루게 된다.

회사법과목군에서는 증권규제 과목 (Securities Regulation)도 보통 기본과목으로 여겨져 많은 학생들이 수강한다. 이 수업에서는 미국의 1933년 증권법 (Securities Act of 1933)과 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s Act of 1934)의 내용과 증권거래소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의 역할에 대해 다루게 된다.

(3) 미국의 변호사 시험제도 개관

미국 변호사시험은 전미변호사시험협회(National Conference of Bar Examiners: NCBE)에서 주관하는 Multistate Bar Examination(MBE), Multistate Essay Examination(MEE), Multistate Performance Test(MPT), 그리고 Multistate Professional Responsibility Examination(MPRE)과 각 주에 따라 상이하게 규율되고 있는 해당 주법에 대한 객관식 및 서술형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1) Multistate Bar Examination(MBE)

MBE는 전미변호사시험협회(NCBE)에 의해 실시되며, 헌법(Constitutional Law), 계약법(Contracts), 형법 및 형사절차법(Criminal Law & Procedures), 증거법(Evidence), 부동산법(Real Property), 불법행위법(Torts)과 같은 미국 보통법(Common Law) 6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 2월부터 민사절차법(Civil Procedure)이 새로운 MBE 과목으로 도입되었다.

6(7)과목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200개의 객관식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MBE는 각각 4개의 답 중 문제해결을 위한 유일한 정답이 아니라 최선의 정답(best answer)을 선택하도록 한다. 이 시험은 매해 2월과 7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전 100문제와 오후 100문제의 시험으로 각각 3시간 동안 치러지며, 이 중 190개 문제만이 실제 성적으로 평가되고 10개의 문항은 새로운 문제 유형의 고안 및 난이도 평가와 같은 목적으로만 활용된다.

2) Multistate Essay Examination(MEE)

MEE는 전미변호사시험협회(NCBE)에 의해 출제되는 서술형 시험으로 MBE가 치러지기 하루 전 2월과 7월 마지막 주 화요일(Tuesday before the last Wednesday)에 실시된다. MEE는 각각 30분 동안 답해야 하는 9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MEE를 변호사시험으로 채택하고 있는 주들은 이들 문제들 중 일부만을 반영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MEE를 통해 평가되는 법과목은 대리(Agency), 조합(Partnership), 회사(Corporations),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ies)을 포함하는 기업법(Business Associations), 저촉법(Conflict of Laws), 헌법(Constitutional Law), 계약법(Contracts), 형법 및 형사절차법 (Criminal Law and Procedure), 증거법(Evidence), 가족법(Family Law), 연방민사절차법(Federal Civil Procedure), 부동산법(Real Property), 불법행위법(Torts), 신탁 및 재산법(Trusts and Estates),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제3편 유통증권(Negotiable Instruments)와 제9편 담보부거래(Secured Transactions)이다. 9개의 문제 중 몇몇 문제들은 이들 법과목들의 통합형으로 출제될 수 있다.

3) Multistate Performance Test (MPT)

MPT 역시 전미변호사시험협회(NCBE)에서 주관하는 시험 유형으로서 매해 2월과 7월 마지막 주 수요일 하루 전 화요일(Tuesday before the last Wednesday)에 치러진다. NCBE는 90분 동안 작성하도록 고안된 2개의 MPT 문제를 제공하는데, MPT를 변호사시험 유형으로 채택한 각 주에서는 1개 혹은 둘 모두를 변호사시험에 포함할 지 선택할 수 있다.

MPT는 미국 로스쿨 J.D. 1학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되는 로어링(Lawyering) 과목에서 익힌 법률조사 및 문서작성법을 시험형태로 고안한 것이며, 이를 통해 응시자가 변호사로서의 실무수행능력을 얼마나 잘 발휘할 수 있는지 평가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따라서 MPT는 변호사가 실무에서 경험 할 수 있는 - 소속 로펌(lawfirm)의 선임 변호사(senior attorney)에게 보내는 법률의견서(memorandum),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서신, 관련 사실관계를 정리한 진술서(statement of facts),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변론 취지서(brief) 등과 같은 - 다양한 유형의 문서를 직접 작성하는 기술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4) Multistate Professional Responsibility Exam(MPRE)

MPRE는 변호사의 윤리적 덕목에 대한 사회적 요청을 반영하여 전미변호사시험협회(NCBE)를 대신해 로스쿨 입학위원회(Law School Admission Council)가 주관하는 법조윤리시험으로서 1980년부터 시행되었다. MPRE는 전문가로서 변호사의 행위와 관련되어 수립되어 온 다양한 상황에서의 기준들(standards)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며, 개개인

의 사적 차원에서의 윤리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다. 즉, 변호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요청되는 전문가로서의 행동강령, 의뢰인과 변호인의 관계,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변호사의 민·형사상 책임 등과 같은 전반적인 전문가책임법(Professional Responsibility)을 시험의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MPRE는 미국에서 법실무를 수행하는 법조인에게 요청되는 기본적인 윤리규범을 규율하는 미국변호사협회(ABA)의 '전문가 직무행위에 대한 준칙'(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과 '법관의 직무행위에 대한 준칙'(Model Code of Judicial Conduct), 관련 연방헌법판결(constitutional decisions)과 미국 대다수 주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연방 및 각 주 단위의 대표적인 판례, 나아가 변호사 전문책임과 관련된 연방민사절차법(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및 연방증거법(Federal Rules of Evidence)이 시험의 대상이 된다. 각 주는 해당 주의 징계위원회(disciplinary committee)를 중심으로 변호사의 윤리적 행동강령을 마련해두고 있고, 이는 뉴욕(New York) 주의 변호사 시험과 같이 개별 주법에 대한 시험의 한 영역으로 다루어지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MPRE는 특정 주법과 판결을 시험의 내용으로 삼지 않는다.

(4)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변호사시험에 주는 시사점

미국 로스쿨의 경우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학생들이 준비 할 몫이라 생각하여 로스쿨 자체에서 이를 위한 별도의 준비과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학생들도 변호사시험을 염두에 두고 수업을 택하기 보다는, 본인의 관심분야나 앞으로의 진로를 생각하여 과목을 택하는 것이 보통이다. 미국의 각 주에서 운영되는 변호사시험은 우리나라와 같이 합격률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합격점수를 정해놓고 그 점수 이상만 얻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의 경쟁시험화 되버린 변호사시험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 같다.

또한 변호사시험에 있어서 상법의 출제영역이 우리에게 비하여 단순하다. MEE의 경우, 조합(Partnership), 회사(Corporations),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ies)을 포함하는 기업법(Business Associations)과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제3편 유통증권(Negotiable Instruments)와 제9편 담보부거래(Secured Transactions)를 시험범위로 하고 있다.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것을 물어보는 우리의 변호사시험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미국과 비교해볼 때, 어쩌면 우리의 변호사시험은 출제를 위한, 출제자를 위한 시험제도인 것 같다.

2. 독일 법조인 양성제도

(1) 법학교육제도

1) 개요

독일의 법학교육은 대학의 법학교육과 법조 실무기관의 실무수습교육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이 두 과정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보완관계에 있다. 법과대학에서는 4년 동안 실체법 위주의 이론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제1차 사법시험(Erste Juristische Prüfung)으로 마무리 된다. 이 시험에 합격한 자는 2년간 법원·검찰·변호사사무실 등에서 실무수습교육을 받은 후 다시 제2차 국가사법시험(Zweite Juristische Staatsprüfung)을 치러 합격하면 '완전한 법률가(Volljurist)'로서의 자격을 부여받는다.

독일의 법학교육에 관하여는 연방법인 독일법관법(Deutsches Richtergesetz, DRIG)이 법조인양성 및 법조인자격 국가시험제도의 기본구조와 원칙을 규율하고 있고, 세부적인 시험과목과 절차는 독일법관법이 정한 기본원칙에 따라 각 주에서 독자적인 주법(Ausbildungs- und Prüfungsordnung für Juristen)에서 규율하고 있다. 독일법관법 제5조 제1항에는 "판사직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은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을 제1차 시험을 통해 마치고, 이어서 2년간의 사법연수(Vorbereitungsdienst)를 거쳐 제2차 시험을 합격한 자가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는 판사직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라고만 나와 있지만, 독일연방변호사규정 제4조와 연방공증인규정 제5조 등과 같은 다른 법률에서는 판사 이외의 다른 법조인(변호사, 공증인, 검사 및 행정·경제·사회단체 등의 법조인)으로서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격도 판사직을 가질 수 있는 자격과 연결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독일 법학교육의 기본적인 틀은 통일적 법조인 양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독일의 법조인자격은 변호사자격을 기준으로 정하지 않고 법관자격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관자격의 취득이 법조인 양성 내지 법학교육의 목표이자 최종단계라 할 수 있다.

2) 법과대학의 법학교육

(가) 학생선발과 교육과정

독일의 법과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13년간의 초등교육기간을 마치고 인문계고등학교(Gymnasium) 졸업시험인 'Abitur'에 합격해야 한다. 'Abitur'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입학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독일의 법과대학은 정원제한(Numerus clausus)으로 입학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법과대학에 입학신청을 한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 지방대학에 입학여부가 결정된다.

입학후 교육과정은 예비과정(Grundstudium)과 본과과정으로 나뉘는데, 예비과정은 보통 4학기 만에 이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예비과정은 민법, 형법, 공법 각 분야에서 논술시

험과 논문 그리고 예비과정 졸업시험의 합격과 필수과목 강좌의 수강을 요구한다.

본과과정은 예비과정과 내용적으로는 다르지 않지만 난이도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본과과정 이수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그 후 2년동안 사법연수교육을 거쳐 제2차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에 한해 완전한 법률가(Volljurist)의 자격을 부여받는다.

(나) 교과내용

a. 개요

법학교과과정의 내용에 관해서는 독일법관법 제5조의a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필수(기본)과목, 선택과목으로 구성된 특성화(중점)분야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은 독일 법학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점점 복잡성과 다양성이 증대되어가는 법률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론중심의 법학교육을 지양하는 한편 법학만의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다른 학문들(사회학, 경제학, 행정학, 심리학 등)과의 관련성을 유지하고 심화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사법, 형법과 공법 그리고 절차법 등을 필수기본 과목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학방법론, 법이론의 기초, 법철학, 법사회학 및 법사학의 기초
- 국제법과 유럽법에 연계된 헌법, 행정절차법을 포함한 일반행정법, 경찰행정법, 건축법, 지방자치법 및 사회보장법
- 일반사법이론, 채권법, 물권법(민법 외의 관련분야 포함), 친족상속법의 기초(국제사법(관할)에 대한 기본적 관계 포함), 상법, 회사법 그리고 유가증권법의 기초
-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동법의 기초
- 형법
- 절차법(민사소송, 형사소송, 헌법재판 및 행정소송), 임의재판적(비송사건) 그리고 노동재판절차의 기초, 법원기본법과 민사소송법과 파산법상의 강제집행법 포함

이러한 교과과정은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여기에서 요구되는 법 지식을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및 법철학적 지식과의 연관 아래서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특성화(중점)분야는 필수(기본)과목의 심화 및 여러 전문분야에 걸쳐 있고 국제적으로 연결된 법률들을 상호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집중한다. 각 학교에 따라 분류가 다르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법철학, 법이론, 법사회학
- 법제사, 헌법제정사
- 친족상속법, 임의재판적(비송사건), 가사소송법의 기초, 회사법, 세법과 결산법의 기초, 경쟁과 카르텔법, 영업의 보호와 지적재산권법, 집단적 노동법, 경영기본법, 공동결정법, 자

본시장법

- 국제사법, 비교법
- 범죄학(형사정책), 행형, 소년형법
- 행정학, 건축법, 경제행정법, 환경보호법, 도로교통법, 공무원법, 사회보장법, 사회보험법, 고용촉진법, 사회보장절차법, 사보험법, 국제법과 유럽법

b. 상법관련 교과목 개설

독일의 상법관련 과목은 상법전(HGB), 주식법(AktG), 유한회사법(GmbHG), 보험계약법(WG), 어음법(Wechselgesetz), 수표법(Scheckgesetz), 자본시장법(Kapitalmarktrecht)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률들을 중심으로 법과대학에서의 상사법관련 강좌는 보통 4개로 구성된다. 하나는 우리의 상법총칙·상행위 강좌에 해당하는 상법(Handelsrecht)이다. 회사법(Gesellschaftsrecht) 강좌는 두 개로 구성된다. 우선 민법상의 조합(GbR), 합명회사, 합자회사를 다루는 인적회사 강좌가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다루는 자본회사 강좌이다. 독일에서의 특징은 인적회사를 중요시 한다는 점이고 이 경우 특히 민법상의 조합을 같이 다룬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회사법 분야에서도 민법과의 연계가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어음수표법에 해당하는 유가증권법(Wertpapierrecht), 보험계약법(Versicherungsvertragsgesetz) 강좌가 있다. 해상법(독일 상법전 제5편) 강좌는 함부르크나 키일과 같은 항구도시의 대학 등 특수한 경우만 개설되고 있다. 한편 오스나브뤽, 파사우 법과대학에서는 예를 들면 증권거래법(Wertpapierhandelsgesetz), 증권거래소법(Börsengesetz), 유가증권취득 및 인수법(Wertpapiererwerbs-und Übernahmegesetz) 등을 법원으로 하는 자본시장법(Kapitalmarktrecht)과 같은 전문분야에 관한 강좌를 개설하여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 내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다) 교육방식

독일의 법학교육방식은 크게 연습(Übung), 강의(Vorlesung), 세미나(Seminar)로 이루어진다. 연습과정은 예비과정에서는 4차례의 논술시험과 2차례의 논문 그리고 본과과정에서는 3차례의 논술시험과 2차례의 논문문제가 부과된다. 강의는 연습의 범위에서 다루지 못하는 과목에 대한 학습을 담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연습과목에 대한 보충학습의 역할을 한다. 세미나는 교수가 방학기간을 이용해 몇 개의 주제를 부여하면 학생들은 관심에 따라 한 주제를 선정해 논문을 작성하여 학기 중에 매주 열리는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게 된다.

한편 독일법관법 제5조a 제3항 제1문에 따르면 대학교육과정 중에는 대학교육을 마친 뒤에 입학하게 되는 사법연수과정과는 별도로 실무교육과정(praktische Studienzeit)을 두도록 하고 있다. 즉 사법적, 행정적, 법자문적 실무를 고려하여 최소 3개월의 연수과정을 거치도록 하

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대학과정 중에 법률실무를 접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그 목적은 단순히 법 실무의 기술만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법 실무와 법 사회 현실의 올바른 파악과 이해 그리고 이론교육과정에서 부족한 절차법 분야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함이다.

3) 사법연수과정(Referendariat)

제1차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은 준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누리는 사법연수생(Referendar)으로 선발되는데, 독일법관법 제5조의b에 따르면 2년간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사법연수는 의무연수지와 선택연수지에서 실시하는데 의무연수지에서 1년 8개월 그리고 선택연수지에서 4개월을 근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규민사법원에서 6개월, 검찰 또는 정규형사법원에서 3개월, 행정관청에서 4개월, 변호사 또는 법원 중에서 선택하여 3개월, 변호사에게서 또한 4개월, 끝으로 선택지(법률구조, 경제와 조세, 노동과 사회, 국가와 행정 또는 국제영역)에서 4개월을 근무한다. 각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연수생들의 근무에 대한 개별적 평가서가 작성되는데, 실무능력, 성과 그리고 교육수준 등이 평가의 기준이 된다.

(2) 독일의 사법시험제도

1) 개요

독일의 법조인양성제도는 지방분권적 법조인 양성, 선발이 아닌 양성, 법학교육의 일부로서의 사법시험제도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시험은 각 주별로 시행되고 실시주체는 각 주의 사법시험청(Justizprüfungsamt)이다. 독일의 법조인자격시험은 연방법인 독일법관법(Deutsches Richtergesetz, DRIG)에서 법조인양성과 사법시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연방법의 위임을 받은 각 주의 법조인양성법(Juristenausbildungsgesetz, JAG)과 법조인양성 및 시험령(Ausbildungs- und Prüfungsordnung für Juristen)이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뉘어 치러지며, 대학의 졸업요건은 1차 시험의 합격이다. 1차 시험 합격 후 연수교육을 2년간 실시한 다음 2차 시험을 치러 합격하면 완전한 의미의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독일의 1차 시험은 종래 우리나라 사법시험에 해당하고, 2차 시험은 사법연수원 졸업시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차 시험 성적은 평균 6점에서 18점 사이이다. 성적은 최우수(sehr gut), 수(gut), 우(vollbefriedigend), 미(befriedigend), 양(ausreichend), 가(mangelhaft), 낙제(ungenügend) 7단계로 매우 엄격하게 평가하며, 합격하기 위해서는 양(ausreichend)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한다. 독일에서는 우(vollbefriedigend) 이상이면(많은 주에서는 미 'befriedigend') 능력을 보증하는 시험성적으로 평가하며, 종종 공무원채용의 요건으로서 최소

한 우(vollbefriedigend) 이상의 성적을 요구한다.

1차 시험 합격 후 2년 동안 연수교육(Referendariat)을 실시하며, 연수교육은 2차 시험(Assessorexamen)으로 종결된다. 2차 시험은 주에 따라 7개 내지 11개 과목의 필기형으로 치러진다. 필기시험 후 약 4개월이 지난 다음 구술시험이 실시된다. 구술시험에서는 1차 시험의 실체법 과목 외에 소송법에 대한 질문이 행해지는데, 주로 관례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가) 제1차 사법시험(Erste Juristische Prüfung)

제1차 시험은 학생이 법학 학업목표를 달성하고 연수생으로서 예비근무를 할 만한 전문성을 갖추었는가를 확인하는 시험으로 필수과목과 본인이 선택한 선택과목에 대한 법적 이해와 적용력 및 과목별로 요구하는 기본지식들을 평가하게 된다. 시험방식은 각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필기 및 구술로 진행된다.

a. 시험과목 및 시험방식

① 필수과목(Pflichtfach)에 대한 시험

필수과목 시험은 전체 1차시험에서 70%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각 주별로 비중은 각기 달리 정하지만, 필수과목시험은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이루어진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바이에른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는 민사법 분야 3과제·공법 분야 2과제·형법 분야 1과제 등 6과제의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분야별 소송 법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6과제의 시험을 보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형식이고, 주에 따라 세부 과목의 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 베를린이나 브란덴부르크주의 경우에는 7과제를 보기도 하고, 작센주는 5과제의 시험만을 보게 한다. 필기시험의 비중도 60%에서 75%까지 각 주마다 다르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의 법조인양성법(JAG NRW)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상법분야 출제범위는 (i)상법 제1편 제1장 내지 제5장(상인, 상업등기, 상호, 지배인, 당사대리권), 다만 제2장에서는 상업등기의 공시부분만, (ii)상법 제4편 제1장과 제2장(상행위 총칙, 상사매매), (iii)상법 제2편 제1장과 제2장(합명회사와 합자회사), (iv)유한회사법 제1장 내지 제3장(회사설립, 회사와 사원의 법률관계, 대표 및 업무집행)으로 제한하고 있다.

구술시험의 내용은 필기시험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시험응시자 5~6명을 한 그룹으로 하여 약 5시간 동안 시험관이 구두로 출제하는 사례문제에 대해 대답을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힌트를 줌으로써 해결에 대한 방향을 잡아준다. 그 이유는 평가라는 개념보다 법률적 사고과정과 문제해결 능력의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폭넓은 범위를 다루기 위해 1개의 사례문제 해결에만 편중하지 않고, 법과 연관되는 시사적인 문제나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 범위에서 단답을 요하는 질문을 덧붙이는 것이 보통이다.

② 중점선택과목영역(Schwerpunktbereich)에 대한 대학의 시험방식

대학이 실시하는 중점선택과목영역 시험은 1차시험 전체평가에서 30%까지의 비중을 차지한다. 감독필기시험, 논문시험(Hausarbeit) 및 구술시험 형식으로 진행되며, 시험의 구체적인 방식은 각 주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은 5시간에 걸쳐 시행되는 감독필기시험, 4-5주 간 시한을 주고 작성하도록 하는 논문시험 구술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빌레펠드대학의 경우에는 구술시험을 보기 전에 논문시험과 관련이 없는 주제로 주제발표를 하도록 하는 시험을 보고 있다.

(나) 제2차 시험

a. 의의

사법연수과정은 제2차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끝나게 된다. 독일법관법 제5조의b 제2항에는 제2차 시험의 기본골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각 주마다 주법에 따라 규율하고 있다. 제2차 시험은 각주마다 제1차 시험과 같은 형태인 필기시험 및 구술시험을 병행하도록 되어 있다. 필기시험은 늦어도 마지막 시보지에서의 교육이 끝날 때 즈음하여 행해지고 내용은 제1차 시험에 비해 실무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절차법에 대한 상당한 이해와 지식을 필요로 한다. 구술시험의 경우에는 문제와 더불어 일정시간이 주어지고 그 시간동안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마련하여 시간경과 후 구술로 법절차적인 부분에서부터 판결까지 내려야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b. 시험내용

필기시험이 먼저 8과목에 걸쳐 실시되는데, 필수연수기관(Pflichtstation)에서 교육받은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4과목은 민사사건에서의 법원 또는 변호사의 활동분야에서 출제되어야 하고, 2과목은 형사사건에서의 검찰, 법원 또는 변호사의 활동분야에서, 또 나머지 2과목은 행정사건에서 공무원, 법원 또는 변호사의 활동분야에서 출제되어야 한다(§ 51 JAG NRW).

구술시험은 소송기록에 대한 발표(Aktenvortrag)와 면접(Prüfungsgespräch)으로 진행된다. 발표가 먼저 실시되는데, 소송기록에 대한 발표는 일반법원, 검찰, 노동법원, 행정법원 및 실무행정분야, 변호사의 활동분야에서 출제된다. 면접에서는 판례, 행정 및 법률상담 등 실무적인 과제에 대해 질문하는데, 전체 연수교육과 그 중점분야를 고려하여 질문해야 한다(§ 51 JAG NRW)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법조인양성법(JAG NRW) 제52조는 2차 시험과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르면 제11조 필수과목 외에 도로법(Straßenrecht)과 공공부문종사자법(Recht des öffentlichen Dienstes)개설,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강

제집행법 개설 그리고 실제적인 법적용의 방법(Methoden der praktischen Rechtsanwendung)이다.

(3) 독일 상법관련 법학교육의 특징

1) 민법과의 연계와 상법전의 분리

독일에서는 민법과 상법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와 다른 중요한 특징이다. 사실 이 두 분야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과 상법의 강좌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시험도 분리하여 보는 것은 장차 개선되어야 할 내용이다. 독일의 상법교수들은 민법은 기본으로 하면서 민사소송법 등 다른 분야도 같이 강의·연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민상법 분리현상은 로스쿨에서의 민상법 통합시험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사법시험에 있어서 상법의 출제영역은 우리에게 비하여 간단하다. 대부분의 주에 있어서 상법분야 출제대상은 (i)상법 제1편 제1장 내지 제5장(상인, 상업등기, 상호, 지배인, 상사대리권), 다만 제2장에서는 상업등기의 공시부분만, (ii)상법 제4편 제1장과 제2장(상행위 총칙, 상사매매), (iii)상법 제2편 제1장과 제2장(합명회사와 합자회사), (iv)유한회사법 제1장 내지 제3장(회사설립, 회사와 사원의 법률관계, 대표 및 업무집행)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상법전(HGB)에서 유한회사법과 주식법 그리고 보험계약법이 단일법률로 떨어져 나온 결과이기도 하고, 상법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계산규정을 시험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 지역별 특화

독일에서는 상법분야 가운데에서도 회사법은 공통적으로 강좌가 있지만 해상법 분야 같은 경우는 함부르크나 키일 등 항구도시에 국한하여 강좌가 개설되고 있어 지역특성별로 상사법교육의 특화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독일대학이 실시하는 중점선택과목영역 시험제도와 함께 우리 로스쿨에서 실질적인 특성화 프로그램의 운용을 위해서도 그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 학문후속세대양성

독일에서는 법조일원화가 이루어져있다. 그리고 사법연수생(Referendar)과 변호사들도 또한 상당수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박사학위논문은 지도교수가 박사과정학생(Doktorand)으로 받아들이면 가능하다. 그 과정에서 보통 지도교수의 조교를 하게 된다. 학부과정이 주로 해석론에 치중된 것과는 달리 박사학위논문에서는 입법론 등 다양한 주제로 해당분야에 진일보한 연구성과를 이루어내어야만 박사학위를 받을 수가 있다. 더 나아가 일부 Junior Professor

제가 시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교수가 되기 위하여는 Habilitation 논문을 써야한다. 이는 일생일대의 작업으로서 심오하면서도 자료면에서도 깊이와 밀도가 있는 논문을 교수자격청구논문으로 작성, 제출하게 된다. 그 심사과정은 대학구성원이 공동으로 구성되어 그 사람의 인성도 평가한 후 통과하게 된다.

3. 일본의 법조인 양성제도

(1) 개요

일본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학졸업 후 법과대학원에 진학하여 수료 후 新사법시험(이하 '사법시험'이라 한다)¹⁾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다만, 기본적으로 법과대학원에 진학하여 수료 후 사법시험 응시라는 틀은 우리나라와 동일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법학이수여부에 따라 법과대학원 과정 수료기간에 차이를 두고 있으며,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소에서 1년간의 수습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학에서 법학 전공자에게는 2년, 법학 비전공자에게는 3년의 법과대학원 과정을 수료할 것이 요구되고, 수료 이후 5년 이내 총 3회의 응시회수제한 내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사법연수소에서 1년간의 사법수습을 거치게 되고, 수습완료 후 수료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하지만 2006년부터 시행된 사법시험은 법과대학원을 수료한 자만을 위한 시험으로 법과대학원을 수료하지 않고서는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공평성과 다양성 그리고 개방성을 표방하며 사법제도개혁의 일환으로 출범한 법과대학원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법과대학원이 도입되기 이전 旧사법시험 제도에서는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시험합격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었기에 이러한 면에서는 이전 제도가 공평성·다양성·개방성의 확보라는 면에서는 더 나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국립대의 경우 연간 약 80만 엔, 사립대의 경우 약 100만에서 250만 엔 정도의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 고액의 등록금은 법과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 실력이 있어도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법조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사전에 차단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사실 이러한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한 사항은 2001년 6월 사법제도개혁심의회 의견서에서 “법과대학원 제도의 도입에 따라 적절한 제3자 평가제도가 정비된다는 점에 입각하여, 그에 따른 적격인정을 받은 법과대학원의 수료자에게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법시험의 응시자격이 인정되어야 할 것 이며, 이와 함께 경제적 사정이나 이미 사회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고 있다는 점 등의 사유로 법과대학원을 경유하지 않은 자에게도 법조자격 취득을 위한 적절한 수

1) 2011년 旧사법시험의 폐지 후, 新사법시험의 명칭은 사법시험으로 변경되었다.

단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법과대학원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법조양성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면서, 광범위한 법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나 이해를 묻는 예비적 시험에 합격한다면 사법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해 주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미 법과대학원 수료자와 동일하게 "경제적 사정이나 이미 사회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고 있다는 점 등을 사유로 법과대학원을 경유하지 않은 자"에게도 응시자격을 인정하고자 한 바 있다.

하지만 법과대학원을 경유하지 않는 자에게도 응시자격을 인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당시 동경대학교 부학장 아오야마 요시미즈 교수는 "로스쿨을 졸업한 자가 아니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할 경우 재력이 없는 자는 법조계로 진입할 수 있는 문을 막아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학부를 나오지 않으면 의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법조에 진출하기 위한 방법도 법과대학원 수료자로 일체화해야 하는 것이라 하면서 경제적인 여력이 되지 않아 법과대학원에 진학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응시자격을 예외적으로 부여하는 것보다 법과대학원의 단계에서 장학금 보조와 같은 경제적 원조, 생계를 유지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야간대학원이나 통신제 법과대학원의 개설 등 정책적인 보조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장학금제도와 함께 각 법과대학원에서도 독자적인 장학금이나 등록금 감면 등의 제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법과대학원에 진학하는 모든 학생들이 이러한 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며, 장학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졸업 후 변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개인에게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법조예의 길을 포기하는 자가 생겨나게 될 것이다. 이에 그러한 사정에 대한 배려로 예비적 시험, 즉 예비시험의 도입이 제안되었고 이는 2011년부터 사법시험과 함께 실시되게 되었다.

사법시험법 제5조 1항에서 "사법시험 예비시험은 사법시험을 보고자 하는 자가 전조 제1항 제1호에 열거한 자와 동등한 학식 및 그 응용능력, 법률에 관한 실무의 기초적 소양을 가지는가를 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단답식 및 논문식에 의한 필기 및 구술방법에 의해 시행된다"라고만 명시하여 예비시험 응시대상자를 한정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사법제도 개혁심의회 의견서에 따른 "경제적 형편 때문에 법과대학원에 진학하지 못하거나 이미 사회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아 법과대학원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자"를 응시대상자로 명확히 판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결국 예비시험은 그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旧사법시험과 같은 시험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법시험과 예비시험의 내용

1) 사법시험의 개요

(가) 응시자격

사법시험은 재판관, 검찰관 및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 및 그 응용능력이 있는지를 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시험으로, 사법시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응시자격은 응시일 기준으로 법과대학원의 과정을 수료하는 한편, 5년 내 3회라는 응시회수 제한의 범위내에 있는 자 또는 사법시험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나) 시험과목

사법시험은 단답식 및 논문식에 따른 필기방식으로 치러지며, 단답식 시험과 논문식 시험은 동일한 시기에 실시되고, 응시자 전원은 단답식과 논문식 시험 모두에 응시하도록 되어있다. 단답식에 따른 필기시험은 재판관, 검찰관 또는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지식 및 법적 추론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의 과목에 대하여 실시된다.

- 공법계 과목 (헌법 및 행정법에 관한 분야의 과목을 말함)
- 민사계 과목 (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에 관한 분야의 과목을 말함)
- 형사계 과목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관한 분야의 과목을 말함)

논문식에 따른 필기시험은 재판관, 검찰관 또는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법적 분석, 구성 및 논술의 능력이 있는지를 판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의 과목에 대하여 실시된다.

- 공법계 과목
- 민사계 과목
- 형사계 과목
- 전문적인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서 법무성에서 정하는 과목 응시자가 미리 선택하는 1개 과목(선택과목)

선택과목은 다음의 8과목으로 되어 있다.

도산법/조세법/경제법/지적재산법/노동법/환경법/국제관계법(공법계)/국제관계법(사법계)

2) 사법시험 예비시험의 개요

(가) 응시자격

사법시험 예비시험(이하 '예비시험'이라 함)은 사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법과대학원 과정을 수료한 자와 동등한 학식 및 그 응용능력과 법률에 관한 실무의 기초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¹⁰⁹⁾, 응시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나) 시험과목

a. 단답식

단답식 시험의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의 기본 3법과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상법 그리고 일반교양과목의 총 8과목으로 되어 있다.

b. 논문식

논문식에 따른 필기시험은 단답식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 단답식 시험의 과목과 동일한 헌법, 민법, 형법의 기본 3법과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상법 그리고 일반교양과목의 총 8과목에 법률실무기초과목(민사·형사)이 추가된 9과목에 대하여 실시된다.

c. 구술시험

구술시험의 과목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법적추론과 분석 및 구성에 근거하여 변론을 구성하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법률실무기초과목(민사)와 법률실무기초과목(형사)의 2과목에 대한 시험이 실시된다.

(3) 일본의 법과대학원제도

1) 개요

일본의 법과대학원은 ①법조양성에 특화된 실천적 교육을 이행하는 학교교육 법상의 대학원으로서, 표준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고, 단축형으로서 2년 내의 수료를 인정하고, ②법과대학원의 배치, 입학자 선발 등에 있어서는 공평성·개방성·다양성을 그 취지로 하며, ③소수교육을 기본으로 쌍방향적·다방향적으로 풍부한 교육내용의 제공, 법이론 교육을 중심으로 실무교육의 도입부분을 포함하여 실무와 이론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 사법시험의 합격률이 70-80% 정도로 유지할 수 있는 충실한 교육의 이행과 함께 ④적절한 기관에 따른 제3자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⑤제3자 평가에 따른 합격인정을 받은 법과대학원의 수료자에게 사법시험의 수험자격을 인정하고 응시회수를 3회로 제한하는 것을 초기 법과대학원의 모습으로 구상하였다.

2) 교토대학 법과대학원의 교육과정

(가) 과목편성의 기본

교토대학 법과대학원에서는 다음 5개의 과목군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인 과목편성을 한다.

a. 기초과목(9과목 26단위 모두 필수)

기초과목은 기초적인 법분야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론구조나 기초적 개념의 이해를 도모함과 동시에 법적 사고의 기본적인 틀을 습득하기 위한 과목으로 다음과 같다. 다만, 법학기수자에 대해서는 단위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 기초과목은 법학미수자로 입학한 1년차에 배당되는 과목이다.

통치의 기본구조/인권의 기초이론/형법의 기초/형사소송법의 기초/재산법의 기초 1·2/가족법의 기초/상법의 기초/민사소송법의 기초

b. 기간과목(17과목 34단위 모두 필수)

기간과목은 기초과목에서 습득한 법지식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분석·처리능력을 육성함과 동시에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기초적인 실무적 기능 및 윤리감을 몸에 익히기 위한 과목으로 다음과 같다(과목당 단위수는 2단위)

공법종합1·2·3/형사법종합1·2·3/민법종합1·2·3/상법종합1·2/민사소송법종합1·2/민사법문서작성/형사소송실무의 기초/민사소송실무의 기초/법조윤리

c. 실무선택과목(2단위이상 선택필수)

실무선택과목은 주로 법률사무소에서 연수나 재판연습 등의 실습을 통해서 법률지식의 실천적 의의를 이해하고 실무로의 이행을 보다 스무드하게 하기 위한 과목으로서 다음과 같다(과목당 단위수는 2단위).

변호사실무의 기초1·2/변호사실무사례연습/형사재판연습/민사재판연습/민사모의재판/legal clinic/엑스텐십

d. 선택과목 I (4단위이상 선택필수)

선택과목 I 은 정치학 등 인접영역이나 기초법학 등 넓은 시야에서 법이나 법실무 혹은 법조인의 의의나 역할을 분석하는 것으로 인간이나 사회 그리고 법률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깊게 하기 위해 마련된 과목이다.

이러한 선택과목 I 의 개설본지에 부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강좌를 두고 있다(과목당 단위수는 2단위).

법해석학의 역사와 방법/현대정의론/법과 경제학의 실질과 주요내용/법해석의 방법/법정책분석/재판변호실무의 기초이론/근대일본의 사회변동과 법/서양법사/법조의 역사/중국의 법과 재판/미국법/현대독일법정이론/프랑스법/E U 법/정책결정과정론/일본정치외교/공공철학과 현대통치/안전보장론/유럽정치1/유럽정치2

e. 선택과목Ⅱ(12단위이상 선택필수)

선택과목Ⅱ는 다양한 법분야에 관해서 기초적인 이해를 꾀하면서도 첨단적 혹은 복합적인 법률문제를 분석하는 것으로 법조인으로서 보다 고도의 실천적 능력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과목이다.

이러한 선택과목Ⅱ의 본지에 부합하기 위해,

생명윤리와 법/정보법/세법/소비자법/ADR과 법 등 실로 다양한 전문영역에 걸쳐 총 57개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과목당 단위수는 2단위).

상기의 과목 이외에 법학연구과법정이론전공 및 국제공공정책전공 과목(연구자양성코스에 개설된 강좌)을 전자에 대해서는 8단위, 후자에 대해서는 4단위를 한도로 이수할 수 있다.

(4) 일본 변호사양성제도에 대한 평가

법과대학원의 역할은“과정에 의한 법조양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법과대학원 입학자가 그 정규과정 기간 동안 교육내용에만 충실히 따라 학습하면 수료 후 수료인원의 70-80% 범위 내에서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도입을 앞두고 이미 법과대학원 수료 후 사법시험의 합격자 수가 旧사법시험과의 병행(2010년 까지)과 사법시험 불합격자의 재시 등을 원인으로 비울상으로는 사법시험의 합격률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특히 법과대학원 도입 이후 예상대로 사법시험의 합격률이 감소하였고 결국 사법시험도 旧사법시험과 동일한 경쟁시험으로 변질되어 사법시험의 합격자수나 합격률만을 중시하는 풍토가 법과대학원 도입 이후에 지속되고 있다. 법과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과 교원 모두 사법시험에의 합격을 위한 시험과목만을 중시하게 되어 법과대학원의 교육과정이 다양성을 잃고 교육의 질마저 저하시키고, 결국에는 사법시험 합격률이 낮은 법과대학원에는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게 될 것이고 전국의 법과대학원 지원자수나 지원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IV. 여 론

현재 우리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꼽아 본다면, 일단 로스쿨에 입학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당연히 변호사자격을 취득해 실무에 나아가 일할 것만을 염두에 두고 이를 위해서만 경쟁적인 공부에 몰입하고 있을 뿐 학문으로서의 법학은 누구도 염두에 없는 현실, 그러면서도 법학부가 폐지되어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이어갈 우수한 인재를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으로 입학하는 우수한 인재로부터 수혈받지 못해 학문후속세대가 단절하여 법학이라는 학문이 죽어가고 있는 문제, 종래 4년의 법학교육을 부여하던 것을 3년으로 단축하고 나아가 거기에 실무교육을 가미하여

인턴교육 등을 방학 때마다 강요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실무교육의 내실 측면에서는 뚜렷하게 내실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을 들 수 있다.

한편, 로스쿨을 설치하지 못한 대학,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학부 법학전공과정은 대학구조조정 표적이 되어 폐지 수순을 밟거나 점진적으로 법학전공 정원을 줄이고, 교수 채용도 없이 인접 타전공인 행정학, 경찰학, 정치학과 통합학부체제로 운영함으로써 법학전공자에게 양질의 교육을 시킬 환경을 잃어가고 있다. 정부의 정책적 배려도 전무하며, 또 이렇게 법학에 대한 수요가 없어진다면 학부의 법학전공과정은 불원간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학부 법학교육의 몰락은 현 체제·상황에서 로스쿨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로스쿨에서는 실무중심 교육을 하므로 법학전공자 수의 격감은 로스쿨 교육(솔직히 표현하면, 변호사시험과목에 적합한 강의)의 수월성을 막는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학부 법학교육의 몰락은 ‘학문으로서의 법학’이라는 존재의 소멸을 의미하며, 로스쿨의 학문후속세대 양성기능을 무력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학부 법학교육의 몰락을 방지하고 로스쿨이 학문후속세대 양성기능을 얻기 위해서는 로스쿨과 로스쿨을 설치하지 않는 일반 법과대학(법학과)과의 상생의 논리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법과대학에서는 양질의 기본법학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학부생들에게 로스쿨로의 진학을 유도하여 로스쿨과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법학자들은 법조일원화를 추구하는 로스쿨제도를 직시하여 로스쿨 학위과정을 거친 법학학문후속세대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풍토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는 박사과정 자체는 물론이고 학위취득과정도 엄격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적어도 로스쿨 체제하에서는 국내박사가 주류를 이루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과목구성과 상사법 교육의 발전방향

— 자본시장법·보험법·해상법·어음수표법의 위기 속에서 —

정 준 우*

I. 서설

- 2009년에 개원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이라고 함)에 내년이면 10기생들이 입학하게 된다. 따라서 지난 9년 동안의 교육경험과 각종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법전원이 법령상의 교육이념¹⁾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법조인으로서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졸업생들이 우리 사회가 기대하였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검토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 구체적으로 ① 법전원의 교육과정이 체계적인지, ② 교과목의 편제는 변호사의 양성에 적합한지, ③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이론과 실무를 함께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④ 방학기간의 실무실습이 꼭 필요한지, ⑤ 학생들이 전문분야를 개척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과목을 수강하는지, ⑥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과 난이도는 적절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바탕으로 상사법 분야의 교육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며 발표내용에 관련된 간략한 토론을 하고자 한다.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Ⅱ. 쟁점사항의 검토

1. 상사법의 교육과정

- 변호사시험의 민사법군은 민법·상법·민사소송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상법의 경우에는 6개편(총칙·상행위·회사·보험·해상·항공) 외에 어음수표법도 출제범위에 포함된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법전원에서도 상법의 경우에는 비록 교과목명은 조금씩 다르더라도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기존의 법과대학과 다른 점은 이론교육 외에 실무교육과 판례분석 등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 참고로 인하대학교의 경우에도 다른 법전원과 마찬가지로 상법의 출제범위에 속하는 [상법 1(총칙/상행위), 상법2(주식회사법), 소규모회사법, 보험법, 운송계약법, 어음수표법, 상법연습] 외에 [자본시장법, 금융거래법, 기업소송실무, M&A의 이론과 실무]와 같은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과목을 상사법 분야의 교과목으로 편재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소규모회사법에서는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를 다루고 있고, 운송계약법에서는 해상운송·항공운송·복합운송을 강의하고 있다.
- 한편 매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할 때 위의 상사법 분야 교과목의 수강로드맵을 제시한 후 학습효과의 제고를 위해 가능한 로드맵에 따라 수강하도록 지도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학생들이 이에 따르지 않고 있다(특히 법학전공자의 경우에 더욱 그러함). 그리고 변호사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교과목인 [상법1]과 [상법2]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강의가 이루어지지만, 그 외의 교과목은 겨우 강의를 유지하고 있다.
- 이러한 경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취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과목의 성적과 변호사시험에 대한 중압감이다. 그리하여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본 학생들은 주요과목을 수강하면서도 교수가 강조하는 교과서가 아닌 학원가에서 발간하는 각종 요약집에 의존하여 공부하고 있고, 그로 인해 체계적인 이해중심의 학습보다는 암기 위주의 공부가 되면서 점차 법전원이 추구하는 교육방향을 벗어나고 있다.
- 따라서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제도적인 변화도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변호사시험이 점차 경쟁시험으로 전락되고, 그에 따라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나 합격자수가 중시되는 풍토가 향후 지속될 것이라는 발표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법전원의 교육이념에 결코 부합하지 않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질문 1] : 이 점에 대하여 발표자께서 생각하신 방안이 있다면 듣고 싶다.

○ 한편 상사법 분야에서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실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법전원은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양성에 그 목표가 있으므로 법조실무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일부에서는 실무교육의 비중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법전원은 곧바로 법률서비스시장에 투입될 변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므로 실무교육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 그런데 현실적으로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그것도 비법학전공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 하에서 공법군·민사법군·형사법군·선택과목군에 속하는 그 많은 법령들을 체계적으로 숙지시키고 실무적인 완결성까지 갖추도록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한지를 판단한 후 그 분야에 더 집중하여 교육해야 하는데, 역시 법이론의 체계적인 학습이 더 중요하다. 탄탄한 법이론의 바탕이 없으면 변호사가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이로 인해 결국 전체적인 법률문화의 쇠퇴와 불량한 법률서비스에 관련된 분쟁이 양산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질문 2] : 발표자께서도 이런 맥락에서 법전원의 역할을 기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외국의 동향과 국내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육방법이 우리나라에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2. 상사법의 수강현황

○ 위에서 밝힌 인하대학교의 상사법 분야 교과목 중 ① [상법1(총칙/상행위)과 상법2(주식회사법)]는 1학년이 수강대상이고, ② [소규모회사법·보험법·운송계약법·어음수표법·기업소송실무]는 2학년이 수강대상이며, ③ [상법연습·자본시장법·금융거래법·M&A의 이론과 실무]는 3학년이 주된 수강대상이다. 그리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이러한 로드맵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 한편 법전원 학생들 중 법과대학에 다니면서 사법시험을 준비하였던 학생들의 대부분도 2차시험 과목인 상법은 많이 공부하지 못한 현실, 비법학전공자의 경우에는 법학 그 자체가 접근하기 쉽지 않은 어려운 분야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생들의 상사법 분야 교과목의 수강에는 분명히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강의를 하면서 수시로 확인하게 되는데, 그 주요내용과 대처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3학년의 수강과목인 [상법연습]의 경우에는 변호사시험과 유사한 형태의 사례문제를 매주 풀면서 상법 전반을 정리한다. 이를 위해 비록 강제조건은 아니지만 수강하기 전에 [상법1/상법2/보험법/어음수표법]을 먼저 수강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런데 수강생들의 대부분은 보험법과 어음수표법을 수강하지 않아서 그에 관련된 사례문제를 이해하지 못하였고, 이에 긴급처방으로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어음수표법만 1주 정도 시간을 할애하여 주요쟁점을 정리해 준 뒤에 종합문제를 다루고 있다.
- 둘째, 2학년 수강과목인 [운송계약법]의 경우에는 해상운송과 항공운송 및 복합운송을 강의하는데, 법전원 초기인 1기생과 2기생의 경우에는 전문분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 수강생이 많았다. 그렇지만 그들도 용어부터 낱설고 각종 국제조약이 소개되는 동 강좌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에 법규정의 내용과 그 해석에 관계된 학생들의 이해증진을 위해 각종 VTR 자료와 실제사건을 활용하여 주요쟁점을 정리하며 강의하였고, 인천항이나 인천공항의 물류시스템을 견학하고 관계자들을 면담하며 실제사건에 관계된 많은 실무적인 이야기를 듣게 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의 이해도는 증가되었고, 수강생 중 현재 7명이 물류기업의 사내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상당수는 이러한 수강로드맵에 따르지 않고 있다. 더욱이 변호사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분야의 교과목인 [상법1]과 [상법2] 그리고 변호사시험의 사례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교과목인 [상법연습]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지만, 그 외의 교과목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수강하지 않거나 일부의 학생들만이 수강하여 강좌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학생들과 면담한 결과를 종합하면, ① 변호사시험 응시생의 누적으로 인해 전체 합격률이 50% 정도에 불과하게 된 점, ② 민사법군 중 민법의 방대한 학습량에 대한 부담, ③ 원활한 취업을 위해 재학 중 가능한 학점을 잘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 ④ 수험준비에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변호사시험에 직접 관계된 교과목만 수강하려는 경향, ⑤ 사례문제로 어쩌다 한번 출제되고 선택형에서도 겨우 1-2문제만 출제되는 보험법이나 어음수표법은 개인적으로 주요쟁점 위주로 간단히 정리하거나 포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 등이 주된 원인이다.
- 이런 상황 하에서는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전문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법전원의 목표는 사실상 실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 법전원이 추구하고 있는 특성화교육도 제도적인 장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현상에는 제도적 및 관행적인 문

제가 내포되어 있어 그 해결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수와 학생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충의를 모아야 한다. 그리고 우선은 실현가능한 방법부터 모색하여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①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을 특정분야에 치중하지 않도록 재조정하는 방법, ② 법전원협회의 주관 하에 1년에 3회 실시되는 모의고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중 ①의 경우는 아래에서 별도로 검토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②의 방법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법전원협회가 주관하는 모의고사는 사실 각 법전원이 졸업시험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지금처럼 굳이 변호사시험과 유사하게 출제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즉 모의고사에서는 상법 전반을 골고루 공부하였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출제를 함으로써 학생들이 재학 중 상사법 교과목을 두루 공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문 3] : 이 점에 대한 발표자의 생각은 어떠한지?

3. 상사법의 출제경향

- 발표자께서 지적한 것처럼 변호사시험에서 상법의 배점을 살펴보면, ① 사례형문제 100점, ② 기록형문제 20-25점, ③ 선택형문제 50점 정도이고, 출제된 문제의 대부분은 회사법에 관련된 것이다. 그리하여 회사법을 제외한 상법총론과 보험법 및 어음수표법은 가끔씩 사례문제에서 작은 문항으로 출제되고 있고, 선택형에서도 4-5문제 정도만 출제되고 있으며,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의 경우에는 출제된 예가 없다.²⁾ 그리고 이러한 편향된 출제방법은 법전원협회의 모의고사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 이런 상황 하에서는 회사법을 제외한 다른 상사법 분야 교과목이 결코 활성화될 수 없고, 이는 장기적으로 상법의 침체현상을 더욱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먼저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문제의 50%는 회사법에서 출제하고, 그 나머지 50%에는 다른 교과목을 안분하여 출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해상운송이나 항공운송에서도 출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화물운송과 국내·외적인 여객운송의 비중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 그리고 출제문제의 내용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규정내용과 쟁점사항들을 학생들이 제대로

2) 과거 사법시험의 경우에도 해상운송에 관련된 문제는 평균 10년에 한번 정도 출제되었다.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정도로 난이도를 조정해야 한다. 현재의 일부 문제는 너무 지엽적이거나 어려워 학생들의 불만이 많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수험생들이 주어진 시간 내에 출제문제를 다 풀거나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문제나 지문의 분량도 조절해야 하고, 선택형의 경우에는 너무 판례에 근거하거나 치중하지 않아야 한다.

[질문 4] : 이 점에 대한 발표자의 생각은 어떠한지?

법학전문대학원의 과목구성과 상사법 교육의 발전방향

— 자본시장법·보험법·해상법·어음수표법의 위기 속에서 —

최 민 용*

발표문은 로스쿨 교육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과 독일, 일본의 로스쿨 교육을 검토하면서 비교법적 시사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 로스쿨 도입이 10년이 되었고, 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점들이 적지 않게 노출되고 있으므로, 이 모색은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로스쿨 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로스쿨 제도에 내재하는 여러 가지 모순적 상황, 요구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우리의 환경이 미국의 환경과 다른 점이 있었다는 점을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적정한 변호사의 수가 얼마인가는 아직도 결론이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사람들 사이의 문제를 법률로 해소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가는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전제로 변호사 시험은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묻는 비교적 수월한 시험으로 운영하는 방식의 미국의 방식입니다. 따라서 로스쿨에서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교육시간에 변호사 시험을 준비시켜주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case method를 기본으로 한 수업을 충실히 듣고, 각자의 향후 직업을 염두에 두고 수업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학교의 수업이 변호사 시험을 커버하지 못한다면, 학생들은 따로 시험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험합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시험 과목의 경우는 높은 수험적합성이 요구되고, 비시험과목은 폐강의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은 실무에서 중요한 법이고, 이 법에 대한 이해없이 관련 실무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합격하여야 실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처럼 비시험과목을 수강할 때는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 경북대 법전원

미국의 제도를 수용하면서도 변호사 시험은 전통적으로 사법시험이 가졌던 엘리트 가리기 시험의 성격을 유지하고자 하면 결국 로스쿨 교육은 시험을 위한 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직면한 로스쿨 교육은 교수에게나 학생들에게도 아카데미즘이나 리걸 마인드 함양이 주는 학문이나 학업의 보람, 성취감을 주기 어렵습니다. 또 실무와 괴리되지 않는 법학교육이라는 애초의 로스쿨 제도도입의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 시험의 방향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Ⅰ 제2세션

일본 법과대학원의 교육현황과
신사법시험의 출제경향 및 시사점
- 상사법 분야를 중심으로 -

김 홍 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본 법과대학원의 교육현황과 신사법시험의 출제경향 및 시사점

- 상사법 분야를 중심으로 -

김 흥 기*

I. 머리말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法學專門大學院)이 출범한지 8년이 지났다. 사법제도 개혁방안의 하나로 추진된 법학전문대학원에 의한 법조인 양성은 획기적인 측면이 많지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저하, 실무교육의 불충분, 변호사 직역 확대의 한계, 법학과의 어려움, 학문후속세대 양성 등 개선이 필요한 문제도 여전히 많다. 이러한 문제들은 향후 우리나라의 법조인 양성뿐 아니라 법학교육 및 국민의 법의식에 관련되어 있어서 결코 경시할 수 없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보다 5년 앞서 법과대학원(法科大學院)을 도입·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논의한 것이다. 필자는 전공이 상사법 분야이므로 상사법 분야에 중점을 두어서 살펴보았다. 일본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면서 느낀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와 시험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는 양립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변호사시험은 교육을 보완하는 수준과 방식이어야 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를 해치는 정도로 과도해서는 아니 된다. 일본은 법과대학원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시험 제도를 통한 법조인 배출을 허용하였고, 그 결과 신사법시험 합격률이 낮아지면서 법과대학원에서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법조인 배출의 통제가 필요하다면 학제개편 등을 통해서 논의되어야지 합격자의 숫자를 통제하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 악영향을 미친다.

둘째, 우리나라는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법학부, 법학전공 학생수 등 법학교육의 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이 지나치게 부실하다는 것이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과 더불어 법학부를 폐지하였기 때문인데, 일반시민의 사회·경제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학교육까지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서 기초적인 법학교육 및 법학연구자의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부에서의 교양법학교육을 강화하고, 법학전문대학원 미설치 대학의 법학과 학생들이 다양한 법 관련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와 일본은 공통적으로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때문에 필수과목, 수험과목의 수강집중현상이 심화되면서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취지가 살아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경향이 심화된다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선발제도의 장점이 사라지는 것이고,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시스템보다 나을 바가 없게 된다. 이러한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여서 변호사시험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그 밖에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을 갖추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대법원, 법무부, 변협 및 대학 간의 협력이 필요하고, 졸업 후 LL.M. SJD 과정 등의 이수를 권장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일본의 법과대학원 운영 현황을 실증적인 통계를 통해서 분석한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Ⅱ. 일본 법과대학원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았다. 그 다음에는 “Ⅲ. 일본 법과대학원의 교육과정 및 교육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다음에는 “Ⅳ. 일본의 신사법 시험과 상사법 출제경향”을 분석하였다. 끝으로는 “Ⅴ. 우리나라 로스쿨 상사법 교육에의 시사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Ⅱ. 일본 법과대학원의 현황과 실태 분석

일본에서 처음으로 대학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으로 주목을 받은 법과대학원(法科大學院)¹⁾은 신사법시험 합격률 저하 등으로 지원자 및 입학생의 수가 크게 감소하고, 모집정지가 잇따르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²⁾ 또한 실무교육에 대한 불안도 지적되고, 변호사 수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분야에서 변호사의 활용도 처음에 상정한 것만큼 진행되지 않고 있다. 아래에서는 일본 법과대학원의 출범 경위, 현황 분석, 일본 내의 평가 등을 살펴본다.

1) 일본 로스쿨의 공식적인 용어는 ‘법과대학원(法科大学院)’이다. 法科大学院の教育と司法試験等との連携等に関する法律. 다만, 각 대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에는 차이가 있다. 동경대학은 大學院法學政治學研究科 法曹養成專攻(法科大學院), 게이오대학은 大學院 法務研究科(法科大學院)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 江澤和雄, 法科大学院の現状と課題, 『レファレンス』(国立国会図書館, 2014.7), p.1.

1. 일본 법과대학원의 출범 경위 및 배경

1999년 7월에 일본의 내각에 설치된 사법제도개혁심의회는 2001년 6월에 「사법제도개혁심의회 의견서(司法制度改革審議会意見書)」³⁾를 공표하고 법과대학원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를 제안했다. 이에 따라 2001년 11월에 「사법제도개혁추진법(司法制度改革推進法)」이 성립하여 같은 해 12월 내각에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가 설치되었고, 최고재판소, 일본 변호사협회 등도 이에 호응했다.⁴⁾ 제도 설계를 위해서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 산하에 법조인 양성검토회(法曹養成検討会), 문부과학성 산하에 법과대학원부회(法科大学院部会)가 각각 설치되었다.

2002년, 2003년에는 법과대학원 관련 4법⁵⁾이 성립되었고, 2004년 4월에는 법과대학원이 개교하였다. 우리나라의 법학전문대학원이 2009년 개교한 것에 비교하면 5년이 빠르다.

법과대학원의 출범배경에 대해서는 ‘적은 법조인의 수와 글로벌화의 진전, 사후구제형 사회로의 이행 등을 지적하는 견해’⁶⁾, ‘사법제도개혁의 논의 중에 법과대학원을 설치가 결정되었고, 그 영향이 대학이나 대학원 제도에 미치고 있다는 견해’⁷⁾, ‘대학원 단계에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려는 문부과학성의 정책과 사법개혁의 2가지 흐름이 맞물려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경과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슷하다.

2. 일본 법과대학원의 현황과 자료분석

일본의 법과대학원은 “법조인 양성을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된 전문직 대학원”⁸⁾을 가리킨다. 즉, 판사, 검사, 변호사의 양성 교육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의 법과대학원 수료자는 법무박사(法務博士) 학위,⁹⁾ 및 신사법시험¹⁰⁾ 응시자격¹¹⁾을 취득한다.

3) 司法制度改革審議会, 「司法制度改革審議会意見書-21世紀の日本を支える司法制度-」(司法制度改革審議会, 2001. 6.12.), p.67. <http://www.veritas-law.jp/ronbun_doc/20091011154016_1.pdf>(2017.3.10. 방문).

4) 最高裁判所, “司法制度改革推進計画要綱—着実な改革推進のためのプログラム—”(2002.3.20.) <http://www.courts.go.jp/about/kaikaku_keikaku/kaikaku_gaiyou/index.html>(2017.3.15. 방문); 日本弁護士連合会, “司法改革の経過” <<https://www.nichibenren.or.jp/activity/justice/citizen.html>>(2017. 3.15. 방문).

5) 관련 4법이란 学校教育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2002년 법률 제118호), 法科大学院の教育と司法試験等との連携等に関する法律(2001년 법률 제139호), 司法試験法及び裁判所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2002년 법률 제138호), 法科大学院への裁判官及び検察官その他の一般職の国家公務員の派遣に関する法律(2003년 법률 제40호)을 가리킨다.

6) 青山善充, “法科大学院の発足と法学教育の方法”, 『暁の鐘ふたたび: 明治大学法科大学院開設記念論文集』(明治大学法科大学院, 2005), pp.28-29.

7) 天野郁夫, “専門職大学院の問題点”, 日本学術会議第2部「第2部報告 法科大学院と研究者養成の課題」, 附属資料(2003.6.24.), p.57. <<http://www.scj.go.jp/ja/info/kohyo/18pdf/1831.pdf>>(2017.3.25. 방문).

8) 日本 専門職大学院設置基準(2003 문부과학성령) 제18조 제1항.

9) 日本 学位規則(문부과학성령 제9호) 제5조의2(전문직대학원과정 수료자의 학위). 반면에 우리나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면 ‘법학전문석사’를 취득한다(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10) 현재 일본의 사법시험은 법과대학원 출범 전에 실시되던 사법시험(‘구사법시험’)과 구별하여 ‘신사법시험’이라고 한다.

각 법과대학원은 교육과정, 교원조직 기타 교육 및 연구활동의 상황에 대해서 법학대학원 대학평가기준에 따라 5년 마다 인증평가를 받는다.¹²⁾ 이러한 법과대학원 인증평가방식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¹³⁾

그러나 야심차게 출발한 일본의 법과대학원은 현재 신사법시험 합격률 하락 등으로 지원자 및 입학자 수가 크게 감소하고, 모집정지가 잇따르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출범 첫해인 2004년도에 68개 학교가 인가를 받았고,¹⁴⁾ 2005년도에 6개가 추가로 인가를 받아서 총 74개의 법과대학원이 설치되었지만, 모집을 정지·폐교하는 학교가 속출하면서, 2015년 법과대학원의 숫자는 54개교로 감소했다.¹⁵⁾ 이는 일본의 법과대학원이 처한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이다.

한편 법과대학원의 지원자 및 입학정원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법과대학원의 지원자 수는 2004년 72,800명에서 2016년 8,724명으로 10분의 1 가까이 줄었고, 입학생 수도 2004년 5,767명에서 2016년 1,857명으로 3분의 1 정도 감소하였다(〔표1〕〔표2〕〔별첨5〕 참조). 즉, 2016년 기준, 일본 법과대학원의 실제 입학생 1,857명(정원은 2,724명이다. [별첨5] 참조)은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2,500명)에 비교해서도 그 숫자가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학생 중에서 법학기수자의 비율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4년도 입학생 중에서 법학기수자는 2,350명(40.7%)이었으나, 2010년 입학생 중에서는 법학기수자가 1,923명(46.7%), 2016년도 입학생 중에서는 법학기수자가 1,222명(65.8%)으로 그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표2〕). 법학기수자의 신사법시험 합격률이 비법학전공자에 비교해서 3배 가까이 높은 것을 고려하면, 다양한 전공자의 법조 진출이라는 법과대학원의 설립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11) 日本 司法試験法 第4條(사법시험 수험자격등)

1. 법과대학원 수료자(그 수료일 후 5년을 경과하기까지의 기간)
2. 사법시험 예비시험 합격자(그 합격발표일 후 5년을 경과하기까지의 기간)

12) 法科大学院の教育と司法試験等との連携等に関する法律 第5條(法科大学院の適格認定等). 인증평가는 대학평가·학위수여기관, 대학기준협회, 일본변호사협회 법무연구재단이 실시하고 있다. 인증평가에 대해서는 加藤哲夫, “法科大学院と認証評価の役割”, 『IDE—現代の高等教育』551(IDE大学協会, 2013.6), pp.50-54. 참조.

13) 법과대학원이 제출하는 자기점검보고서의 내용 등은 우리나라보다 간략하다. 東京大學, 『法科大学院自己点検自己評価書』(2013.6) 등 참조.

14) 처음에 인가를 신청한 대학은 총 72개 대학이었다. 문부과학성은 2003년 11월 66개교는 인가, 2개교는 보류, 4개교는 불인가 판정을 내렸는데, 보류판정을 받은 2개 대학이 지적 사항을 보완하고 바로 재신청을 하여서 출범 당시에는 68개교가 인가를 받았다. 박세화, 일본 법과대학원 제도의 현황 및 평가, 『연세법학』(연세법학회, 2005), 18면.

15) 江澤和雄, 前掲報告書(주2), p.6; 文部科學省, 『法科大学院について』文部科學省提出資料(文部科學省, 2016), 1면; 2015년 기준, 입학정원 미달의 법과대학원은 총 54개교 중 50개교이고, 이중 입학정원을 75% 이상 충족하는 법과대학원은 16개, 입학정원이 50%에 못 미치는 법과대학원은 23개교이다. 문부과학성 통계자료.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ukyo/chukyo4/012/siryo/_icsFiles/afieldfile/2015/07/15/1359973_03.pdf>(2017.3.10.방문).

【표1】 일본 법과대학원 지원자 수 및 경쟁률

(단위 명, 괄호 %)

연도	국립	공립	사립	합계
2004	16,691(10.1)	2,425(17.3)	53,684(14.1)	72,800(13.0)
2005	9,884(5.6)	1,047(7.5)	30,825(7.9)	41,756(7.2)
2006	11,052(6.3)	1,493(10.7)	27,796(7.1)	40,341(6.9)
2007	12,453(7.1)	2,035(14.5)	30,719(7.8)	45,207(7.8)
2008	10,734(6.1)	1,897(13.6)	26,924(6.9)	39,555(6.8)
2009	8,113(4.6)	1,453(10.4)	20,148(5.2)	29,714(5.2)
2010	6,913(5.1)	1,206(9.6)	15,895(4.7)	24,014(4.9)
2011	7,005(5.1)	1,139(10.2)	14,783(4.9)	22,927(5.1)
2012	6,046(4.4)	815(7.3)	11,585(3.8)	18,446(4.1)
2013	4,615(3.5)	588(5.3)	8,721(3.1)	13,924(3.3)
2014	3,671(2.8)	414(3.7)	7,365(3.1)	11,450(3.0)
2015	3,427(3.1)	289(2.6)	6,654(3.4)	10,370(3.3)
2016	2,753(2.7)	224(2.7)	5,297(3.2)	8,274(3.0)

〈출처〉 中央教育審議會大学分科会, 志願者数・入学者数等の推移, 2016.5.11. 〈표1〉 수정.

【표2】 일본 법과대학원 입학생 수 및 기수자, 미수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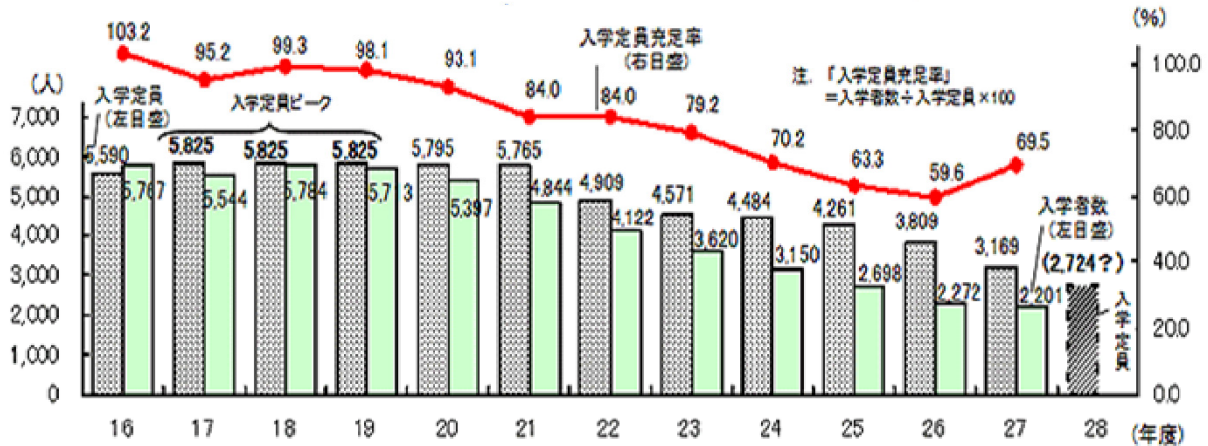
(단위 명, 괄호%)

연도	국립			공립			사립			합계		
	기수자	미수자	합계	기수자	미수자	합계	기수자	미수자	합계	기수자	미수자	합계
2004	727 (43.3)	964 (56.7)	1,701	76 (57.1)	57 (42.9)	133	1,537 (39.1)	2,396 (60.9)	3,933	2,350 (40.7)	3,417 (59.3)	5,767
2005	718 (40.5)	1,055 (59.5)	1,773	84 (64.6)	46 (35.4)	130	1,261 (34.6)	2,380 (65.4)	3,641	2,063 (37.2)	3,481 (62.8)	5,544
2006	740 (40.6)	1,082 (59.4)	1,822	83 (61.5)	53 (39.0)	136	1,356 (35.4)	2,470 (64.6)	3,826	2,179 (37.7)	3,605 (62.3)	5,784
2007	797 (44.5)	994 (55.5)	1,791	84 (59.2)	58 (40.8)	142	1,288 (34.1)	2,492 (65.9)	3,780	2,169 (38.0)	3,544 (62.0)	5,713
2008	761 (44.1)	963 (55.9)	1,724	82 (60.3)	54 (39.7)	136	1,223 (34.6)	2,314 (65.4)	3,537	2,066 (38.3)	3,331 (61.7)	5,397
2009	758 (47.3)	845 (52.7)	1,603	80 (58.4)	57 (41.6)	137	1,183 (38.1)	1,921 (61.9)	3,104	2,021 (41.7)	2,823 (58.3)	4,844
2010	703 (54.2)	594 (45.8)	1,297	73 (62.4)	44 (37.6)	117	1,147 (42.4)	1,561 (57.6)	2,708	1,923 (46.7)	2,199 (53.3)	4,122
2011	709 (55.0)	580 (45.0)	1,289	66 (62.9)	39 (37.1)	105	1,141 (51.3)	1,085 (48.7)	2,226	1,916 (52.9)	1,704 (47.1)	3,620
2012	698 (58.3)	506 (42.0)	1,204	70 (65.4)	37 (34.6)	107	1,057 (57.5)	782 (42.5)	1,839	1,825 (57.9)	1,325 (42.1)	3,150
2013	653 (59.4)	447 (40.6)	1,100	71 (74.7)	24 (25.3)	95	893 (59.4)	610 (40.6)	1,503	1,617 (59.9)	1,081 (40.1)	2,698
2014	624 (62.5)	374 (37.5)	998	57 (80.3)	14 (19.7)	71	780 (64.8)	423 (35.2)	1,203	1,461 (64.3)	811 (35.7)	2,272
2015	604 (64.8)	328 (35.2)	932	50 (75.8)	16 (24.2)	66	777 (64.6)	426 (35.4)	1,203	1,431 (65.0)	770 (35.0)	2,201
2016	559 (68.0)	263 (32.0)	822	49 (80.3)	12 (19.7)	61	614 (63.0)	360 (37.0)	974	1,222 (65.8)	635 (34.2)	1,857

〈출처〉 中央教育審議會大学分科会, 志願者数・入学者数等の推移, 2016.5.11. 〈표2〉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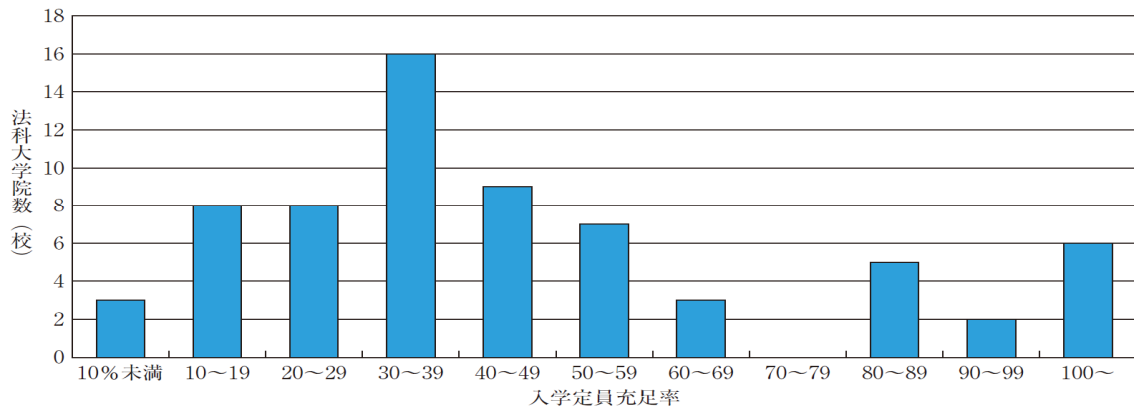
아래 통계에서 보는 것처럼 법과대학원의 입학정원충족율(평균)은 2009년 84%에서 2014년 59.6%, 2015년 69.5%, 2016년 68%로 감소하고 있다(〔그림1〕〔별첨5〕). 2014년 기준, 입학정원충족율이 10% 미만인 대학은 3개, 10-20%인 대학은 8개, 20-29%인 대학은 8개이고, 100%인 대학은 6개에 불과하다(〔그림2〕). 이는 법과대학원 수료자의 신사법시험 합격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우수인재가 법과대학원의 지원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림1】 일본 법과대학원 입학정원충족율 (평균)



〈출처〉 旺文社 教育情報センター, 政府, 法曹養成改革方針を決定, 2015.8.3.자

【그림2】 일본 법과대학원별 입학정원 충족률 (2014년)



〈출처〉 江澤和雄, 法科大学院の現状と課題(주2), 2014.7, 8면

신사법시험의 합격률은 2006년 48.25%에서 2008년 32.98%, 2012년 25%, 2016년 22.95%로 계속하여 하락하고 있으나, 합격자 중에서 예비시험 출신의 합격자 수는 2012년 58명에서 2013년 120명, 2014년 153명, 2015년 186명, 2016년 235명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표7〕 일본 사법시험 합격자수 참조). 게다가 대학재학 중인 예비시험 합격생의 숫자는 2011년 29명, 2012년 44명, 2013년 53명, 2014년 55명, 2015년 74명, 2016

년 179명으로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표8)). 예비시험 출신의 신사법시험 합격률이 60-70%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할 때(표7), 이는 법학부의 우수한 인재들은 법과대학원을 거치지 않고, 사법시험 예비시험 → 사법시험 → 사법수료소를 거쳐서 법조에 곧 바로 진출하고 있다는 뜻이다. 즉, 한 마디로 일본에서는 ① 사법시험 예비시험 합격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수료소가 '1순위 루트'이고, ② 법과대학원 수료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수료소는 '2순위 루트'가 된 것이다.

한편 법과대학원 재학 중 합격자의 숫자는 2011년 6명, 2012년 60명, 2013년 161명, 2014년 164명, 2015년 165명, 2016년 154명에 이르고 있는데(표8), 이는 일본이 법과대학원 재학 중에도 예비시험을 거쳐서 신사법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법과대학원에 재학하는 많은 학생들이 법과대학원 교육과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예비시험 → 신사법시험을 치르고 있다는 뜻이다.

위와 같은 일본의 상황은 한국의 사법시험 제도의 부활 논의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필자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경험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법시험 제도가 부활하여 일본처럼 법학전문대학원과 사법시험 '투트랙 시스템(two track system)'이 되면, 사법시험이 1순위 루트가 될 가능성이 높고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의 취지는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3. 일본 법과대학원의 성과와 과제

3.1 성과

일본의 법과대학원은 신사법시험 합격률 등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 성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지적된다.

첫째, 판검사 양성 중심의 관료사법에서 변호사 양성 중심의 민간사법으로의 변화가 지적된다. 이러한 취지로 久保利英 교수는 “법과대학원은 법조인구의 비약적인 증가를 전제한 것으로 최고재판소를 정점으로 하는 관료사법에서 변호사를 위주로 하는 사법개혁의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다”¹⁶⁾고 한다.

둘째,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의 취지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한다.¹⁷⁾ 山野目章夫 교수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인적기반을 구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대학에게 담당하게 한다는 취지를 후퇴시켜서는 아니 된다.”¹⁸⁾, 木庭顯 교수는 “법과대학원 제도는 단순히 법조인 양성과 사법개혁

16) 久保利英明, “大宮法科大学院大学はなぜ出来たのか—ロースクールから法科大学院への10年”, 『大宮ローレビュー』第7号(2011.2), p.86.

17) 文部科学省, 『法科大学院制度のこれまでの成果, 課題, 改善方策, および今後の方向性』第4回 法曹養成制度検討会議文部科学省説明資料(2012.11.29), p.5. 이 자료에서는 그밖에 다양한 인재의 유입, 교육과정에 기초한 교육방법의 확립, 실무수습기회의 제공, 이론과 실무의 가교 확립 등을 법과대학원의 성과로 제시하고 있다.

18) 山野目章夫, “研究者教員からみた法科大学院の成果”, 『ロースクール研究』第20号(民事法研究会, 2012.12),

의 일환일 뿐 아니라 고등교육의 큰 변화라는 맥락에 있으며 이러한 전환은 전 세계적인 것이다.”¹⁹⁾고 한다.

셋째, 구사법시험의 폐해가 줄어들고 있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青山善充 교수는 “크게 보면 법과대학원 제도는 구사법시험의 난관 및 그에 따른 폐해를 상당 정도 극복해 왔으며,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로 정착하고 있다.”고 한다.²⁰⁾ 이러한 주장은 구사법시험의 합격률이 2-4%에 불과하였으나, 신사법시험의 합격률은 20-40%에 이르고 있는데([표7]),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3.2 문제점과 개선과제

3.2.1 문제의 근본원인

그러나 위와 같은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20-40%에 불과한 신사법시험의 합격률 하에서 교육 중심이라는 법과대학원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일본 법과대학원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한국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25개의 대학에서는 법과대학(법학부)가 폐지되었으나 일본에서는 같은 대학에서도 법과대학원과 법학부가 함께 존재한다. 따라서 법조인의 꿈을 가지는 학생들은 대학진학 시부터 법학부에 진학하고, 예비시험을 통해서 법조에 진출하고자 한다. 이것이 1순위 루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부재학생의 예비시험 합격생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표7][표8] 참조).

둘째, 일본에서는 법과대학원이나 법학부를 졸업했는지에 관계없이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신사법시험을 치를 수 있다. 즉, 한국의 종전 사법시험과 기본적으로 같은 구조이다. 통계에 의하면 예비시험 응시생 및 예비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의 신사법시험 합격률, 합격생 숫자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나, 이와 대조적으로 법과대학원 졸업생의 신사법시험 응시생 숫자 및 합격률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표7][표8] 참조), 이는 법과대학원의 흡인력이 계속하여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즉, 법과대학원은 매력을 잃어가는 반면에 예비시험의 유인(誘因)은 커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에 한해서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한 것과 대비되는데, 우리나라도 예비시험을 허용하면 이러한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p.11.

19) “적어도 소수 엘리트에만 관련된 것이 아닌 고급 대학원 교육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양과 질 높은 노동력이 공급되어야 한다고 한다. 木庭顕, “法科大学院をめぐる論議に見られる若干の混乱について”, 『UP』42(2)(東京大学出版会, 2013.2), p.2.

20) 青山善充, “司法制度改革審議会意見書からみた法科大学院の現実と課題”, 『ロースクール研究』第17号(民事法研究会, 2011.5), p.69.

3.2.2 법과대학원의 입학정원 감축, 통폐합의 진행

일본 정부와 법조계, 법학계도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각종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법과대학원의 설립인가가 엄격하지 않아서 다수의 법과대학원이 설립되었던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는데,²¹⁾ 처음에 나온 개선방안이 입학정원의 감축과 통·폐합 논의였다. 실제로 문부과학성은 2013년 11월 법과대학원에 대한 공적지원의 강화, 입학정원 감축방안 등 근본적인 재검토가 긴급하다는 입장을 밝혔고,²²⁾²³⁾ 이에 따라 일본의 법과대학원 숫자는 2007년 74개교에서 2016년 44개교로 감소하였으며, 전체 입학정원도 2007년 5,824명, 2014년 3,809명, 2016년 2,724명(실제 입학생수 1,857명)으로 감소하였다([표2][그림1][별첨5]).

3.2.3 예비시험, 법학기수자 제도의 개선 필요성

법과대학원을 통하지 않은 예비시험 응시자의 증가는 법과대학원 제도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예비시험 응시자의 숫자는 6,447명(2011년), 9,118명(2012년), 11,255명(2013년), 12,622명(2014년), 12,543명(2015년), 12,767명(2016년)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와 반대로 신사법시험 응시자의 숫자는 8,765명(2011년), 8,387명(2012년), 7,653명(2013년), 8,016명(2015년), 6,899명(2016년)으로 줄어들고 있다([표7][표8] 참조). 이러한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비시험 및 법학기수자 선발시험을 폐지하고, 10개의 법과대학원을 선발하여 시드(シード)교로 하고 그밖의 법과대학원은 폐교하자는 견해²⁴⁾도 있다. 그러나 일본은 법과대학원을 설치한 대학이 법학부를 존속시키고 있고, 학내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이처럼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큰 힘을 얻고 있지 못한 듯하다.

21)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2004년 법과대학원 출범 당시 대학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일정한 설치기준을 충족시킨 대학은 전부 인가해 주었다고 한다. 출범 당시에 무리를 한 대학도 많아서 수료자의 사법시험 합격률을 일정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고, 인증평가를 통과할 수 있는 법과대학원은 인가받은 대학 중 1/3이 될까의 의문이 그때부터 있었다고 한다. 김창록, “일본 법과대학원 제도의 구조와 문제점”, 『법학연구』 제44권 제1호(부산대 법학연구소, 2003), 66-67면.

22) 文部科学省, 「法科大学院の組織見直しを促進するための公的支援の見直しの更なる強化について」(2013.11.11.)(<http://www.mext.go.jp/b_menu/houdou/25/11/1341427.htm>(2017.3.10. 방문).

23) 비슷한 취지로 古口章 교수는 실효적인 정원 삭감, 구체적인 통폐합을 통하여 악순환의 원흉인 사태를 해소할 것, 지역 적정 배치, 야간 법과대학원을 위한 충분한 조치 등을 주장하였다. 古口章, “第2章 第4 法曹養成・法科大学院制度” 日弁連法務研究財団編 『法と実務』Vol.9(商事法務, 2013), p.269; 亀井尚也 교수는 법과대학원의 수와 정원의 감축에 따른 법과대학원의 수준을 높일 것 사법시험의 통과기준을 낮출 것 등을 주장하고 있다. 亀井尚也, “『理論と実務の架橋』を發展させる抜本策を中心に”, 『ロースクール研究』第17号(民事法研究会, 2011.5), p.93.95.

24) 米倉明, “法科大学院雑記帳(94) 法科大学院制度改革にあたっての留意点”, 『戸籍時報』Vol.692(日本加除出版株式会社, 2013.1), p.92.

3.2.4 실무교육 및 다양한 분야의 직역 확대 등의 필요성

일본에서는 실무교육에 대한 불안이 지적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변호사의 활용도 처음에 상정한 만큼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새로운 직업 영역의 개척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²⁵⁾이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의 신사법시험 합격자는 사법연수소에 입소하여 1년의 실무교육을 받는데, 이는 변호사협회 주관 하에 6개월의 실무수습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우리나라에 비교하면 일본의 실무교육은 훨씬 강화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3.2.5 법학부의 교육 및 법학연구자 양성 등

일본의 법과대학원이 안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기존 법학부와의 관계이다. 법과대학원을 살리려면 법과대학원 수료자에 한정하여 신사법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법학부 졸업생들의 예비시험 통로가 막히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도 법과대학원 출범 당시에 법학부의 존치 여부를 중요한 안건으로 논의하였으나 결국 법학부를 존치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화합(和合)을 중시하는 일본의 사회·정서적인 측면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의 법학부 존치는 법과대학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법학교육의 저변을 넓히고 많은 이들에게 법조인의 길을 개방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²⁶⁾ 우리나라처럼 법학부의 폐쇄를 선택함으로써 법학부가 담당해야 할 기초적인 법학교육이나 연구가 약화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법학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은 전문직업교육이라는 취지도 있지만, 다른 한편 법학은 수천년의 전통을 가진 기초학문인데, 법학전문대학에서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실무교육에 집중함으로써 기초적인 법학연구의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학부 과정에서의 교양법학교육의 확대, 법학부 설치대학에 대한 지원 등 법학교육 및 연구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²⁷⁾

아래 [표3]은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과 일본의 법과대학원을 비교한 것이다. 미국의 로스쿨이 모델인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변호사시험 혹은 사법시험의 응시자격을 원칙적으로 로스쿨 출신에게 한정하는지, 아니면 개방하는 지에서 핵심적인 차이가 있다.

25) 青山善充, 전계논문(주20), p.72.

26) 이러한 취지로 木庭顯 교수는 “실제로 법과대학원에는 지금도 법조인 양성의 맥락 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면서 … 본격적인 법학교육은 자연과학을 포함 철학·문학·역사학 등등의 소양을 가진 학생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법과대학원이 고급교육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형식기준은 완화하고, 다른 고등교육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그러한 협력의 일환으로 학부 후기 과정을 법학부에서도 공부하는 것 등을 제안했다. 木庭顯, “法科大学院をめぐる論議に見られる若干の混乱について”, 『UP』42(2)(東京大学出版会, 2013.2), p.2, 4-7.

27) 학부에서의 기초법학교육강화와 상법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영중, “로스쿨과 학부에서의 상법학 및 사회법학”, 『법학연구』 제4권 제1호(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p.49 이하 참조.

【표3】 한국, 일본 로스쿨 비교

	한국	일본	
로스쿨	입학생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사학위보유자(예정자 포함) •법학적성시험(LEET) •영어성적(TOEIC, TOEFL, TE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 이상 비법학부출신등 총원 노력 •법학적성시험 •1차(적성시험50%, 학부성적30%, 외국어20%), 2차(소논문50%, 지원자보고서30%, 학부성적20%)(게이오 대학 법학미수자 선발, 법학기수자 선발 시에는 법학과목시험성적(가장 비중이 높음)이 추가됨)
	지원자수	LEET시험(출원자수, 출원연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8년('09년 입학) 10,960명 •2014년('15년 입학) 8,788명 •2015년('16년 입학) 8,246명 •2016년('17년 입학) 8,838명 	지원자수(입학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4년, 72,800명(5,767명) •2014년, 11,450명(2,272명) •2016년, 8,724명(1,857명)
	학교·학생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교, 정원(1학년) 2,500명 •정원변동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74개교(2007. 기준) → 44개교(2016.1.기준) •정원 : 5,825명(2007년 최고점) → 3,809명(2014년) → 2,500명(2016년)
	수료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 •법학사, 법학부 취득 15단위 산입 가능 •법학전문석사 학위 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 이상 재학 (법학기수자 2년) •93단위 이상 취득 (법학기수자 단축 가능) •법무박사(法務博士) 학위 취득
	수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등록금(수업료기타) 금15,310,640원 (2013년 전국대학 평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경대(국립), 입학금 282,000엔, 수업료 804,000엔(1년) •中央大(사립), 입학금 300,000엔, 재학료1,400,000엔(1년), 시설비300,000엔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대학 •연간전액장학금수급자비율 37.1%(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경대(국립, 2013년, 입학정원 240명) •전기수업료전액면제 0명, 반액면제 73명 •후기수업료전액면제 0명, 반액면제 73명
	교육내용·커리큘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실무과목(법조윤리, 법률정보조사, 법문장작성, 모의재판 등) •실무수습(법원, 검찰, 로펌, 기업체 등) •외국어강좌(20과목 이상) •리걸클리닉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기본과목군(공법계, 민사계, 형사계) •실무기초과목군(법조윤리, 법률정보조사, 법문서작성, 모의재판) •기초법학·인접과목군(기초법학, 외국법 등) •첨단과목군(노동법, 세법, 경제법, 지재권등)
	설치인가·인증평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치인가(법학교육위원회 → 교육부장관) •평가(법전문평가위원회 → 5년 마다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치인가(대학설치·학교법인심의회) •평가기준(대학평가, 대학기준협회) •일련법 법무연구재단 → 5년 내 인증평가
법학부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스쿨 설치학교 → 법학부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학부 존속 	
사법시험·변호사시험, 변호사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 로스쿨 수료자만 자격 부여 •응시제한(5년 이내에 5회의 응시 가능) •사법시험 폐지 (2017년 마지막 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법시험 •응시자격 → 로스쿨 수료자, 예비시험 합격자 •응시제한(5년 3회 응시) 폐지(2015년 시행) 	
사법수습, 변호사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개월의 변호사연수 •재판연구원 2년→3년(임기), 검사1년(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간 사법수료소 실무수습 •봉급제 → 대여제로 전환 	
졸업생의 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호사시험 합격자 1,538명(2013년) •그중 재판연구원 50명, 검사 37명, 6대로펌 77명, 기타 1,37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66기 사법수료자(2014년 수료) 2,034 중 판사 보채용자 96명, 검사채용자 81명, 변호사등록자 1,566명(사무소소속 1,467명, 기업 내 변호사 46명)²⁸⁾ 	

〈출처〉 江澤和雄, 法科大学院の現状と課題(주2), 표1의 내용을 업데이트·수정

28) 일본에서 판사, 검찰관 임용방식에 대해서는 박종훈, “동아시아의 법조인 양성제도”, 『저스티스』 통권 제 158-2호(한국법학원, 2017.2)627-629면 참조.

Ⅲ. 일본 법과대학원의 교육과정 및 교육현황 분석

1. 교육이념 및 교육과정의 특징

일본의 법과대학원의 교육이 법학부의 교육과 다른 점으로는 ① 법과대학원에서는 법조인 양성의 관점에서 법률교육의 방법·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② 사법연수소의 수습내용을 포함하여 실무교육과목을 설치하고 있으며, ③ 법률기본과목과 실무기초과목을 연동시키고 있고, ④ 연구자 교원과 실무가 교원이 공동으로 교육하는 체계이며, ⑤ 전문성 있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다양한 선택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²⁹⁾ 이러한 내용은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사정과 비슷하다.

일본의 법과대학원 교육이념과 특징은 학교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 이는 이론과 실무에 대한 시각 차이도 반영하는데, 이론을 보다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법과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이론교육이 기본되는 것이다. … 학생들이 법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법적사고능력과 비판적 창조능력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³⁰⁾고 주장하고, 실무를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전문직은 전문직 밖에 육성할 수 없다. 전문직이 없는 현장에서는 전문직을 양성할 수 없다”³¹⁾는 견해도 있다.

위와 같은 생각 하에서 각 법과대학원에서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히토츠바시 법과대학원은 2016년 가장 높은 신사법시험 합격률을 기록하였는데,³²⁾ 학생과 교원이 다양한 형태로 서로 도우면서 일체가 되어 노력하는 학습이 결과적으로 사법시험의 합격률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³³⁾ 또한 나고야 대학 법과대학원에서는 사후학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강의수록시스템을 정비하고 활용하고 있다.³⁴⁾

국제적인 역량을 가지는 법조인 양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福原紀彦 교수는 “일본 법조인 자격을 국내수요에 한정하여 논의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에서 활약할

29) 富崎おり江, “名古屋大学法科大学院におけるICTを活用した法曹の養成”, 『名古屋大学法政論集』 Vol.250(名古屋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 2013.7), p.631.

30) 森山文昭, “法科大学院をめぐる現状と打開の方向性”, 『法と民主主義』 第470号(日本民主法律家協会, 2012.7), pp.116-117.

31) 越後純子, “現代リーガル・プロフェッションの職域拡大と法科大学院教育の使命”, 『法曹養成と臨床教育』 第6号(臨床法学教育学会, 2013.11), pp.48-50.

32) 2106년 일본 신사법시험 합격률 상위 학교는 (1) 히토츠바시대(一橋大) 49.61%(합격자 63명) (2) 도쿄대 48.07%(137명), (3) 교토대 47.30%(105명) (4) 게이오대 44.29%(155명) (5) 와세다대 35.85%(152명)이다. 産経ニュース, “法試験合格者は1583人昨年より267人減法科大学院別の合格率一覧表付き”, 2016.9.7.자.

33) 히토츠바시가 높은 사법시험 합격률을 기록하는 데에는 “신중한 입학시험선발과정을 통해서 우수한 법과대학원생을 확보하고, 그 학생이 대학측의 기대에 부응하여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自助), 학교측은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고 교원은 이를 도와서 열심히 교육지도를 하는 것(公助), 학생들끼리 서로 도와 열심히 공부하는 것(共助)이 있다.” 松本恒雄, “日本の法科大学院制度と新司法試験及び予備試験の現状と展望——一橋大学の経験を踏まえて——”, 『一橋法学』 第12卷 1号(一橋大學 出版部, 2013.3), pp.26-27.

34) 富崎おり江, 前掲論文(주29), p.631.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³⁵⁾고 한다.

2. 선발기준, 졸업학점 등 교육구조

일본은 법과대학원 설치의 근거법령으로 「법과대학원의 교육 및 사법시험 등에 관한 법률」(法科大学院の教育と司法試験等との連携等に関する法律)을 두고, 상세한 내용은 하위법령인 「전문직대학원설치기준」(専門職大学院設置基準, 문부과학성령 제16호), 「전문직대학원에 관한 필요사항」(専門職大学院に関し必要な事項, 문부과학성 고시 제53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교육과정 및 운용방식은 각 법과대학원의 학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제도의 운용이 탄력적이고 학교의 자율성이 크다.

2.1 선발비율 및 법학기수자의 수업연한 단축

2.1.1 법학미수자의 선발비율

일본의 경우 법과대학원은 입학자 중에서 “법학이수과정 이외의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실무 등의 경험자를 3할(三割) 이상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직대학원에 관한 필요사항 제3조 法科大学院の入学者選抜 제1항). 이 규정은 “3할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三割以上となるよう努めるものとす)”고만 되어 있어서 강제요건은 아니다. 법과대학원은 전항의 비율이 2할(二割)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학자 선발의 실시 상황을 공표하여야 한다(동필요사항 제3조 제2항). 실제 법학미수자 선발비율은 30%를 넘고 있다([표2] 참조).

우리나라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고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주요대학의 법학과 폐지로 법학기수자가 감소하고 있어서³⁶⁾ 법학미수자를 배려하는 위와 같은 규정의 의미가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의 법학과 졸업자를 배려하기 위해 법학기수자 출신 쿼터를 두어야 할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필자는 처음에는 학부 법학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법학기수자 출신 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일본의 상황을 보면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일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계속하여 낮게 유지된다면, 충분한 공부량이 필요한 법학공부의 속성상 법학기수자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높을 가능성이 크고, 변호사시험 합격을 걱정하는 로스쿨들은 경쟁

35) 福原紀彦, “中央大学法科大学院における改革の現状と課題”, 『ロースクール研究』第19号(民事法研究会, 2012. 5), pp.12,13.

36) 2017학년도 로스쿨 합격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법학계열 출신은 2013학년도 55.4%에서 2017학년도 28.1%로 27.3%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상경계열과 사회계열, 인문계열은 2013학년도 각각 9.5%, 13.6%, 9.1%에서 2017학년도 22.4%, 20.0%, 16.3%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합격자 법학계열 출신 5년간 27.3%p↓”, 뉴시스, 2017.3.15.자

적으로 법학기수자를 뽑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바로 나타나고 있다. 법학기수자의 신사법시험 합격률이 법학미수자에 비교하여 3배 가까이 높고, 법과대학원들이 경쟁적으로 법학기수자 위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어서 법학기수자의 비율이 거의 60-70%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법학부에서 예비시험 통과를 위한 4년의 수험교육을 다시 법과대학원 2년에서 추가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 다양한 전공을 가진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가 훼손된다. 따라서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법학퀴터의 도입은 법학기수자의 수험적 우월성을 드러나게 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1.2 법학기수자의 수업연한 단축

일본의 경우 법과대학원은 당해 법과대학원에서 필요한 법학의 기초적 학식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자(‘법학기수자’)에 대해서는, 제23조에 규정한 재학기간은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법과대학원이 인정하는 기간을 재학하고, 동조에 규정한 학점에 관해서는 30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해 법과대학원이 인정하는 단위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전문직 대학원설치기준 제25조 제1항).

일본의 법학기수자의 수업연한 단축제도는 한국과 크게 다른 점이다. 일본에서는 법학부가 존치되어 있고, 법학부에서 보통 신사법시험 예비시험을 준비하면서, 법과대학원에 입학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업연한 단축제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법학기수자들은 2년의 수업연한에도 불구하고 신사법시험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다.³⁷⁾³⁸⁾

한편 한국의 경우에는 법학과 출신 학생들에게 일부과목의 수강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으나(연세대 법전문 학칙 제49조³⁹⁾ 등)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제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면제를 해주더라도 수업연한 단축제도는 없어서 3년의 기간을 법학미수자와 같이 이수하고 있다. 한국

37) 보도에 의하면 법학기수자의 수료 후 3년까지의 ‘누적합격률’은 약 67%에 이르고 있어 2할대의 합격률이 반드시 낮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 産經ニュース, “法試験合格者は1583人昨年より267人減法科大学院別の合格率一覽表付き”, 2016.9.7.자.

38) 법과대학원 수료자(2012년 수료자 기준) 수료 후 3년간 사법시험 누적합격률은 법학기수자는 66.8%이고, 법학미수자는 39.3%이다; 법과대학원 수료자(2010년 수료자 기준) 5년간 사법시험 누적합격률은 법학기수자 67.8%이고, 법학미수자 47.5%이다. 文部科學省, 「法科大学院について」 文部科學省提出資料(資料 2-1)(文部科學省, 2016), 11면.

39)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제49조(학점인정에 따른 과목이수면제) ①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총 15학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수기본과목의 학점인정과 이수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원장은 학생의 이수면제신청이 있는 경우 면제신청과목에 대한 평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학칙 제43조(학점인정)

② 학생은 대학원의 승인을 받아 연세대학교의 다른 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서 학기당 3학점 이내로 통산 9학점까지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이수한 학점은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최소 이수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10.8.25.>

③ 대학원은 제53조에 근거하여 국내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통산 15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10.>

에서도 사법시험 1차 합격생이 법학미수자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이제 사법시험 응시생과 법과대학 졸업생이 없어지면 이러한 상황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2.2 졸업이수학점, 학년별 이수학점

2.2.1 졸업이수학점

일본 법과대학원의 표준수업연한은 3년이며(전문직대학원설치기준 제18조 제2항), 교육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과(研究科), 전공 또는 학생의 이수상의 구분에 따라 3년을 초과해서 정할 수 있다(동설치기준 제18조 제3항). 법과대학원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법과대학원에서 3년 이상 재학하고, 93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동설치기준 제23조). 이에 따라 일본 게이오 법과대학원의 경우에는 졸업이수학점을 100학점 이상⁴⁰⁾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수업연한이 법령에서 3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고(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이수학점도 법령에서 90학점 이상(동법 제1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이 학칙에서 90학점-94학점⁴¹⁾을 졸업이수학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 법학전문대학원의 법령상 졸업이수학점(93학점), 개별대학의 졸업이수학점(게이오 100학점)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신사법시험 합격(합격률 약 20-30%) 후에 사법수료소 1년 과정을 거치는 것에 비교하면 한국에서 법조인이 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볼 수 있다.

2.2.2 학년별 이수학점

일본 법과대학원의 학생이 등록할 수 있는 단위수의 상한은 1년에 36학점을 표준으로 해서 정한다(전문직대학원에 관한 필요사항 제7조). 게이오대학의 경우에 1학년 이수과목의 상한선은 36학점(선택과목 상한 6학점), 2학년 이수학점의 상한선은 36학점(선택과목 상한 18학점), 3학년 이수학점의 상한선은 44학점(선택과목 상한 23학점)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에서 교육과정의 편제의 체계성(인증평가기준 3.1.1), 교육과정편제의 타당성(3.1.2), 수업의 효율성(3.3)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고, 법령이 규정하는 졸업이수학점(90학점)이 일본보다 적어서 학년별 이수단위수의 상한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의 경우에는 “학생은 학기당 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 20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연세대 법전문 학칙⁴²⁾ 제41조 제5항).

40) 慶應義塾大学大学院 法務研究科(法科大学院), 「大学院履修案内」(2014)(이하 '慶應義塾 大学院履修案内(2014)'라고 한다), p.21.

41) 각 학교의 졸업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고려대학교 94학점(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운영규정 제41조), 서울대학교 90학점(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제15조), 연세대학교 90학점(법학전문대학원 학칙 제41조 제1항).

42)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제41조 (이수학점) ① 학생은 재학기간 동안 9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 개설과목 등 교육과정

3.1 개설과목

일본의 법과대학원은 ① 법률기본과목(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에 관한 분야의 과목), ② 법률실무기초과목(법조에 관한 기능 및 책임 기타 법률실무에 관한 기초적인 분야의 과목), ③ 기초법학·인접과목(기초법학에 관한 분야 또는 법학과 관련 있는 분야의 과목), ④ 전개·첨단과목(첨단적 법영역에 관한 과목 기타 실정법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전문직대학원에 관한 필요사항 제5조 제1항).

한편 우리나라의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 법률지식 및 전문 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① 법조윤리(法曹倫理), ② 국내외 법령 및 판례 정보 등 법률정보의 조사, ③ 판결문, 소장(訴狀), 변론문 등 법문서의 작성, ④ 모의재판, ⑤ 실습과정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을 개설하도록 되어있다(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⁴³⁾).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에 의하면 이중 어느 1개라도 필수과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인증평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법전원 평가기준 3.1.1.2 교육과정 편제의 체계성).⁴⁴⁾⁴⁵⁾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는 5개의

② 학생은 필수실무과목을 포함하여 필수과목군에서 35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선택과목군에서 5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 선택과목군 가운데 기반과목군에서 18학점, 심화과목군에서 12학점, 응용실무과목군에서 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기반과목군 및 심화과목군 가운데 국제법 및 비교법 분야에서 3학점, 기초법학 및 연계분야에서 3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학생은 학기당 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 20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다만 6개 이수학기(유급으로 인한 이수학기는 제외한다)가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을 하는 학생은 6학점 미만을 이수할 수 있다.

⑥ 학생은 계절제 수업에서 매회 2과목 이내로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취득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매회 7학점으로 한다. 계절제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⑦ 리걸클리닉 과목의 경우 재학기간 동안 취득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5학점으로 한다.

43)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과정)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제2조의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하는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설하여야 하는 교과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시행령 제13조(교육과정)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 법률지식 및 전문 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

1. 법조윤리(法曹倫理)

2. 국내외 법령 및 판례 정보 등 법률정보의 조사

3. 판결문, 소장(訴狀), 변론문 등 법문서의 작성

4. 모의재판

5. 실습과정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실습과정을 통하여 학생에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44)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

★ 3.1.1.2. 교육과정이「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5개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포함하고 있는가를 평가함.

평가척도 ——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에 시행령 제13조의 5개 과목(법조윤리, 법률 정보조사, 법문서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이 필수과목으로 포함되어 있으면 충족, 단 이 중 1개 과목이라도 필수과목으로 포함되어

과목 외에 필수지정에 대해서는 법령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따라서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은 위 5개의 과목 외에는 전부 선택과목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⁴⁶⁾ 그러나 대한변협의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에서는 교육과정 편제의 타당성을 평가하면서(대한변협 평가기준 3.1.2.1)⁴⁷⁾, “필수과목의 학점수가 35학점 이하인지의 여부”를 평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은 35학점을 필수과목의 상한으로 교과과목을 편제하고 있다.⁴⁸⁾⁴⁹⁾

3.2 수강인원, 학교별 입학정원

일본은 법과대학원의 수업과목에서 학생수를 소규모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전문직 대학원에 관한 필요사항 제6조 제1항). 강제적인 규정은 아니지만 법률기본과목의 수업은 50명을 표준으로 해서 수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동필요사항 제6조 제2항). 그러나 최근 일본의 법과대학원들의 입학정원의 감축으로 정원이 크게 줄어들고 있어서 수업인원의 제한은 큰 의

있지 않으면 불충족

45) 이를 반영하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법문서작성은 2학점, 나머지 4과목은 각 1학점으로 하여 총 6학점으로 구성하고 있다.

46) 최준선, “우리나라 로스쿨에서의 상사법에 관한 교육과정”, 『영산법률논총』제2권 제1호(영산대 법률연구소, 2005), 98면,

47)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

3.1.2. 교육과정 편제의 타당성을 평가함.

3.1.2.1. ◎법조인의 자질 함양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률기본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의 이수학점 수와 필수과목의 선정은 적절함을 평가함.

[해석지침] (1) [평가요소1. 관련] 필수과목의 학점 수가 35학점 이하인지 여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구별의 타당성, 필수과목 학점 수의 적절성을 평가함.

48)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제13조

제13조(교과목 구분)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필수과목, 선택적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개정 2011. 8. 29〉

1. 필수과목 :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마치기 위하여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과목

2. 선택적 필수과목 :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마치기 위하여 그 중 하나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과목집단 내의 과목

3. 선택과목 : 제1, 2호 이외의 것으로서 선택하여 이수하는 것이 가능한 과목

② 필수과목, 선택적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세부적인 분류내용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법무실습은 반드시 필수과목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8.29.〉

49)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교육과정의 구분) ① 대학원 교과목은 필수기본과목, 기반과목, 심화과목, 필수실무과목, 응용실무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학생은 필수기본과목 29학점, 기반과목 18학점, 심화과목 12학점, 필수실무과목 6학점, 응용실무과목 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학생은 기반과목 및 심화과목 가운데 국제법 및 비교법 분야에서 3학점, 기초법학 및 연계분야에서 3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5.〉

③ 동일분야 특성화과목을 이수한 학점은 제2항에 따라 이수하여야 할 심화과목 학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2.5.3.〉

제8조 (필수기본과목) 필수기본과목의 과목명 및 학점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17.〉

헌법I(3), 헌법II(3), 계약법(5), 물권법(3), 불법행위법(3), 형법I(3), 형법II(3), 민사소송법I(3), 형사소송법(3)

제9조 (기반과목 및 심화 과목) 기반과목 및 심화과목의 분류, 과목명 및 각 과목별 학점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8.27.〉

미는 없어 보인다.

2016년 기준, 입학정원이 100명 이상인 일본의 법과대학원은 東京大學 230명(실제입학생 217명, 충족율 94%, 지원자 483명 대비 경쟁률 2.1:1), 京都大學 160명(실제입학생 155명, 충족율 97%, 경쟁률 2.17:1), 慶應義塾大學 230명(실제입학생 166명, 충족율 72%, 경쟁률 2:1), 中央大學 240명(실제입학생 192명, 충족율 80%, 경쟁률 1.64:1), 明治大學 120명(실제입학생 52명, 충족률 43%, 경쟁률 1.06:1), 早稲田大学 200명(실제입학생 129명, 충족율 66%, 경쟁률 2:1)이다. 그런데 이들의 상위권 대학의 경쟁률조차 평균 2:1에 불과하고, 東京大學, 京都大學 등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위권 국립대학을 제외하고는 慶應義塾大學, 早稲田大学 등 상위권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입학정원 충족율은 60-70%에 불과하여 법과대학원이 처한 어려움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별첨5〕 참조)(학비는 국립대학은 연간 약 80만엔, 사립대학은 연간 약100~250만엔 정도이다). 그리고 나머지 50여개의 법과대학원 중에서 입학정원이 20명 이하에 불과한 대학도 8개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법과대학원이 아니라 법학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뜻이며 법과대학원이 처한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3.3 게이오대학의 교과과정 운용사례

일본 법과대학원의 교육과정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상세한 내용은 각 학교의 자율적인 판단에 위임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게이오대학의 교과과정 운용사례를 살펴본다.

3.3.1 법률기본과목·법률실무기본과목

게이오대학은 법률기본과목·법률실무기본과목은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대부분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고 단계적, 체계적인 학습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연차를 고정하고 있다. 한편, 특정분야나 특정주제를 심도있게 공부하는 수업은 선택과목으로 설계하고 있다.

(1) 법률기본과목(필수)

공법계·민사계·형사계의 기본과목은 민법1-4(1학년) → 민법종합1(2학년) → 민사법종합1·2(3학년)과 같이 단계적·체계적으로 배당되어 있다. 상사법 분야의 필수기본과목은 ① 회사법(3학점)(1-2학기) → ② 상법종합1(2학점)(2-2학기) → ③ 상법종합2(2학점)(3-1학기) → 민사법종합1(2학점)(3-1학기) → ④ 민사법종합2(2학점)(3-2학기)의 순서로 개설되어 있다. 1년차는 강의형식의 수업을 중심으로 하지만, 성취도에 따라서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학습지원 세미나를 실시하고 수업을 보완한다.

(2) 법률기본과목(선택)

법률기본과목 중 특정분야나 특정주제를 심도깊게 공부하거나 탐색하는 수업은 선택과목으로 마련하고 있다. 법률기본과목(선택)에는 기초연습, 법률기본선택과목1, 법률기본선택과목2, 법률기본과목테마연습(法律基本科目テーマ演習), 법률기본과목테마연구(法律基本科目テーマ研究)가 있다.⁵⁰⁾

(3) 법률실무기초과목(필수)

게이오대학은 법률실무기초과목 중에서 사법연수소(전기)가 담당하고 있던 교육내용 중 요건 사실론(2학점)(2-1학기) → 법조윤리(2학점)(3-1학기) → 형사실무기초(3학점)(3-1학기) → 민사실무기초(3학점)(3-2학기)를 필수로 지정하고 있다. 즉, 실무과목 중에서 4과목(10학점)이 필수로 지정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실무과목 중 법조윤리, 법률정보조사, 법문서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5과목이 필수이고(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법전원 평가기준 3.1.1.2), 대부분의 대학들이 6학점 이내에서 이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태를 살펴보면 한국의 실무과목 비중이 사실상 더욱 크다. 연세대의 경우에 법령에서 정해진 법조윤리 등 실무 5과목(6학점)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택 실무과목인 민사소송실무(3학점), 형사소송실무(3학점), 검찰실무1(2학점) 등을 수강하고 있어서, 실제 실무과목 수강비율은 연세대 학생들이 게이오대 학생들 보다 높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게이오에서는 필수과목인 민사, 형사실무기초 등이 연세대에서는 선택과목(민사, 형사소송실무, 검찰실무1 등)으로 개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게이오대학의 졸업이수학점(100학점 이상)에 비교해서, 연세대의 졸업이수학점(90학점 이상)이 크게 적은 것도 선택과목의 수강을 어렵게 한다. 연세대 학생들은 졸업이수학점(90학점 이상) 중에서 ① 필수기본과목(29학점), ② 필수실무과목(6학점), ③ 기초법·국제법의 준필수과목(6학점)⁵¹⁾, ④ 선택과목이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강하는 '사실상의 필수과목'인 행정법1(3학점), 회사법(4학점), 민사소송실무(3학점), 형사소송실무(3학점), 검찰실무1(2학점), ⑤ 방학 중 계절학기에서 수강하는 영어위주의 국제화과목(평균 2과목, 6학점), ⑥ 3학년 중 민사법응용, 형사법응용, 공법쟁송실무 등 변시위주의 과목수강(평균, 6과목, 18학점)⁵²⁾ 등을 우선적으로 수강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3년의 재학기간 중에서 자신의 전

50) 慶應義塾 大学院履修案内(2014), p.43.

51)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7조 (교육과정의 구분) ② 학생은 필수기본과목 29학점, 기반과목 18학점, 심화과목 12학점, 필수실무과목 6학점, 응용실무과목 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학생은 기반과목 및 심화과목 가운데 국제법 및 비교법 분야에서 3학점, 기초법학 및 연계분야에서 3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2.25.>

52) 상법통합사례연습은 1/2, 상사법응용은 약 1/3 정도의 학생이 수강한다. 이는 변시과목이지만 상법의 비중이 민법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데, 지재권, 세법, 금융법등 다른 선택과목에 비하면 그래도 사정은 낮은 편이다.

공이나 관심분야를 반영하여 전문성을 가지는 선택과목을 다양하게 수강할 수 있는 여력은 거의 없다. 결국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선택과목이 대부분인 상사법 분야 과목의 수강 및 이를 통한 전문성 개발, 특성화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사정도 대부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4) 법률실무기초과목(선택)

게이오대학은 법률실무기초과목(필수)을 보완하기 위해서 선택과목으로 법률실무기초과목을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턴십(로펌), 인턴십(관청·기업 등), 법률문서작성(기초)이다. 이 중 인턴십은 여름방학 1~2주 간에 법률사무소와 관청·기업의 법무부에서 실제 법률 실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임상법학 교육과목이다.

3.3.2 전개·첨단과목, 기초법학인접과목

법률기본과목, 법률실무기초과목의 필수과목군에 더해 다채로운 전문적 지식의 확대와 전문적인 깊이를 겸비한 전개·첨단과목과 기초법학·인접과목군을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다.

(1) 기초법학·인접과목

게이오 법과대학원은 기초법학과목은 법의 이념, 역사, 법과 인간, 법과 사회의 관계 분야의 과목을 개설하고, 인접 과목에서는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등 법과 인접학문 분야의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기초적 영역에서 깊은 지식의 습득하고, 나아가 법학에 이어 하위전공의 획득을 목표로 한다.

(2) 전개·첨단과목

게이오 법과대학원은 폭 넓은 인재 교육성을 목표로 전개·첨단과목으로 지적재산권법, 도산법, 노동법, 환경법, 조세법 등 다양한 선택과목을 준비하고 있다.

전개·첨단과목에는 상사법분야를 포함한 민사계과목이 가장 많은데, 요건사실론총합1, 요건사실론총합2, 지적재산권법1, 지적재산권법2, 지적재산권법3, 지적재산권법총합, 도산법1, 도산법2, 도산법총합, 민사집행·보전법, 민사집행·보전법실무, 소비자법1(격년), 소비자법2(격년), 현대계약실무, 금융법, 보험법, 금융상품거래법, 신탁법, 상사신탁법, 기업금융법, 기업회계법, 재판외분쟁해결, 가사사건실무, 금융법실무 등이 개설되어 있다.⁵³⁾

전개·첨단과목에는 소규모로 실시되는 기업법무 워크샵, 금융법무워크샵, 섭외법무워크샵, 지적재산권법무워크샵 등의 워크숍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사내변호사를 기업과 관청 또는 유엔등 국

53) 慶應義塾 大学院履修案内(2014), p.43.

제기구 및 글로벌 분야에서 활약하고자하는 대학원생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이 권장된다. 글로벌 분야에서 활약하고 싶어있는 대학원생을 위해서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도 포함되어 있다.

【표4】 게이오 법과대학원의 교과목 편성과 분류

			1학년		2학년		3학년		
			봄학기	가을학기	봄학기	가을학기	봄학기	가을학기	
필수 과목	합계	69	15	15	10	8	13	8	
	법률기본 과목 (필수)	공법계	13	헌법1(3)	헌법2(3)	헌법총합(2)	행정법(2)	행정법총합(2)	공법총합1(1) 공법총합2(1)
		민사계	31	민법1(총론계약법)(4) 민법2(재산법)(2) 민법3(민사책임법)(1) 민법4(담보법)(2) 민법5(가족법)(1)	회사법(3) 민소법1(2) 민소법2(2)	민법총합1(2) 민소법총합(2)	민법총합2(2) 상법총합1(2)	상법총합2(2) 민사법총합(2)	민사법총합2(2)
		형사계	15	형법1(2)	형법2(3) 형소법(3)	형법총합(2)	형소법총합(2)	형사법총합(2)	형사법총합2(1)
	법률실무기초과목 (필수)	10			요건사실론(2)		법조윤리(2) 형사실무7(3)	민사실무7(3)	
선택 과목	합계	310이상	선택과목은 수료까지에 31단위 이상을 습득할 것						
	법률기본과목(선택)	50내	* 법률기본과목(선택)은 수료요건으로 인정되는 것은 5학점 이내임						
	법률실무기초과목(선택)		* 법률실무기초과목(선택)은 0학점으로도 수료하는 것 가능함.						
	기초법학·인접과목	40상	* 기초법학, 인접과목은 4학점 이상을 반드시 포함 * 다만, 기초법학 4학점, 인접과목 0학점을 선택 가능 (그 반대도 가능)						
	전개·첨단과목	120상	* 전개, 첨단과목을 12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할 것.						
	선택과목 상한 학점수		1학년 (6학점까지)		2학년 (18학점까지)		3학년 (23학점까지)		

〈출처〉 慶應義塾 大学院履修案内(2014), 21면

【표5】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목 편성과 분류

과목군	분류	과 목(학점수)	과목수	학점
필수기본과목		헌법(3), 헌법(3), 계약법(6), 물권법(3), 불법행위법(2), 형법(3), 형법(3), 민사소송법(3), 형사소송법(3)	9	29
기반 과목군	상사법	상거래법(3), 회사법(4), 유가증권법(3), 보험법(3), 해상법(3), 국제거래법(3)	6	19
	사회·경제법	독점규제법(3), 소비자보호법(3), 조세법(3), 조세법(3), 사회보장법(3), 집단적 노사관계법(3), 개별적 노사관계법(3)	7	21
심화 과목군	상사법	기업윤리와 법(3), 보험제도와 민사책임법리(3), 도산법(3), 자본시장법(3), 은행경영·거래와 법(3), 금융규제법(2), 국제금융규제법(3), 국제투자분쟁해결(3), 법률회사의 경영관리(3), Global M&A and Law(3), Dispute Resolution i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3), Comparative Corporate Law and Governance(3)	12	35
	사회·경제법	국제기업활동과 독점규제(3), 노동법사례연구(3), 법인세법(3), 국제조세(3)	4	12
필수실무과목		법정보소사와 법문장본(1), 법조윤리(1), 법문서작성(2), 모의재판(1), 실무수습(1)	5	6
응용실 무과목	응용과목	공법응용(3), 민사법응용(3), 형사법응용(3), 상사법응용(3)	4	12
	실무과목	민사소송실무(3), 형사소송실무(3), 검찰실무(2) 등 ⁵⁴⁾	15	37
총 계		* 공법, 형사법, 민사법의료·과학기술법, 국제법·비교법, 기초법·연계분야는 생략	155	411

〈출처〉 연세대 법전문 학사운영규정, 자기점검보고서(2012) 등

54) 공법쟁송실무(3), 민사소송실무(3), 형사소송실무(3), 검찰실무I(2), 검찰실무II(2), 송무리결클리닉I(2), 송무리결클리닉II(2), 법률자문리결클리닉(2), 난민지원리결클리닉(1), Corporate Finance Law and

4. 한·일 로스쿨의 비교 및 시사점

4.1. 필수과목은 1/3 정도가 타당

위의 자료를 분석하면 게이오 법과대학원의 졸업수료학점은 100학점 이상(필수61 + 선택 31 이상)인데, 이는 졸업이수학점이 보통 90-94학점에 그치고 있는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에 비교하면 매우 높은 편이다.

한편 게이오대학은 필수과목 69학점 이외에도 기초법학·인접과목에서 4학점을 반드시 수강하도록 하고 있어서, 졸업이수학점 100학점 이상 중에서 필수성 과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73%에 이르고 있다. 그 밖의 선택과목 중에서도 대부분의 학생이 수강해야 하는 사실상의 필수과목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학생들의 선택과목 수강 폭은 더욱 제한될 것이다. 이처럼 필수과목이 비중이 높은 것은 한국과 달리 법령에서 필수과목의 상한을 두고 있지 않은 때문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이유에서든 대부분의 과목이 필수라는 것은 법과대학원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⁵⁵⁾

4.2 선택과목의 합리적 운용

선택과목이 많은 상사법 분야를 살펴본다. 게이오대학에서 상사법 분야의 과목은 ① 법률기본과목(필수)에 7학점(회사, 상법총합1,2), ② 법률기본과목(선택), ③ 전개첨단과목(선택)에 분포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필수인 회사법(3학점), 상법총합1(2학점), 상법총합2(2학점)을 수강하고, 나머지 선택과목 9과목(27학점)(졸업이수 100학점 - 필수성 73학점) 중에서 상사법 분야에서 2~3과목을 선택한다고 가정하면, 상사법 분야에서는 모두 5~6개 과목을 듣는 셈이다. 즉, 다양한 선택과목의 수강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현재와 같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및 변호사시험의 상황 하에서는 상사, 금융, 지적권, 세법,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을 배출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는 달성하기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렇다고 하여서 기본적인 필수과목의 공부나 실무교육도 충분하지 못하는데 무조건 전문성을 요구하면서 다양한 과목의 수강을 요구할 수도 없다. 따라서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이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높여서 변호사시험 과목에 대한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고 다양한 선택과목의 수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ractice(3), Corporate Compliance Program Practice(3), 금융과 조세실무(3), 지적재산권라이센싱 실무(2), International Finance: Law, Transactions and Policy(3), US Criminal Practice(3)
55) 최완진 교수는 같은 취지에서 “상사법 분야에서는 핵심분야만 필수로 하고 가능하면 선택과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 최완진, “로스쿨 체제하에서의 상사법분야의 개설과목과 교수방법에 관한 고찰”, 『법학논고』 제28집(경북대 법학연구소, 2008.6), 357면.

4.3. 6년제 학부 로스쿨

법학의 학문적 특성이나 전통적인 기본과목으로서의 중요성에 비추면, 법조인 양성을 위해서 미국과 같이 3년제 직업교육만으로 법조인의 양성이 충분한지가 의문이다. 3년만으로 충분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법학의 기본개념부터 실무교육, 나아가 다양한 전문성까지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더욱이 매년 2,500명에 불과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통제 하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법학소양교육, 법학의 생태계, 연구자 양성 등은 더욱 요원하다. 물론 일단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여 졸업을 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필드에 나가서 스스로 관련 지식을 충족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취지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서 찬성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① 졸업생 대부분 합격시키고 그 대신 교육기간을 4년으로 늘리거나, ② 6년제 학부 로스쿨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의대와 비슷한 형태의 6년제 학부 로스쿨 제도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본다. 다만, 이 경우에는 법학전문대학원처럼 요건을 엄격하게 마련하고 강력하게 집행해야 한다. 지금처럼 법과대학을 운영한다면 인문사회계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모든 대학들이 법학과를 설치하려고 할 것이고 과거와 같이 사법시험 통과를 위한 수험법학교육의 상황이 재연될 것이기 때문이다.

IV. 일본의 신사법시험과 상사법 출제경향 분석

1. 법과대학원과 사법시험 제도

일본은 법과대학원 출범 당시 기존의 사법시험제도⁵⁶⁾를 존치시켰다. 대신 법학교육에 관계없이 응시자격을 부여하던 구사법시험 제도와는 달리, 법과대학원 수료생과 예비시험 합격자들에게 한정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예비시험이 우리나라의 사법시험 1차시험과 비슷한 성격임을 고려하면 법과대학원 수료는 예비시험이 면제되는 정도의 효과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일본 법무부는 2016년 사법시험에 전년보다 267명이 적은 1583명이 합격했다고 발표했다. 합격률 상위학교는 (1) 히토즈바시대(一橋大) 49.61%(합격자 63명)⁵⁷⁾ (2) 도쿄대 48.07%

56) 米倉明 교수는 합격률이 극히 낮은 구사법시험에 대하여 ① 인재를 선택하기 보다는 인재를 놓칠 가능성, ② 재학생인 기간의 수험공부가 법학부교육을 크게 저해하며, ③ 법조의 세계에 법학사 이외의 다양한 인재를 배출하는 것을 저해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米倉明, “法科大学院雑記帳法科大学院制度を廃止し, 旧司試を復活させれば済むのだろうか”, 『戸籍時報』 Vol.693(日本加除出版, 2013.2), p.88.89.

57) 히토즈바시대학의 성적에는 법학부 출신자의 선발비율도 기여했다. 예를 들어, 2009년 신사법시험 합격률 1위를 보인 히토즈바시대(一橋)대학 법과대학원의 2008년도 합격자를 살펴보면 법학부 출신이 81%이며, 비법학부 출신이 19%이다. 또한 히토즈바시대학 법과대학원 합격자의 출신학부 대학은 히토즈바시대학 20명, 게이오(慶應)대학 12명, 와세다(早田)대학 9명, 동경(東京)대학 및 추오(中央)대학 각 8명으로 합격자의 출신대학에도 상당한 집중화현상이 보이고 있다. 홍태석, “일본 법조인선발방식의 과제에서 본 우리 로스쿨의 발전방향”,

(137명), (3) 교토대 47.30%(105명) (4) 게이오대 44.29%(155명) (5) 와세다대 35.85%(152명)이었다. 합격자가 0%인 법과대학원도 7개이다.⁵⁸⁾

한편 법과대학원 수료생의 신사법시험 합격률도 계속하여 낮아지고 있다. 신사법시험의 전체 합격률은 22.95%에 불과하지만, 예비시험 통과자의 합격률은 61.52%(합격생은 235명)로 크게 높았다. 다만, 법학미수자가 아닌 법학기수자의 수료 후 3년까지의 '누적합격률'은 약 67%에 이르고 있어서 합격률이 반드시 낮다고 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위와 같은 낮은 신사법시험 합격률은 구조적인 측면이 크다. 즉, 법과대학원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구사법시험에 비교하여 선발인원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않았고([표7]),⁵⁹⁾ 인가받은 법과대학원이 예상보다 많아지면서 법과대학원을 졸업한 수험생의 숫자도 많아졌기 때문이다.⁶⁰⁾ 이에 따라 가장 시급한 문제는 "법과대학원의 통폐합, 입학정원의 감소, 예비시험의 폐지 등"이라는 지적⁶¹⁾⁶²⁾이 이어졌고, 이러한 내용이 실제로 반영되어 법과대학원의 숫자는 2007년 74개교에서 2015년 44개교로 감소했으며,⁶³⁾ 전체 입학정원도 2007년 5,824명에서 2016년 2,500명(실제 입학생수 1,857명)으로 감소하였다([표2][그림1]).

『법학논고』 제37집(경북대 법학연구소, 2011), 471면.

58) 응시자는 6,899명, 합격률은 22.95%. 합격자는 남성 1212명, 여성 371명. 평균연령은 28.3세이고 최고령은 66세, 최연소는 21세였다. 産經ニュース, “法試験合格者は1583人昨年より267人減法科大学院別の合格率一覽表付き”, 2016.9.7.자.

59) 구사법시험이 마지막으로 치러진 2005년의 사법시험 합격자는 1,464명이었고, 신사법시험이 처음으로 치러진 2006년에는 신·구사법시험을 합한 합격자수가 2,559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합격자 수가 계속하여 줄어들면서 2016년 신사법시험의 합격자 수는 구사법시험 당시와 크게 차이가 없는 1,583명에 불과하게 되었다([표7] 참조).

60) 古口 교수는 낮은 합격률은 “법과대학원 교육과 법과대학원 수료생의 질 문제가 아니라 법과대학원의 총 정원 수가 너무 커질 것에 기인하는 산술적 귀결”이라고 지적한다. 古口章, 前掲論文(주23), p.269.

61) 문부과학성 특별위원회는 “로스쿨 전체 입학정원을 줄이고 법과대학원 수료자가 상당한 비율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 할 수 있게 되면, 우수한 법조 지망생의 법과대학원 입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文部科学省, 『法科大学院教育の質の向上のための改善方策について(報告)』(中央教育審議会大学分科会法科大学院特別委員会, 2009.4.17.), pp.22-23.(<http://www.mext.go.jp/component/b_menu/shingi/toushin/_icsFiles/afieldfile/2009/04/20/1261059_1_1.pdf>)(2017.4.1. 방문).

62) 일본 변협은 “입학정원이 축소되어 법과대학원 수료자가 상당의 비율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면 다양하고 우수한 법조인 지망자의 법과대학원 입학이 촉진되고 감소 추세에있는 법과대학원 지원자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日本弁護士連合会, 『法曹養成制度の改善に関する緊急提言』(日本弁護士連合会, 2011.3.27.), p.3(<http://www.nichibenren.or.jp/library/ja/opinion/report/data/110327_3.pdf>)(2017.4.1. 방문).

63) 文部科学省, 『法科大学院について』(文部科学省提出資料<資料2-1>, 2016), p.1.s

【표6】 일본 사법시험 과목 및 점수

단답식시험 (선택형) (175점)	현행 (2015년 이후)		기존 (2015년 이전)	
	헌법 (50점)	20-25문 50분	공법계과목(헌법·행정법) (100점)	40문제 정도 1시간 30분
	민법 (75점)	30문-38문 75분	민사계과목(민법·상법·64)민소법) (150점)	75문제 정도 2시간 30분
	형법 (50점)	20문-25문 50분	형사계과목 (형법·형소법) (100점)	40-50문제 정도 1시간 30분
논문식시험 (사례형) (800점)	공법계과목(헌법·행정법) (200점)	2문제 (1문제, 2시간, 100점) - 문제별로 시험을 치름, 이하 같음		
	민사계과목(민법·상법·민소법) (300점)	3문제 (1문제, 2시간, 100점) - 문제2가 상법임 (민법과 상법의 비중은 같음)		
	형사계과목(형법·형소법) (200점)	2문제 (1문제, 2시간, 100점)		
	선택과목 ⁶⁵⁾ (8개과목 중 택1) (100점)	2문제 (1문제, 1시간, 50점)		
점수 산정방식	1. 단답식시험 합격자중에서 논문식시험의 불합격자를 제외함. 2. 단답식시험과 논문식시험의 성적을 총합 평가해서 합격자를 결정함. 3. 단답식시험과 논문식시험의 비중은 1:8로 해서 판정함(2009년부터 시행) [산술방식] = 단답식시험의 점수 + (논문식시험점수 × 1400/800) * 단답식 점수 175점 × 8 = 1,400점			

〈출처〉 일본 법무부, 사법시험 안내를 참고하여 작성함

【표7】 일본 사법시험 합격자수

단위 명(합격률 %)

연도	수험자	합격자		합격률 ⁶⁶⁾		비고
1990년	20,975	499		2.38%		구사법시험만 존재
1999년	29,890	1,000		3.35%		
2001년	34,117	990		2.90%		
2002년	41,459	1,183		2.85%		
2003년	45,372	1,170		2.58%		
2004년	43,367	1,483		3.42%		
2005년	39,428	1,464		3.71%		
2006년	신사법시험	신사법시험	구사법시험	신사법시험	구사법시험	구사법시험과 신사법시험 병행
2006년	2,091 ⁶⁷⁾	1,009	549	48.25%	1.8%	
2007년	4,607	1,851	248	40.18%	1.0%	
2008년	6,261	2,065	144	32.98%	0.7%	
2009년	7,392	2,043	92	27.64%	0.6%	
2010년	8,163	2,074	59	25.41%	0.4%	
2011년	8,765	2,063 (예비시험 시작)		23.54%		신사법시험만

64) 상법에 관해서는 상법전 중 제3편 해상은 시험범위에서 제외한다(商法については、商法典中第3編海商については出題範囲外)。

65) 선택과목은 1. 도산법, 2. 조세법, 3. 경제법, 4. 지적재산권법, 5. 노동법, 6. 환경법, 7. 국제관계법(공법계)[국제법(국제공법)], 8. 국제관계법(사법계)[국제사법, 국제거래법 및 국제민사수속법(國際民事手続法)]이다.

2012년	8,387	2,102 (예비시험 출신 58)	25.06% (예비시험 출신 68.2%)	존재
2013년	7,653	2,049 (예비시험 출신 120)	26.77% (예비시험 출신 71.9%)	
2014년	8,015	1,810 (예비시험 출신 163)	22.58% (예비시험 출신 66.8%)	
2015년	8,016	1,850 (예비시험 출신 186) ⁶⁸⁾	23.08% (예비시험 출신 61.8%)	
2016년	6,899	1,583 (예비시험 출신 235)	22.95% (예비시험 출신 61.52%)	

〈출처〉 각종 자료⁶⁹⁾를 조합하여 작성함.

2. 법과대학원과 예비시험 제도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본에서는 법학부 및 예비시험이 존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비시험의 필요성은 “심의회의견서”에 언급되어있다. 의견서에서는 법과대학원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적 사정이나 이미 실생활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고 있는 등의 이유로 법과대학원을 거치지 않는 자들의 법조 자격 취득을 위한 적절한 용도를 확보해야 한다.”고 예비시험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⁷⁰⁾ 이에 따라 법조인양성검토회에서는 예비시험의 수험자격을 제한의 가부(可否)가 최대의 쟁점으로 검토되었으나, 결국 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은 제한하지 않기로 하였고 그 취지를 감안하여 예비시험의 시험과목에도 법률실무기초과목을 포함시켰다(〔별첨2〕 사법시험 예비시험 안내).⁷¹⁾ 예비시험은 신규 사법시험 병행실시가 종료된 2011년도부터 실시되었다.

예비시험 출신자들은 신사법시험 합격 후에 사법수료소에서 1년간 실무교육을 받게 되므로 기존에 우리나라의 학부,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코스와 사실상 동일하다. 예비시험의 합격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예비시험 통과자의 신사법시험 합격률(약 60-79%)은 법과대학원 수료자의 합격률(약 20%)을 3배 이상 상회하면서, 법과대학원의 지원자 감소와 정원 감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예비시험은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과대학원을 거치지 않은 이들에게 자격 취득을 위한 적절한 루트를 확보하는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하게 있으나, 교육을 통한

66) 응시자 대비 합격률. 법과대학원을 수료하고 응시자격을 얻었지만 시험을 치르지 않은 자를 포함하면 합격률은 더욱 낮아진다.

67) 2006년도는 2004년에 법과대학원에 입학한 1기생 중에서 법학기수자(2년 수료가능)가 처음으로 시험을 치른 해이다.

68) 합격자 사법시험 응시횟수 1회 920명, 2회 505명, 3회 267명, 4회 158명 (합계 1,850명). 자료 〈<http://www.moj.go.jp/content/001158038.pdf>〉. 합격자들의 응시횟수는 〈<http://blog.livedoor.jp/schulze/archives/52145654.html>〉에서 찾을 수 있다.

69) 旧司法試験第二次試験出願者数・合格者数等の推移〈<http://www.moj.go.jp>〉; 江澤和雄, 前掲報告書(주2), p.13 〈그림4〉 사법시험 합격률 추이; 위키피디아; <http://blog.livedoor.jp/schulze/archives/52145654.html>; 産經뉴스, “法試験合格者は1583人昨年より267人減法科大学院別の合格率一覧表付き”, 2016.9.7.자 등을 참고하여 작성함.

70) 경제적 사정이나 사회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고 있는 자 등을 위해서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 법조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적절한 루트를 확보해야 한다. 즉, 로스쿨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도, 폭넓은 법률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해를 묻는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신사법시험의 수험자격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司法制度改革審議会, 前掲意見書(주3), p.67.

71) 梶嶋裕之, “予備試験制度の立法経過と制度趣旨に沿った運用”, 『ロースクール研究』 第17号(民事法研究会, 2011.5), pp.77,78.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과대학원 제도에 대해서는 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⁷²⁾ 즉, 예비시험과 법과대학원 제도는 쉽게 양립하기 어렵다.

일본의 경우 예비시험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견해⁷³⁾도 있으나, 교수들은 주로 비판적인 견해⁷⁴⁾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예비시험을 도입하기 보다는, 지원자의 경제적 사정이나 다양한 인재에 대한 수요는 특별전형의 확대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생 선발에서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표8】 일본 예비시험 출원자수, 합격자수, 합격자중 법학부, 법과대학원생 점유율

단위 명(합격률 %)

연도	출원자 (수험자)	합격자	합격률 (수험자 대비)	비고 (출원시 자기신고서 분석, 실제 더 많을 가능성)
2011년	8,791 (6,447)	116	1.79%	대학재학중 29, 법과대학원 재학중 6
2012년	9,118 (7,183)	219	3.05%	대학재학중 44, 법과대학원 재학중 60
2013년	11,255 (9,224)	351	3.11%	대학재학중 53, 법과대학원 재학중 161
2014년	12,622 (10,347)	356	2.82%	대학재학중 55, 법과대학원 재학중 164
2015년	12,543 (10,334)	394	3.14%	대학재학중 74, 법과대학원 재학중 134
2016년	12,767 (10,442)	405 ⁷⁵⁾	3.17%	대학재학중 179, 법과대학원 재학중 154

〈출처〉 내각관방, 予備試験合格者等に関するデータ一覧⁷⁶⁾ 등 자료를 조합, 작성

3. 사법시험에서의 상사법 시험

아래에서는 신사법시험에서의 상법시험의 출제내용 및 출제경향 등을 살펴본다.

3.1 신사법시험에서의 상법 출제경향

신사법시험은 단답식시험과 논문식시험으로 구성된다.

단답식시험에서 상법은 민사계과목 75문항에 포함되어 출제되었으나, 학생들의 시험부담을

72) 예비시험이 시한폭탄이라는 우려는 일본 법과대학원 출범 당시부터도 제기되었다고 한다. 박세화, 앞의 논문, 33면. 다만, 출범 당시 남겨 둔 법학부는 애물단지라는 논란이 있었으나, 지금은 법과대학원제도가 어려움에 처하고, 법학부를 통한 예비시험 합격자가 증가하면서 법학부의 위상은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73) “예비시험을 제한하면, 법조에 뜻이 있는 지원자수의 격감이 이루어져 사법을 담당하는 인재가 고갈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 森山文昭, “曹養成制度改革の現局面をどう見るか : 新しい検討体制の発足にあたって”, 『法と民主主義』 第483号(日本民主法律家協会, 2013.11), p.55.

74) 青山善充 교수는 예비시험 제도가 인정된 것은 “구사법시험이 수험자격을 전혀 묻지 않는 시험이었다는 연혁상의 이유에 지나지 않는다. 예비시험이 비정상적이 되면 모처럼 정착하고 있는 본래의 길인 법과대학원제도는 금세 좌절하고 만다.”며 신중한 운영을 강조한다. 青山善充, 전계논문(주20), p.73.

75) 예비시험은 단답식 합격자 중에서 논술식 합격자, 그 다음에 구술식 시험의 순서로 치른다. 합격자의 숫자는 단답식합격자 2,426명 → 논술식합격자 429명 → 구술시험 합격자 405명이다.

76) 〈http://www.cas.go.jp/jp/seisaku/hoso_kaikaku/dai10/siryou5.pdf〉(2017.3.10. 방문); 〈www.lec-jp.com〉; 〈<https://ja.wikipedia.org/wiki/%E5%8F%B8%E6%B3%95%E8%A9%A6%E9%A8%93%E4%BA%88%E5%82%99%E8%A9%A6%E9%A8%93>〉(2017.3.10. 방문) 등의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줄여주기 위해서 2015년부터 단답형시험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2015년 이후 단답형시험은 헌법, 민법, 형법 3개의 과목만이 출제되고 있다.

신사법시험에서 논문식시험은 그 비중이 가장 크다. 논문식시험은 민사계과목, 공법계과목, 형사계과목이 있는데, 민사계과목은 민법 1문제 100점(2시간), 상법 1문제 100점(2시간), 민소법 1문제 100점(2시간)으로 민법·상법·민소법이 1:1:1의 비중으로 출제되고 있다. 논문식 상법시험의 시험시간은 2시간이고, 문제 분량도 한국의 변호사시험 상법 시험(1시간 100점)에 비교해서 2배 정도 길다. 상법시험은 한국의 변호사시험과 비슷하게 회사법 위주로 출제되고 있다. 다만, 시험이 2시간에 걸쳐서 시행되면서 문제의 분량이 많아서 한국에 비교하면 다수의 쟁점이 골고루 출제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지문의 분량은 많지만 문제에서 쟁점을 제시하고 있어서 그리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다. 2016년 예비시험(상법)에서는 회사법(주주총회결의, 흡수합병)과 어음금청구가 출제되었고, 2016년 신사법시험(민사법2)에서는 회사법(대표이사 해임 이사회결의의 효력, 회사법상 손해배상책임,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등)이 출제되었다.

결국 일본의 신사법시험에서 상법과목은 ① 논문식시험에서 그 비중이 민법, 상법, 민소법이 동일하고, ② 단답식시험에서 상법과목은 없지만 단답식시험과 논문식시험의 비중이 1:8로 논문식시험의 비중이 훨씬 크며(계산방식은 [표6] 참조), ③ 우리나라 변호사시험처럼 민법과 민소법 위주로 출제되는 기록형시험이 없음에 비추면, 상법과목이 일본 신사법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의 변호사시험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한국에서와 같이 상법을 포기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다.

3.2 예비시험에서의 상법 출제경향

신사법시험 예비시험은 단답식시험, 논문식시험, 구술시험으로 구성된다.

단답형시험에서 민법·상법·민소법과 같은 시간에 출제되고 있다. 단답형시험은 1일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1교시는 민법·상법·민소법(1시간 30분), 2교시는 헌법·행정법(1시간), 3교시는 형법·형사소송법(1시간), 4교시는 일반교양과목(1시간)이다([별첨1] 일본 사법시험 예비시험 안내).⁷⁷⁾

논문식시험은 2일에 걸쳐서 진행된다. 1일차에는 헌법·행정법(2시간 20분), 형법·형소법(2시간 20분), 일반교양과목(1시간)이 진행되고, 2일차에는 법률실무기본과목(민사·형사)(3시간), 민법·상법·민소법(3시간 30분)이 진행된다. 민법·상법·민소법의 비중은 민법 1.5: 상법 1: 민사소송법 1이다.

구술시험은 단답형시험, 논문식시험의 통과자를 대상으로 치러진다.

77) 사법시험 예비시험의 형식도 이상하다. 신사법시험에서는 상법이 단답식시험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신사법시험 예비시험에서는 상법이 단답식시험에 포함되어 있어서 예비시험의 통과가 본시험인 신사법시험보다 더욱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신사법시험 예비시험을 통과하면 신사법시험의 통과는 사실상 수월해진다. 법과대학원 수료생에게 별다른 유인이 없는 것이고 이것이 법과대학원 경쟁률의 약화로 이어진다.

예비시험에서도 상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의 변호사시험보다 훨씬 크다. 상법은 독립 과목으로 단답식시험과 논술식시험에 모두 출제되고 있고, 그 비중도 민법에 비교하여 커다란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V. 우리나라 로스쿨 상사법 교육에의 시사점 및 개선방향

1.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제도의 취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핵심적인 취지는 시험에 의한 법조인 양성이 아니라 대학과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에 있다. 종전의 집체적인 법조인 양성에서 벗어나 대학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을 사회가 합의한 것이고 합의의 취지는 제대로 작동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향은 국제적인 흐름에도 부합한다. 글로벌 시대에서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대학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이 필요하다. 한국기업의 해외 진출에 수반하여 변호사의 활동영역이 해외로 확대되고, M&A 자문은 물론 현지의 자회사 경영에 한국의 변호사가 관여하는 것은 필수인데, 법학전문대학에서의 법조인 교육은 이러한 수요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과목의 개설하고, 재학 중에도 학생을 외국대학에 보내는 제도 등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계속 교육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수험교육에 집중되어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역량을 계속 교육에 할애하여야 한다. 현재 변호사협회에서 매년 8시간의 실무교육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정도의 교육만으로 부족하며 다양한 전문가가 모여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이 그 부족한 부분을 맡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조직은 항상 교육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혁신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대학과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수반되어야 한다.

2. 실천방안1 (학교교육의 충실화, 실질화)

2.1 독창성, 다양성, 전문성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출범 당시 목표로 하였던 것처럼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독창성, 다양성, 전문성 있는 법학 교육의 조직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법조인 양성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교육을 수행하면서도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당시의 법학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기대를 잊지 말아야 한다. 전문성, 다양성을 위한 충실한 교육은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취지를 훼손할 정도로 지나치게 낮아서는 아니 된다.

2.2 정부의 지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실무교육은 이미 사법시험을 통과한 자원을 대상으로 충분한 자원과 인력이 투입되는 사법연수원의 교육에 비교해서 그 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수행하는 법조인 양성의 공적인 성격을 중시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조인 양성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규제에 집중하기 보다는 학생에 대한 정부 장학금 제도 확충을 비롯한 각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지원할 수 없다면 학교의 자율성에 맡기고 등록금 규제 등을 풀어야 한다.

2.3 교육체제개편 또는 졸업이수학점의 상향조정 등

법학교육의 충실화, 실질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3년의 교육기간, 졸업이수학점 90학점, 불충분한 수습기간만으로는 부족하다. 필수과목과 일부 실무과목, 수험과목을 수강하고, 현장실습을 나가는 것만으로 3년이 지나고 있으며, 더욱이 3학년 재학 시에는 변호사시험에 집중하게 되어서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3년의 교육기간이 너무 짧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졸업이수학점이 법령상 90학점이고,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이 90학점-94학점을 졸업이수학점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법령상 졸업이수학점(93학점), 개별대학의 졸업이수학점(게이오 100학점)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신사법시험 합격(합격률 약 20-30%) 후에 사법수료소 1년 과정을 거치는 것에 비교하면 한국에서의 법조인 교육이 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①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여서 수험과목의 집중도를 완화하여야 하고, ② 엄격한 정원통제와 더불어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보장하고 그 대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수업연수를 4년으로 연장하거나, ③ 학부 단위의 6년제 로스쿨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④ 이러한 방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졸업이수학점을 높여서 충분하게 공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실천방안2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제고)

2.1 법학교육과 합격률과의 관계

법학전문대학원이 법조인 양성제도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정상적인 법학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합격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학생들이 필수과목, 사실상 필수과목, 변호사과목 등에 집중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3년의 재학기간 중에서 실제 자신의 전공이나 관심분야

를 반영하여 선택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여력은 거의 없다.

학생들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입학하였고, 실제 합격 여부가 해당 학생의 진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부 전공이나 특성화에 관계 없이 변호사시험 과목에 집중하고 있고, 학교의 모든 역량도 그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취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교육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는 정도로 높아져야 한다.

2.2 정원조정, 등록금 현실화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이라는 패러다임적인 변화는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모든 측면에서 관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합격률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입학정원이나 법조인에 대한 수요와도 관련이 있다. 법조인 수요를 무시한 채 무조건 합격률을 높여달라는 것은 합리적인 주장이 아니고, 이미 상당수의 변호사가 배출되어 사정이 변한 지금은 무조건 적인 합격률 제고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도 어렵다.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입학정원과도 관계가 있다. 이는 일본에서 신사법시험의 합격률이 떨어지고 지원자의 수준이 낮아지자 신사법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법과대학원의 입학정원이 2005년 5,767명에서 2016년 1,867명으로 1/3 가까이 감소한 것에 비추어도 알 수 있다 ([표2] 참조). 즉, 2016년을 기준으로 하면, 일본 법과대학원의 실제 입학생은 1,867명에 불과한데, 이는 매년 25개 학교에서 2,500명을 선발하는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에 비교해서도 그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적정한 합격률을 위해서는 정부, 변호사단체와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일본의 사례에 비추면 어느 정도 정원통제가 필요하다. 즉,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선발, 수료요건에 엄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학전문대학원은 결원을 보충하여 정원 이상으로 선발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학교의 재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변시경쟁률을 높임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학생들의 선발숫자를 늘려서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정부의 지원이나 등록금의 현실화를 통해서 해결하여야 한다. 그 대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등록금을 면제하고 실제 생활비 지원 등이 이루어지는 등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등록금을 더 많이 내고, 어려운 학생들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4. 실천방안4 (실무교육과 연수제도의 실질화)

우리나라는 사법시험 시에서는 2년의 사법연수원 수습이 있었으나 이제는 이러한 기간이 없어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실무수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서 실무수습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사법연수원에 준하는 실무수습은 비현실적인 생각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은 기본적으로 교육기관이고, 사법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무수습을 실시하는 사법연수원과 그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의 혼란은 제도 전환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못한 채 법학전문대학원에 사법연수원에 준하는 기능을 기대하여 과도한 부하가 걸리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실무과목이나 실무수습은 실무에 진출하기 전에 매우 기본적인 실무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현실적인 학교의 사정을 감안하여 실무수습의 내용이나 방법을 경량화하고, 수습을 대체하는 다양한 루트를 마련하며, 변협 등과의 역할 분담이 합의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생 중 검사교육은 법무연수원에서 1년간 진행되고 있고, 재판연구원은 법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가장 부실한 것이 곧 바로 변호사로 진출하는 학생들에 대한 수습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취업기관에서 수습을 진행하거나, 변협에서 6개월간 수습이 진행되는데, 일부 대형로펌이나 시스템이 갖추어진 기관을 제외하고는 실무수습이 충분하고 실질적이지 못하다. 변협과의 협조 하에 실질적인 실무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아예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실천방안4 (법학교육의 기반확충과 학문후속세대의 양성)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출범과 함께 법학연구자를 지망하는 학생이 격감하는 추세에 있고 법학연구자 양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법학전문대학원 25개교, 2,500명의 정원만으로 충분한 시장이 갖추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한 법학과의 수요와 유지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향후 교원의 충원을 비롯하여 학부단위의 기초적인 법학교육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판사, 검사, 변호사가 법조 시장의 모두가 아니고, 실제에 있어서 판사, 검사, 변호사를 제외한 이를 보조하는 법인력에 대한 수요도 많다. 따라서 판사, 검사, 변호사 시장 이외에도 그 밖의 다양한 법학교육시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이를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의 배출이 준비되어야 한다. 법학부는 그 동안 법조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역할이 기대된다.

향후 법학연구자는 이론과 실무의 가교 역할이 필요하므로 변호사 자격을 얻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무경험을 거쳐서 연구자의 길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 시민에 대한 교양법학의 교육을 담당할 인재의 양성도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법학부가 담당해 온 법학 교육 제도의 취지와 시장을 살릴 필요가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부의 연계 방식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平成 29 年司法試験予備試験受験案内

司 法 試 験 委 員 会

1 出 願

【出 願 期 間】平成 29 年 1 月 16 日(月)~同年 1 月 27 日(金)
【平成 29 年 1 月 27 日(金) までの消印有効】

【受 験 票 発 送】平成 29 年 4 月 28 日(金)を予定

※平成 29 年 5 月 12 日(金) までに到着しない場合は, 司法試験委員会宛て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2 試験日程

(1) 短答式試験

【試験の期日】平成 29 年 5 月 21 日(日)

【時間割及び試験科目】

集合時刻	着席時刻	試験時間	試験科目
8:45	9:15	9:45~11:15 (1時間30分)	民法・商法・民事訴訟法
—	11:45	12:00~13:00 (1時間)	憲法・行政法
—	14:00	14:15~15:15 (1時間)	刑法・刑事訴訟法
—	15:45	16:00~17:30 (1時間30分)	一般教養科目

【合格発表】平成 29 年 6 月 15 日(木) 午後 4 時頃

法務省ホームページ(<http://www.moj.go.jp/>)にて発表

【合格通知書兼論文式試験受験票及び短答式試験成績通知書発送】平成 29 年 6 月下旬

(2) 論文式試験

【試験の期日】平成 29 年 7 月 16 日(日)~同月 17 日(月)

【時間割及び試験科目】

試験の期日	集合時刻	着席時刻	試験時間	試験科目
7 月 16 日(日)	8:30	9:00	9:30~11:50 (2時間20分)	憲法・行政法
	—	13:00	13:15~15:35 (2時間20分)	刑法・刑事訴訟法
	—	16:15	16:30~17:30 (1時間)	一般教養科目
7 月 17 日(月)	8:30	9:00	9:30~12:30 (3時間)	法律実務基礎科目(民事・刑事)
	—	13:45	14:00~17:30 (3時間30分)	民法・商法・民事訴訟法

【合格発表】平成 29 年 10 月 12 日(木) 午後 4 時頃

法務省ホームページ(<http://www.moj.go.jp/>)にて発表

【合格通知書兼口述試験受験票及び論文式試験成績通知書発送】平成 29 年 10 月中旬

(3) 口述試験

【試験の期日】平成 29 年 10 月 28 日(土)~同月 29 日(日)

【試験科目】

法律実務基礎科目(民事)	法律実務基礎科目(刑事)
--------------	--------------

【合格発表】平成 29 年 11 月 9 日(木) 午後 4 時頃

法務省ホームページ(<http://www.moj.go.jp/>)にて発表

【合格証書及び口述試験成績通知書発送】平成 29 年 11 月中旬

※ 合格した者は, 6 か月以内に作成された戸籍抄本又は本籍若しくは国籍の記載のある住民票を, 直ちに司法試験委員会宛て送付すること。

平成29年司法試験受験案内

司 法 試 験 委 員 会

1 出 願

【出願期間】 **平成28年11月25日(金)～平成28年12月8日(木)**
【平成28年12月8日(木)までの消印有効】

【受験票発送】平成29年4月19日(水)を予定

※平成29年4月26日(水)までに到着しない場合は、司法試験委員会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2 試験日程

【試験の期日】平成29年5月17日(水), 18日(木), 20日(土), 21日(日)

【時間割及び試験科目】

試験の期日	集合時刻	着席時刻	試験時間	試験科目
5月17日(水)	8:30	9:00	9:30～12:30 (3時間)	論文式試験(選択科目)
	—	13:30	13:45～15:45 (2時間)	論文式試験(公法系科目第1問)
	—	16:15	16:30～18:30 (2時間)	論文式試験(公法系科目第2問)
5月18日(木)	9:00	9:30	10:00～12:00 (2時間)	論文式試験(民事系科目第1問)
	—	13:00	13:15～15:15 (2時間)	論文式試験(民事系科目第2問)
	—	15:45	16:00～18:00 (2時間)	論文式試験(民事系科目第3問)
5月19日(金)	—	—	—	—
5月20日(土)	8:30	9:00	9:30～11:30 (2時間)	論文式試験(刑事系科目第1問)
	—	12:30	12:45～14:45 (2時間)	論文式試験(刑事系科目第2問)
5月21日(日)	9:00	9:30	10:00～11:15 (1時間15分)	短答式試験(民法)
	—	11:45	12:00～12:50 (50分)	短答式試験(憲法)
	—	14:00	14:15～15:05 (50分)	短答式試験(刑法)

【短答式試験成績発表】平成29年6月8日(木) 16:00予定 法務省ホームページ(<http://www.moj.go.jp/>)

【短答式試験成績通知書発送】平成29年6月中旬

【合格発表】平成29年9月12日(火) 16:00予定 発表方法等詳細については、後日法務省ホームページ(<http://www.moj.go.jp/>)にてお知らせします。
 電話による可否の問合せには一切応じません。

平成29年10月4日(水) 官報公告

【合格通知書兼成績通知書発送】平成29年9月中旬

【合格証書授与】平成29年10月上旬

3 試験地

札幌市, 仙台市, 東京都, 名古屋市, 大阪市, 広島市, 福岡市

各試験地における試験場については、平成29年1月下旬頃、官報及び法務省ホームページでお知らせします。また、受験票に記載して通知します。

4 司法試験法の一部改正について(平成26年6月4日法律第52号)

司法試験法の一部改正(平成26年10月1日施行)により、平成27年司法試験から短答式による筆記試験の試験科目が憲法, 民法及び刑法の三科目となり、受験期間内に受けることができる司法試験の回数(5年間の期間において3回)の制限が廃止されました。

【별첨3】 일본 사법시험 예비시험 상법 논문식시험 문제(2016)

[商法] (설문1~설문2의 배점은 3 : 7)

次の文章を読んで，後記の〔設問1〕及び〔設問2〕に答えなさい。

1. 甲株式会社(以下「甲社」という。)は，平成18年9月に設立された株式会社であり，太陽光発電システムの販売・施工業を営んでいる。甲社の発行済株式の総数は1000株であり，そのうちAが800株，Bが200株を有している。甲社は，設立以来，AとBを取締役とし，Aを代表取締役としてきた。なお，甲社は，取締役会設置会社ではない。

2. Aは，前妻と死別していたが，平成20年末に，甲社の経理事務員であるCと再婚した。甲社は，ここ数年，乙株式会社(以下「乙社」という。)が新規に開発した太陽光パネルを主たる取扱商品とすることで，その業績を大きく伸ばしていた。ところが，平成27年12月20日，Aは，心筋梗塞の発作を起こし，意識不明のまま病院に救急搬送され，そのまま入院することとなったが，甲社は，Aの入院を取引先等に伏せていた。

3. 平成27年12月25日は，甲社が乙社から仕入れた太陽光パネルの代金2000万円の支払日であった。かねてより，Aの指示に従って，手形を作成して取引先に交付することもあったCは，当該代金の支払のため，日頃から保管していた手形用紙及び甲社の代表者印等を独断で用いて，手形金額欄に2000万円，振出日欄に平成27年12月25日，満期欄に平成28年4月25日，受取人欄に乙社と記載するなど必要な事項を記載し，振出人欄に「甲株式会社代表取締役A」の記名捺印をして，約束手形(以下「本件手形」という。)を作成し，集金に来た乙社の従業員に交付した。乙社は，平成28年1月15日，自社の原材料の仕入先である丙株式会社(以下「丙社」という。)に，その代金支払のために本件手形を裏書して譲渡した。

4. Aは，意識を回復することのないまま，平成28年1月18日に死亡した。これにより，Bが適法に甲社の代表権を有することとなったが，甲社の業績は，Aの急死により，急速に悪化し始めた。Bは，Cと相談の上，丁株式会社(以下「丁社」という。)に甲社を吸収合併してもらうことによって窮地を脱しようと考え，丁社と交渉したところ，平成28年4月下旬には，丁社を吸収合併存続会社，甲社を吸収合併消滅会社とし，合併対価を丁社株式，効力発生日を同年6月1日とする吸収合併契約(以下「本件吸収合併契約」という。)を締結するに至った。

5. Aには前妻との間に生まれたD及びEの2人の子がおり，Aの法定相続人は，C，D及びEの3人である。Aが遺言をせずに急死したため，Aの遺産分割協議は紛糾した。そして，平成28年4月下旬頃には，C，D及びEの3人は，何の合意にも達しないまま，互いに口もきかなくなっていた。

6. Bは，本件吸収合併契約について，C，D及びEの各人にそれぞれ詳しく説明し，賛否の意向を打診したところ，Cからは直ちに賛成の意向を示してもらったが，DとEからは賛成の意向を示してもらうことができなかった。

7. 甲社は，本件吸収合併契約の承認を得るために，平成28年5月15日に株主総会(以下「本件株主総会」という。)を開催した。Bは，甲社の代表者として，本件株主総会の招集通知をBとCのみに送付し，本件株主総会には，これを受領したBとCのみが出席した。A名義の株式について権利行使者の指定及び通知はされていなかったが，Cは，議決権行使に関する甲社の同意を得て，A名義の全株式につき賛成する旨の議決権行使をした。甲社は，B及びCの賛成の議決権行使により本件吸収合併契約の承認決議が成立したものとして，丁社との吸収合併の手続きを進めている。なお，甲社の定款には，株主総会の定足数及び決議要件について，別段の定めはない。

〔設問1〕

丙社が本件手形の満期に適法な支払呈示をした場合に，甲社は，本件手形に係る手形金支払請求を拒むことができるか。

〔設問2〕

このような吸収合併が行われることに不服があるDが会社法に基づき採ることができる手段について，吸収合併の効力発生の前と後に分けて論じなさい。なお，これを論ずるに当たっては，本件株主総会の招集手続の瑕疵の有無についても，言及しなさい。

〈 출처 〉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 〈 <http://www.moj.go.jp> 〉

【별첨4】 일본 사법시험 상법 논문식시험 문제(2016)

[民事系科目] [第2問] (100점, 설문1 ~ 설문3의 배점은 3.5 : 3 : 3.5)

次の文章を読んで, 後記の〔設問1〕から〔設問3〕までに答えなさい。

다음 문장을 읽고, 후기의 [설문 1]에서 [설문 3]까지 응답하십시오.

1. 甲株式会社(以下「甲社」という。)は, 取締役会及び監査役を置いている。甲社の定款には取締役は3名以上とする旨の定めがあるところ, A, Bほか4名の計6名が取締役として選任され, Aが代表取締役社長として, Bが代表取締役専務として, それぞれ選定されている。また, 甲社の定款には, 取締役の任期を選任後10年以内に終了する事業年度のうち最終のものに関する定時株主総会の終結の時までとする旨の定めがある。甲社の監査役は, 1名である。

甲社は種類株式発行会社ではなく, その定款には, 譲渡による甲社の株式の取得について取締役会の承認を要する旨の定めがある。甲社の発行済株式及び総株主の議決権のいずれも, 25%はAが, 20%はBが, それぞれ保有している。

2. 甲社は建設業を営んでいたが, 甲社においては, Aが事業の拡大のために海外展開を行う旨を主張する一方で, Bが事業の海外展開を行うリスクを懸念し, Aの主張に反対しており, AとBが次第に対立を深めていった。Aは, 事業の海外展開を行うために必要かつ十分な調査を行い, その調査結果に基づき, 事業の海外展開を行うリスクも適切に評価して, 取締役会において, 事業の拡大のために海外展開を行う旨の議案を提出した。この議案については, Bが反対したものの, 賛成多数により可決された。甲社はこの取締役会の決定に基づき事業の海外展開をしたが, この海外事業は売上げが伸びずに低迷し, 甲社は3年余りでこの海外事業から撤退した。

3. この間にAと更に対立を深めていたBは, 取締役会においてAを代表取締役から解職することを企て, Aには内密に, Aの解職に賛成するように他の取締役に根回しをし, Bを含めてAの解職に賛成する取締役に3名確保することができた。甲社の取締役会を招集する取締役にについては定款及び取締役会のいずれでも定められていなかったことから, Bは, Aの海外出張中を見計らって臨時取締役会を開催し, Aを代表取締役から解職する旨の議案を提出することとした。

4. Bは, Aが海外出張に出発したことから, 臨時取締役会の日1週間前にAを除く各取締役及び監査役に対して取締役会の招集通知を発した。この招集通知には, 取締役会の日時及び場所については記載されていたが, 取締役会の目的である事項については記載されていなかった。Aの海外出張中に, Aを除く各取締役及び監査役が出席し, 臨時取締役会が開催された。Bは, この臨時取締役会において, 議長に選任され, Aを代表取締役から解職する旨の議案を提出した。この議案については, 賛成3名, 反対2名の賛成多数により可決された。

5. Aが, 海外出張から帰国し, Aを代表取締役から解職する旨の臨時取締役会の決議の効力を強硬に争っていたところ, 臨時取締役会の決議においてAの解職に反対した取締役のうち一人が, 甲社の内紛に嫌気がさし, 取締役を辞任した。そこで, Bは, 各取締役及び監査役の全員が出席する定例取締役会であっても, Aの解職の決議をすることができる状況にあると考え, 解職を争っていたAを含む各取締役及び監査役の全員が出席した定例取締役会において, 念のため, 再度, Aを代表取締役から解職する旨の議案を提出した。この議案については, 賛成多数により可決された。また, 甲社においては, 取締役の報酬等の額について, 株主総会の決議によって定められた報酬等の総額の最高限度額の範囲内で, 取締役会の決議によって役職ごとに一定額が定められ, これに従った運用がされていた。この運用に従えば, Aの報酬の額は, 月額50万円となるころ, Bは, この定例取締役会において, Aの解職に関する議案に続けて, 解職され

たAの報酬の額を従前の代表取締役としての月額150万円から月額20万円に減額する旨の議案も提出した。この議案についても、賛成多数により可決された。この定例取締役会において、BがAの後任の代表取締役社長として選定された。

〔設問1〕

(1)Aを代表取締役から解職する旨の上記4の臨時取締役会の決議の効力について、論じなさい。

(2)Aの報酬の額を減額する旨の上記5の定例取締役会の決議の後、Aは、甲社に対し、月額幾らの報酬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かについて、論じなさい。なお、Aが代表取締役から解職されたことを前提とする。

6. 代表取締役から解職されたAは、甲社の株主として、定時株主総会において、Aの解職に賛成したBら3名を取締役から解任しようと考え、Bら3名の取締役の解任及びその後任の取締役の選任をいずれも株主総会の目的とすることを請求するとともに、これらに関する議案の要領をいずれも定時株主総会の招集通知に記載するように請求した。甲社の定時株主総会の招集通知には、会社提案として、海外事業の失敗を理由とするAの取締役の解任に関する議案が、Aの株主提案として、上記Bら3名の取締役の解任に関する議案及びその後任の取締役の選任に関する議案が、それぞれ記載されていた。

7. 甲社の定時株主総会においては、Aの取締役の解任に関する議案は可決され、上記Bら3名の取締役の解任に関する議案及びその後任の取締役の選任に関する議案はいずれも否決された。なお、Aの取締役としての任期は、8年残っていた。

〔設問2〕

(1)上記7の定時株主総会において取締役から解任されたAが、甲社に対し、解任が不当であると主張し、損害賠償請求をした場合における甲社のAに対する会社法上の損害賠償責任について、論じなさい。

(2)仮に、上記6の定時株主総会の招集通知が発せられた後、Aが多額の会社資金を流用していたことが明らかとなったことから、Aが、Aの取締役の解任に関する議案が可決されることを恐れ、旧知の仲である甲社の株主数名に対し、定時株主総会を欠席するように要請し、その結果、定時株主総会が、定足数を満たさず、流会となった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①Bが、甲社の株主として、訴えをもってAの取締役の解任を請求する際の手続について、説明した上で、②この訴えに関して考えられる会社法上の問題点について、論じなさい。

8. 甲社は、内紛が解決した後、順調に業績が伸び、複数回の組織再編を経て、会社法上の公開会社となり、金融商品取引所にその発行する株式を上場した。現在、甲社の資本金の額は20億円で、従業員数は3000名を超え、甲社は監査役会及び会計監査人を置いており、Cが代表取締役社長を、Dが取締役副社長を、それぞれ務めている。

9. 甲社の取締役会は「内部統制システム構築の基本方針」を決定しており、甲社は、これに従い、法務・コンプライアンス部門を設け、Dが同部門を担当している。また、甲社は、内部通報制度を設けたり、役員及び従業員向けのコンプライアンス研修を定期的実施するなどして、法令遵守に向けた取組を実施している。さらに、甲社は、現在、総合建設業を営んでいるところ、下請業者との癒着を防止するため、同規模かつ同業種の上場会社と同等の社内規則を制定してお

り,これに従った体制を整備し,運用している。

10. 甲社の内部通報制度の担当者は,平成27年3月末に,甲社の営業部長を務めるEが下請業者である乙株式会社(以下「乙社」という。)の代表取締役を務めるFと謀り,甲社が乙社に対して発注した下請工事(以下「本{件下請工事}」という。)の代金を水増しした上で,本{件下請工事の代金の一部を着服しようとしているとの甲社の従業員の实名による通報(以下「本{件通報}」という。)があった旨をDに報告した。ところが,その報告を受けたDは,これまで,甲社において,そのような不正行為が生じたことがなかったこと,会計監査人からもそのような不正行為をうかがわせる指摘を受けたことがなかったこと,EがDの後任の営業部長であり,かつて直属の部下であったEに信頼を置いていたことから,本{件通報には信ぴょう性がないと考え,本件下請工事や本{件通報については,法務・コンプライアンス部門に対して調査を指示せず,Cを含む他の取締役及び監査役にも知らせなかった。

11. 甲社の内部通報制度の担当者は,その後,Dから,法務.コンプライアンス部門に対し,本件下請工事や本{件通報についての調査の指示がなかったことから,平成27年5月に,本{件通報があった旨をCにも報告した。その報告を受けたCは,直ちに,本{件下請工事や本{件通報について,法務.コンプライアンス部門に対して調査を指示した。

12. 甲社の法務.コンプライアンス部門が調査をした結果,2週間程度で,以下のとおり,EとFが謀り,本{件下請工事について不正行為をしていたことが判明した。

(1)EとFは,本{件下請工事について,合理的な代金が1億5000万円であることを理解し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代金を5000万円水増しして,2億円と偽り,水増しした5000万円を後に二人で着服することをあらかじめ合意していた。

(2)甲社の社内規則上,甲社が発注する下請工事の代金が1億円以上となると,複数社から見積りを取得する必要があることから,Eが,Fに対し,本{件下請工事について,形式上,工事を三つに分割して見積書を3通作成することを指示し,乙社は,①第一工事の代金を8000万円,②第二工事の代金を5000万円,③第三工事の代金を7000万円として,本件下請工事について代金が合計2億円となるように3通の見積書を作成し,甲社に提出した

(3)Eは,甲社の関係部署を巧妙に欺き,3通の見積書がそれぞれ別工事に関わるものであると誤信させた。これにより,甲社は,平成26年9月に,乙社との間で,上記の各見積書に基づき3通の注文書と注文請書を取り交わした上で,以後,乙社に対し,毎月末の出来高に応じて翌月末に本{件下請工事の代金を支払っていった。

(4)甲社は,本{件下請工事が完成したことから,乙社に対し,平成27年4月末に残金合計3000万円を支払い,その後,EとFが,甲社が乙社に対して支払った本{件下請工事の代金から5000万円を着服した。

(5)甲社の会計監査人は,平成27年1月に,乙社に対し,甲社の平成26年12月期の事業年度の計算書類及びその附属明細書等の監査のために,本{件下請工事の代金の残高についての照会書面を直接郵送し,回答書面の直接返送を求める方法で監査を行ったが,Eは,Fに対し,回答書面にEが指定した金額を記載して返送するように指示をするなど,不正が発覚することを防止するための偽装工作を行っていた。

〔設問3〕上記8から12までを前提として,①Cの甲社に対する会社法上の損害賠償責任及び②Dの甲社に対する会社法上の損害賠償責任について,それぞれ論じなさい。

〈 출처〉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 〈<http://www.moj.go.jp>〉

일본 법과대학원의 교육현황과 신사법시험의 출제경향 및 시사점

— 상사법 분야를 중심으로 —

박 인 동*

1.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취지와 현실상황

1.1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핵심적인 취지는 시험에 의한 법조인 양성이 아니라 대학과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에 있다. 종전의 시험에 의한 집체적인 법조인 양성제도로는 글로벌시대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할 수 없다는 반성에서 비롯되어, 미국의 제도를 받아 들여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과연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됨으로 인하여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 많이 배출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이 구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 보다 일반 국민들에 대하여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물론 아직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의 역사가 10년도 되지 않아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많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현실로 보인다.

1.2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이 주관한 “법조 선후배 만남” 행사에 참가하여, 어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의 멘토로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다. 이 법학전문대학원은 소위 말하는 일류 대학원은 아니었는데, 이 대학원의 학생들로부터 받은 질문들은 거의 대부분 취직과 관련한 것이었다. 이들에게서 전문성을 갖추어 사회에 나가 활약을 해 보겠다는 패기를 느끼기 보다는, 졸업 후의 진로 및 취직걱정에 골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과연 이들이 느끼는 법조인의 미래는 어떠한 것일까?

*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의 집행부가 결성되지 못하여 흥역을 치렀다. 새롭게 당선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집행부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수적 우세를 무기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며 집행부 구성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들이 왜 이렇게 무리한 행동을 하였을까? 결국,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이들이 맞이한 법조현실에서 그들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선배 법조인으로서 자괴감이 들기도 했고, 이러한 현실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취지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현실이 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¹⁾

1.3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일일이 다 거시하기는 힘들다. 그 만큼 새롭게 태어나는 법조인들의 미래가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인식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다.

이러한 현실 인식 하에, 우리보다 먼저 법과대학원을 시작한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시사점을 얻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2. 일본의 경우

2.1 일본의 법과대학원²⁾의 교육현황과 신사법시험의 출제경향 등에 대하여는 김흥기 교수님께서 소상히 말씀하여 주셨다. 특히, 일본 대학원의 커리큘럼과 신사법시험의 시험문제 출제경향 등에 대하여도 상세히 말씀하여 주셨다. 그리고 예비시험이 생김으로써 그러지 않아도 힘들던 대학원이 더 힘들어지고, 오히려 예비시험을 거쳐 신사법시험을 통과하여 법조인이 되는 길이 제1순위 루트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원래의 대학원 설립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편, 일본의 경우, 법학부를 존치시킴으로 인하여 법학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많은 이들에게 법조인의 길을 개방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 신사법시험 합격 후 1년간의 사법연수소의 실무수습을 받으며 실무교육을 심화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 등이 우리와 다른 점으로 보였다.

2.2 일본 대학원의 커리큘럼이나 사법시험 출제경향 등도 사실 상 우리와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아 보이지만(우리나라의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거치지 않기에 실무과목(필수실무과목, 응용실무과목)이 일본에 비하여 많아 보이긴 한다), 일본의 신사법시험이

1) 이는 일본의 법과대학원 설립취지와 유사해 보인다.

2) 일본에서는 법과대학원이라 하고, 한국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 이하에서는 둘 다 “대학원”이라고 통칭하기로 한다.

나 우리나라의 변호사시험 과목을 보면, 법률체계를 크게 공법계, 민사계, 형사계로 나누고 있고, 민사계에 상사법을 포함시키며 거의 비슷해 보인다.

이렇게 대학원 커리큘럼이나 시험과목 등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은, 대학원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배워야 하는 내용은 많고, 그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교로서는 졸업 후 시험에 합격자를 많이 배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2.3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대학원은 공통적으로 기본적인 법률과목 이외의 특수한 법률 과목 내지 법률 인접과목 등에 대한 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과연 이러한 커리큘럼으로 당초 대학원의 설립목적이었던 글로벌시대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지는 극히 의문이 아닐 수 없다.

3.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원래의 대학원 설립취지를 살려서 더 나은 법조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김홍기 교수님께서도 여러 의견을 제시하셨다.

즉,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제고, 입학정원 조정 및 등록금 현실화, 정부의 지원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안 하셨는데, 보다 기본적으로, 대학원의 설립취지에 맞게 대학원에서 반드시 하여야 하는 교육내용을 다시 재고하여 보고, 이에 따라 교육기간 등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에 아래에 2가지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물론, 우리 한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법조인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 역시 다시 생각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1 사법연수원 수습을 거치게 하는 방안

변호사시험 합격 후, 1년 정도의 사법연수원 수습을 거치게 하는 안을 주장하고 싶다. 즉, 대학원에서는 보다 이론교육, 다양하고 특수한 법률과목 등을 교육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법률시장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열어주도록 하는데 치중하게 하고, 전통적인 법률실무교육은 사법연수원에서 다시 집중적으로 교육하도록 하는 것이, 대학원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지 않아도 빠듯한 대학원 수업시간에 법률실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며, 변호사시험 과목도 아니므로 학생들의 집중도 역시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법률실무교육은 변호사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에서 다시 제대로 교육하여, 실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간에 글로벌시대에 걸 맞는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의 길을 열어주도록 하는 교육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어차피 실무적인 전문성 내지 스킬은 실무를 하면서 익혀야 하는 것이지 이를 단기간의 형식적인 실무교육으로 채울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원에서는 보다 이론적이면서 각 전문분야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데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특히, 현재와 같이 변호사시험 후 형식적인 수습기간을 보낸 변호사들의 실무에 투입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위험한 일이 될 것이고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그 폐해는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 갈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을 한 곳에 모아 법률실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판사, 검사, 변호사 업무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여 법조일원화의 기초가 될 수 있고, 최근의 대한변호사협회에서의 불상사를 막을 수 길이 될 것이다. 같은 법조인으로서의 동질감 내지 소속감을 서로 공유한다는 것은 법조사회가 그 역할을 달성하도록 하는 데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신사법시험 합격자 전원이 1년간의 수습을 거치고 있다. 이러한 수습 기간 동안 많은 발전과 성숙이 있었다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3.2 법학전문대학원 수업연수 연장 방안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충실화하고 그 설립취지에 조금이라도 맞게 하려면, 수업연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대학원 수업연수를 4년으로 늘리거나 학부단위의 6년제로 하자는 등, 수업연수 연장을 주장하시는 김홍기 교수님의 주장에 일응 동의하며, 구체적인 연장 수업연수 등에 대하여는 지금부터라도 더 심도 있게 논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맺으며

법조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우리 법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그 법조의 직원들을 길러내는 법조인 양성제도가 바로 서고 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대학원을 어떻게 잘 운영하고, 우리의 법조인 양성제도를 어떻게 잘 가꾸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국민 모두의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 생각한다.

그리고 법조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할 때이다. 즉, 지금까지 법조라 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 만을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들만이 법조인은 아니며, 너무도 많은 곳에서 법조인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성숙해지면 질수록 더욱 법조인의 역할은 커

저갈 것이다. 대학원을 미치고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법조인들이 모두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 활약하기를 기대하고, 이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고 본다.

일본 법과대학원의 교육현황과 신사법시험의 출제경향 및 시사점

- 상사법 분야를 중심으로 -

강 영 기*

김흥기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내용을 정말 감사하게 잘 읽었습니다. 발제문에서는 우선 일본 법과대학원의 현황과 교육과정과 내용들에 대한 분석을 시작으로 일본의 현행 사법시험관련 내용은 물론 상사법의 출제경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한 내용을 균형 잡힌 시각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주셔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지만 몇 가지 의견을 여쭙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부분들까지 일일이 짚고 넘어가기에는 시간의 제약도 있으므로 일본 사법시험제도와 관련된 일본에서의 비판적 의견과 저의 소견을 간단히 말씀드린 다음에, 간단히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토론에 갈음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현행 일본의 법조인양성제도에 관한 비판적인 의견을 간단히 적어보고자 합니다.

흔히 법조인양성과 관련하여 언론에서도 그렇고 법조인들도 그렇고 법조인수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다고 보는데, 판사나 검사 등의 채용은 대체로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므로 실제로 법조인수의 문제는 변호사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법과대학원(한국은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이다.

종래의 일본 사법시험은 보통 대학의 교양과정만 수료하면 시험을 치를 수 있고 가령 대학의 교양과정을 수료하지 않더라도 '제1차 시험'이라 불리는 시험에 합격하면 '2차 시험'을 볼 수 있었으며, 그 후 몇 번이고 응시하는 것이 가능하였는데, 신 사법시험에서는 자격제한이 생겨나게 된다. 그 자격은 원칙적으로 법과대학원 수료자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그런데 문제는 이 제도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별로 없다는 현실이 아닐까싶다. 도대체 무엇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일까.

본래 법과대학원과 신 사법시험제도는 미국의 로스쿨 등을 참고로 법과대학원을 수료한 자의 70-80% 정도가 합격할 수 있는 제도로 구상된 것이다. 제도 도입 직후에는 많은 사람이 기대를 안고 법과대학원에 몰려들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법학이수자 과정 수료자만이 시험을 치른 첫해인 2006년도의 합격률조차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3년째는 30%대, 4년째는 20%대로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법제도 개혁심의회 등에서 거론된 이유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 (1) 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법조인수를 대폭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 (2) 구 사법시험은 지식습득에만 편중하여 수험테크닉 중심으로 학습을 한 자가 법조인이 되는 경향이 있으며, 일부 대학의 법학부에서는 법조인이 되고자하는 학생이 수험학원 중심의 생활을 하면서 대학수업을 등한시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이를 고치기 위해서라도 법조인으로서의 폭넓은 교양과 실무를 체득시키기 위한 법과대학원이 필요하다.
- (3) 다양한 시민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법학부의 졸업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법조인이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구 사법시험의 수험생 중에는 몇 년이고 수험을 반복하고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수험회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아래 시작된 법과대학원과 신 사법시험제도이다.

그럼 실제로 현실은 어떠하였을까.

- (1) 변호사수는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그에 따른 법률수요가 생겨나는 것도 아니므로, 고생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여도 취직이 되지 않아 변호사의 길을 걷는 것을 포기하는 자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변호사가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하여 사법이 시민과 친숙한 환경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수 증가에 따라 변호사수요가 증가하지도 않는다. 변호사가 증가하면 기업이나 관공서가 변호사를 고용하게 될 것을 기대하였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수요는 증가하지 않았다.
- (2) 구 사법시험의 수많은 수험생이 법률지식과 수험테크닉 중심으로 학습을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신 사법시험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오히려 법과대학원 자체가 수험학원처럼 바뀌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대학수업을 등한시하는 문제보다도 대학교육 자체가 학원처럼 변질되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신 사법시험의 합격실적이 법과대학원의 전부이기에 법과대학원 자체의 존속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 (3) 다양한 인재의 확보를 도모하고자 법학 비전공자 코스를 마련하였지만, 지원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입학하더라도 공부의 어려움과 장래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을 앓는 학생들도 나타나고 있다. 사회경험을 가진 회사원 등이 법조인이 되고자 해도 직장을 그만두고 법조인이 되기 위한 길에 들어서기에는 그 리스크가 너무 크다. 결국 다양한 인재의 확보라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비해 구 사법시험제도에서는 훨씬 다양한 인재가 법조인이 되는 것이 가능하였다.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사법시험을 치를 기회가 있으므로 몇 번이고 도전할 수 있었고, 사법시험에 합격만 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자, 비법학부 출신의 대학 졸업자, 다른 직업을 가진 자 등이 독학으로 혹은 수험학원 등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 (4) 구 사법시험은 몇 번이고 수험이 가능했기 때문에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지 못하고 수험생활을 계속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횡수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 구 사법시험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의 하나로 거론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흡연자와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는 미사여구로 흡연자에게만 담배의 대폭적인 증세를 부담시키면서 이를 합리화하는 담배증세론의 이기주의적 발상 못지않게 추악한 모습을 닮아있다. 인생을 망쳤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감히 타인이 판단해도 되는 영역이 아니다. 더구나 구 사법시험제도 하에서는 자신의 형편에 따라 엄청난 돈을 들이지 않고 공부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신 사법시험은 원칙적으로 법과대학원을 수료하여야 시험을 치를 수 있으므로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기까지 막대한 비용이 든다. 유복한 부모로부터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학생 이외에는 융자형태의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많은 학생들이 상당한 빚을 부담하게 된다. 어느 것이 사회의 통합을 위한 측면에서 진정으로 열려있는 제도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대목이다.

한편, 신 사법시험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견해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구 사법시험에 대해 대체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히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많은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구 사법시험은 만인에게 문호가 개방된 정말로 공평한 제도였다고 인식되고 있다. 전술한 것처럼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일반교양과목이나 외국어를 포함한 제1차 시험에 합격하면 누구든지 시험을 치를 수 있어서 학력과 전혀 관계가 없는 시험이었다. 그리하여 다양한 경력을 가진 자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었다. 학원도 다니지 않고 혼자서 독학으로 공부할 수도 있어서 가난한 자도 법조인이 될 수 있었으므로 구 사법시험은 정말로 이상에 가까운 형태로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있었다고 평가된다. 이와 달리 신 사법시험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법과대학원을 수료하여야 사법시험을 치를 수가 있으므로,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고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의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학생들만이 주로 법과대학원에 진학할 것이다. 이처럼 학력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수험할 수 있었던 구 사법시험에 비하여 신 사법시험제도가 갖는 배타성은 너무도 명확하다. 결국 법과대학원제도는 빈곤층을 쫓아내고 있어서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동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을 완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법시험제도의 자격제한의 예외로서 마련된 것이 예비시험이라는 제도이다. 그런데 예비시험 자체가 신 사법시험제도의 모순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현재의 일본의 법과대학원의 지원자 감소와 합격률감소의 문제 등은 예비시험의 문제도 아니고 단순히 법과대학원교육과정의 문제도 아닌 것으로 본다. 변호사수의 증가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변호사의 수입이 반감되었고 취업상황도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는, 변호사수의 지속적인 증가는 변호사 과잉에 따른 직업적 매력을 저하시키는 것이 당연하고, 법조인 희망자도 감소하는 것이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자는 줄어들지 않게 하면서 우수한 인재를 많이 확보하겠다는 생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사법시험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로 혼란스런 상황인데, 일련의 상황을 보면 그 혼란의 근본원인은 구 사법시험의 문제점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비판을 전제로 하여 현행 제도가 만들어진 사실에 기인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느낌마저 든다.

다음으로, 발제문에서 한국 변호사시험과 너무나도 비교되는 일본 사법시험에서의 상법의 출제경향과 비중 등을 잘 정리하여 주셨는데, 혹시 한국 변호사시험에서 상법비중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법제도는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법조인양성제도가 지향하는 바는 어떠한지, 양자의 우선순위가 있다면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고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제3세션

학부 상사법 교육의 발전방향

- 홍익대학교의 경험을 중심으로 -

이 중 기

(홍익대학교 교수)

학부 상사법 교육의 발전방향

- 홍익대학교의 경험을 중심으로 -

이 중 기*

I. 고찰의 범위와 대상

1. 고찰의 범위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로스쿨에서의 교육과 변호사시험을 통한 자격부여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체제로 전환된 이후 우리나라 대학교들은 (i)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교, (ii) 기존의 법과대학을 유지하는 대학교, (iii) 기존 법과대학을 축소해 다른 학과와 융합하는 대학교들로 정리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이 글은 (ii)의 “법과대학을 유지하는 대학교”에서 (a) 법과대학의 상사법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b) 법과대학 이외의 단과대학에서의 상사법 교육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하여 발표함.

(i) 유형의 대학교, 즉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교”에서 ‘로스쿨 이외의 대학’에서 상사법 교육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혹은 (iii) 유형의 대학교, 즉 “법학과가 융합된 단과대학”을 갖고 있는 대학교에서 상사법 교육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ii)의 (b) 문제와 유사한 문제로 생각됨.

따라서 로스쿨 설치대학교의 학부 상사법교육 문제는 앞서 언급한 “법과대학을 유지하는 대학교”에서 법과대학 이외의 다른 단과대학 특히 경영대학 혹은 자율전공 학생들의 상사법 수요 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과 연관지어 설명하려고 함.

2. 고찰의 대상 :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및 비법대에서의 상사법 교육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단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홍익대학교 등과 같이 법과대학을 유

* 홍익대학교 교수

지하고 있는 (ii) 유형의 대학교에서 (a) 법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사법 교육을 수행하는 방식 및 (b) 법과대학 이외의 단과대학에서 비법대생을 대상으로 상사법 교육을 수행하는 방식은 유사할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이 발표에서는 발표자가 재직하고 있는 홍익대학교에서 (i) 법과대학이 수행하고 있는 상사법 교육방식 및 (ii) 경영대학 혹은 자율전공 학생들에 대한 상사법 교육수요를 충족시키는 방식을 중심으로 하여 발표를 할 예정임.

국민대학교, 단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및 숙명여자대학교 등에서 법과대학 차원 및 다른 단과대학 차원에서의 상사법수요와 상사법교육에 관해 언급할 만한 특징이 있는 경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Ⅱ. 홍익대학교 법과대학에서의 상사법 교육수요와 교수방법

1. 법과대학의 명목적 교육목표와 실질적 교육목표

(1) 명목적 교육목표 - 법적 소양을 지닌 학생의 교육

(2) 실질적 교육목표 - 취업을 어떻게 시키느냐?

학생들의 요구는 취업에 맞추어져 있고,

학교본부에서의 단과대학 주요 평가척도도 취업률에 맞추어져 있음.

이러한 취업수요에 대응하여 우리 법과대학은

먼저, 법학과를 사법학과와 공법학과로 나누었고

그 후에 진로트랙을 5개의 진로트랙으로 나누어 취업수요에 대응하고 있음

하지만, 그에 따른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음.

2. 법과대학 발전전략과 상사법 교육에 대한 영향 I : 2개 전공학과와 관련하여

(1) 공식적 분류 : 사법학과와 공법학과

* 공법학과, 사법학과

교과과정, 전공필수 등 교육행정 목적상 두 개의 독립된 학과가 존재

* 전공을 구분한 이유 : 교과과정의 차별화와 수요집중

- 사법학과: 기업체 취업을 위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과목 특히 상사법과목을 집중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결과) 이수학점의 제한으로 인해

형법의 특화 : 재산범죄론 - 형법 각론 전체가 아니라 기업활동과 관계 깊은 재산범죄만 교육

- 공법학과 :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과목 특히 공법과목을 많이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결과) 이수학점의 제한으로 인해

상법의 일반화 : 비즈니스법 - 상법의 유가증권법 등 세부 교과를 가르치는 대신, 상법 전체를 아우르기 위하여 제공

(2) 전공 구분이 상법교육에 미치는 영향

* 두 전공에 있어서의 상사법 과목들의 비중

상사법과목들은 사법학과에서는 사실상 필수이고 과목수도 많으나, 공법학과에서는 필수가 아니고 개설과목도 두 개 밖에 없음.

	1학기	2학기
사법학과	2학년 : 상법총칙 및 상행위법 3학년 : 기업파이낸스법, 유가증권법 4학년 : 경제법 I, 금융법, 증권거래법	2학년 : 회사법(전공필수) 3학년 : 보험해상법 4학년 : 국제거래법, 경제법 II
공법학과	2학년 : 비즈니스법	2학년 : 회사법 (전공필수)

(3) 외부적 요인 : 융합전공의 강화 현상이 상법 교육에 미치는 영향

* 시대적 현상 - 융복합 전공의 탄생과 강화 현상

* 복수전공, 융합전공의 강화로 인한 상사법 과목에 대한 효과

특히 대학본부차원의 융합교육 강조로 인해, 복수전공 부전공 융합전공이 활성화됨에 따라 복수전공, 융합전공을 하는 경우, 이수해야 할 전공학점을 감해 주기 때문에, 사법학과 학생인 경우에도 많은 상사법과목의 이수를 강제하는 것은 힘들어짐.

다른 한편 특정 융합학과의 경우, 더욱 구체화된 상사법과목을 요구하므로, 기존의 법대 과목을 제공할 수 없어 새로운 교과목을 만들어야 하는 수요가 발생

예) 로봇 융복합 전공 : 로봇에 관한 법적 책임문제 등을 사법적, 행정법적 관점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를 충족하려면 더욱 자세한 교과목이 제공되어야 함.

(4) 현상과 고민

* 특기할 만한 현상 : 공법학과 편중 현상

기업체 취직이 어려워짐에 따라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공법학과로의 선호도가 높음

- 이것은 80년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사법학과의 선호도가 높았던 점과 대비되는 점임.
- 이 추세가 계속되면 사법학과 운영의 어려움 및 상사법과목에 대한 수요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로스쿨 진학 수요의 증가로 인한 공사법 구분의 불편함

공법 사법 전공 구분이 로스쿨 진학하려는 학생들에게 불편하게 작용하고 있음

예) 공법학과 학생이 유가증권법을 수강하는 경우, 전공선택이 아니라 일반선택이 됨

* 법과대학의 고민 : 법학과로의 통합 여부

공법학과 학생이 사법학과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전공과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작용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음.

다시 법학과로 통합하는 경우도 고려하고 있으나, 이 경우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겨우 활성화된 공무원트랙에 부정적 영향이 생김.

각 옵션의 장단점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나, 해답을 찾기 어려움.

2. 법과대학 발전전략과 상사법 교육에 대한 영향 II : 5개 진로트랙과 관련하여

(1) 진로지도를 위한 분류 : 5가지 진로트랙과 트랙별 지도교수의 배정 체제

학교의 공식적 분류체계인 공법학과와 사법학과 분류와는 별도로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내부적인 진로트랙을 운영하고 있음.

* 지도교수 배정 - 진로트랙 위주로 배정

교수들의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와 진로지도의 연동 : 트랙별 지도교수제

지도교수 제도를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중심으로 하여 지도교수를 트랙별로 나누어 배정함

(2) 5가지 트랙의 종류

(i) 로스쿨, 행정고시, 국립외교원 트랙 : 로스쿨 진학, 행정고시 준비, 국립외교원 입학에 위한 트랙

- 핵심 전략 트랙 : 수강과목 선정, 대외활동 참여 등에 있어 교수의 지도가 가장 많이 필요한 분야

- 가장 많은 지도교수를 배정

- 국립외교원 트랙은 국제법 교수가 담당

(ii) 공공인재 (공무원) 트랙 : 행정고시를 제외한 공무원 임용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트랙

- 가장 수요가 많은 트랙

- 공법 교수들을 중심으로 하여 지도교수를 선정

(iii) 기업법무트랙 : 사기업 혹은 공기업의 취직을 위한 트랙

- 상사법 교수들을 중심으로 하여 지도교수를 선정

(iv) 자격증트랙 : 변리사, 노무사, 세무사, 보험계리사 등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트랙

(v) 외국로스쿨, 국제기구 트랙 : 외국 LLM 과정, 국제기구 취업 등을 목표로 하는 트랙

(3) 트랙별 활성화 정도가 상사법 교육에 미치는 영향 :

첫째, 최근 졸업생들의 로스쿨 진학이 활발해 짐에 따라 우수한 학생들은 로스쿨진로에 관심을 많이 가짐.

-> 이들이 로스쿨에서의 집중적인 교과이수에 대한 예비교육으로서 기본법 (헌법, 민법, 형법)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는 경향이 생김

-> 반면에 상법, 행정법에 대한 강조는 상대적으로 약함

둘째, 동시에 공무원트랙에 대한 지원자가 급증함

->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안정적인 공무원에 대한 수요의 급증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됨

-> 7급 공무원, 9급 법원 공무원, 9급 검찰직 공무원 등이 주된 응시 대상임

-> 하지만, 이들 공무원 시험에서 상사법 과목은 비중이 낮음.

셋째, 기업법무트랙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낮음

-> 이는 기업체 취직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결과적으로 법대에서의 상사법과목의 수요가 줄어드는 결과로 나타나고 이는 상사법과목의 개설이 어려워지는 것을 의미함.

3. 트랙별 권장 교과과정과 상사법의 위치

(1) 로스쿨트랙의 권장교과 구성과 상사법의 위치

* 수강과목과 관련하여 :

로스쿨 진학 후 로스쿨과정에서 단기간에 집중해서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어려움에 용이하게 대응하게 하기 위하여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헌법, 민법, 형법 등과 같은 로스쿨 필수과목과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필수 소송법 과목의 수강을 권유

* 상사법 교육의 위치

- 로스쿨 교과과정에서 상사법의 위치가 민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결과가 그대로 반영되어 로스쿨 트랙에서의 상사법 위치도 영향을 받음.

* 공사법 전공 구별로 인한 구속

현재 법대의 현민형 과목 중 계약법, 형법총론, 통치기구론만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로스쿨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필수과목이 아니지만, 전부 수강할 것을 강하게 지도하고 있음.

(i) 사법학과 학생의 경우 : 헌법, 형법 계열의 일부 과목은 전공과목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선택으로 수강

(ii) 공법학과 학생의 경우 : 민법의 일부 과목 및 상법 과목이 전공과목으로 취급되지 않으나, 일반선택으로 수강

(2) 공무원트랙의 권장교과 구성과 상사법의 위치

* 수강과목과 관련하여

공무원으로의 임용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공법학과에의 진학을 권유하고, 위에서 본 것과 같은 공법학과의 과목을 수강할 것을 권유함.

* 공무원시험의 다양성

공무원 임용은 공무원임용시험에 의하여 결정되고, 공무원시험의 종류는 다양함.

또 공무원시험의 종류에 따라 시험과목도 다양하게 달라짐.

-> 로스쿨트랙처럼 교수들이 상세히 지도해 줄 수 있는 여지는 제한적임.

* 행정법의 필수화

하지만, 어느 공무원시험이든 간에 헌법, 행정법의 수요는 항상 존재함.

이는 기업들이 상사법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임

-> 결과적으로 행정법 과목들의 수강은 상사법 과목 수강과 비교할 때 활성화되어 있음.

* 홍익대 법대 졸업생들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공무원의 종류와 상사법의 위치

(i) 법원공무원

① 9급 : 등기사무직력에만 상법/회사법 과목이 포함됨

2차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⁵⁾

법원사무직렬

시험과목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배점비율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등기사무직렬

시험과목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총론, 회사편)	부동산등기법
배점비율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② 법원 행정고시

등기사무직렬 : 상법/회사법 과목이 포함됨 ⁶⁾

법원사무직렬 : 상법과목이 포함안됨

시험구분	시험방법	시험과목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	헌법, 민법, 형법, 영어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헌법, 민법, 형법, 영어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제2차	논문형 필기시험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상법(총론, 회사편),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제3차	인성검사/면접시험		

5) <https://exam.scourt.go.kr/wex/exinfo/info01.jsp>

6) <https://exam.scourt.go.kr/wex/exinfo/info02.jsp>

③ 법무사 : 시험과목⁷⁾에 1차시험에만 상법이 포함되고, 2차시험 과목에는 포함안 됨.

구분	제1차시험	제2차 시험
제1과목	헌법(40), 상법(60)	민법(100)
제2과목	민법(8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20)	형법(50), 형사소송법(50)
제3과목	민사집행법(70),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30)	민사소송법(70),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30)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60), 공탁법(40)	부동산등기법(70), 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

(ii) 검찰공무원 : 상법과목이 포함안됨

(iii) 입법부공무원 :

① 8급 :

② 입법고시 : 시험과목⁸⁾으로서의 상법의 위상이 취약함

직류	제1차시험(선택형)	제2차시험(논문형)
일반 행정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필수(4) : 행정학, 행정법, 경제학, 정치학 선택(1) : 정책학, 지방행정론(도시행정 포함), 정보체계론, 조사방법 론(통계분석 제외),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법제	헌법 영어	필수(4) :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선택(1) : 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세법
재경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필수(4) : 경제학, 재정학,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회계학, 통계학, 국제경제학, 상법, 세법
사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필수(4) : 도서관경영론, 자료조직론, 정보검색론, 참고봉사론 선택(1) : 사회과학서지, 행정법, 경제학, 정치학

(iv) 소결

공무원 시험에서 상사법과목의 역할이 미미함.

이는 공무원트랙 학생들의 상사법과목 수강의 저조한 결과로 나타남

(3) 기업법무트랙의 권장교과 구성과 상사법

* 수강과목

기업체의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사법학과에의 진학을 권유하고,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사법학과에서 개설된 전공과목을 수강할 것을 권유함.

동시에 경영학 혹은 경제학의 복수전공 혹은 부전공을 개인적으로 권유하고 있음.

7)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7-26호, 제23회 법무사시험 시행계획 공고

8) 국회사무처공고 제2017-8호,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시행계획 공고

* 기업법무 트랙에서의 상사법교육의 위치

기업법무 트랙에서 상사법의 위치는 매우 중요함.

하지만, 실제 기업의 취직에 있어 상사법이 어느 정도 중요한가는 의문이 있음.

앞서 본 것처럼, 어느 공무원시험이든 간에 헌법, 행정법을 필수과목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헌법, 행정법의 수요는 항상 존재함.

반면에, 기업이 사원을 채용할 때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은 경제학, 경영학이지 상사법을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아님

-> 결과적으로 공공부분의 취업수요의 증가로 인해 행정법 과목들의 수강은 증가될 수 있지만, 민간부분의 취업수요의 증가가 있을 때 상사법 과목 수강이 반드시 증가할 것인가는 불확실하고, 법과대학 내의 상사법 수요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 공공부분에서 행정법이 필수과목으로 인식되듯이, 민간부분에서 상사법수요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상사법을 기업체 취직시 필수과목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

예) 상장기업에서의 legal risk 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법무팀 혹은 사내 compliance 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해 보임.

물론 이 경우 그 수요를 변호사 자격증을 갖는 로스쿨 졸업생이 충족시키고 일반 법대졸업생이 충족시키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나,

법과대학 및 로스쿨에서의 상법교육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것임.

* 기업취업에 대한 교수들의 진로지도 역량의 한계

개별기업에서 어떻게 사원을 선발하는가에 대한 교수들의 지식은 부족할 수 밖에 없음

교수들이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도는 이루어지지 않음

(4) 자격증트랙의 권장교과 구성과 상사법

* 수강과목

자격증의 취득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자격증의 취득에 필요한 과목의 수강을 권유함.

자격증은 다양하므로 자격증의 종류에 따라 사법학과 혹은 공법학과에의 진학을 권유하고,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각 학과에 개설된 관련 전공과목을 수강할 것을 권유함.

예) 세무사 등의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상법과목이 필요하고 수강을 권유함.

동시에 경영학 혹은 경제학의 복수전공 혹은 부전공을 개인적으로 권유하고 있음.

* 세무사 시험에서의 상사법의 위치
 시험과목9)으로서의 상사법의 위상

구 분	시 험 과 목	시험방법
제1차 시험	① 재정학 ② 세법학개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③ 회계학개론 ④ 「상법」(회사편)·「민법」(총칙)·「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포함) 중 택1 ⑤ 영어(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객 관 식 5지택일형
제2차 시험	① 회계학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② 회계학2부(세무회계) ③ 세법학1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④ 세법학2부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 제한법」,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주 관 식 논 술 형

* 노무사 시험에서의 상사법의 위치
 시험과목10)으로서의 상사법의 위상

구 분	시험과목[배점]	출 제 범 위	
제1차시험 (5과목)	필수 과목 (4)	①노동법(1) [100점]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직업안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근로복지기본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②노동법(2) [100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③민법[100점]	총칙편, 채권편
		④사회보험법 [100점]	「사회보장기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영어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선택과 목 (1)	⑤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100점]		

9)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 제2017-007호, 2017년 제54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http://www.q-net.or.kr/crf002.do?id=crf00201&gSite=L&gId=22>)

10)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 제2017-011호,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http://www.q-net.or.kr/man004.do?id=man00402&gSite=L&gId=05&BOARD_ID=Q001&ARTL_SEQ=5199203)

※ 노동법(1) 또는 노동법(2)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구분	시험과목[배점]		출제범위
제2차시험 (4과목)	필수 과목 (3)	①노동법 [150점]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②인사노무관리론 [100점]	
		③행정쟁송법 [100점]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
	선택 과목 (1)	④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100점]	
제3차시험	면접시험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평정사항

* 소결 : 경제학 등과 비교할 때 비중이 많이 떨어짐

4. 상사법 과목 교육내용의 수준과 특징

(1) 다른 전공, 다른 트랙에 있는 동일 과목의 교과내용

- 전공별 동일 수준 :

다른 전공이더라도 동일과목이면, 동일한 수준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함

예) 공법학과의 회사법

사법학과의 회사법

- 전공별 일반화 혹은 특화 :

전공별로 상사법 내용이 특화되는 경우도 존재

예)

공법학과 - 상법의 과목의 수가 적으므로 한 과목으로 좀더 넓은 영역을 커버함

공법학과 : 비즈니스법 ⊃ 사법학과 : 상법 총칙 외의 영역을 커버함

사법학과 - 형법의 과목의 수가 적으므로 형법 과목으로 좀더 집중함

사법학과 : 재산범죄론 ⊃ 공법학과 : 형법 각론 가운데 기업활동과 관련된 배임죄 기타 재산범죄에 집중하여 강의

- 트랙별로 동일과목의 내용을 다르게 하는가?
동일과목이라도 트랙별 수요에 상응하여 다르게 강의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트랙별로 분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동일 수준으로 강의

실제 : 강의수준의 통일이 어렵기 때문에 개별 교수에게 위임하는 상황

(2) 로스쿨에서의 상사법 교육 내용과 다른가?

법과대학에서의 상사법 교육내용이 로스쿨에서의 상사법교육의 내용과 크게 다른가가 문제되는데,

로스쿨에서의 상법교육을 성공적으로 수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상법을 교육하므로 로스쿨 교육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따라서 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3) 상사법 교과과정의 구체적 구성

앞의 교과과정 도표 참조.

5. 소결 : 홍익대 법대의 트랙별 발전전략에 따른 상사법 교육의 대응

1) 로스쿨 진학 활성화와 진로지도 강화

강조점은 학생의 수요 및 대외적 홍보시 활용이 극대화되는 “로스쿨 진학”에 맞추어져 있음

- (i) 교수들의 입장 : 우수한 학생들의 로스쿨 진학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음
- (ii) 학생의 수요 측면 : 로스쿨 진학 희망자의 증대
- (iii) 학교의 발전전략 측면 : 학교의 홍보 효과가 큰 로스쿨 진학을 권유

2016년 : 서울대 외 36 명

2017년 : 연세대 외 37 명 이상 (잠정집계)

2) 로스쿨 진학 활성화가 상사법 교육에 미치는 side effect

로스쿨진학 위주의 발전전략을 구사하는 경우, 로스쿨 진학을 위해 또한 로스쿨 입학 후 성공적인 로스쿨 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과목의 사전수강을 권유함.

-> 이러한 결과는 기본교과목이자 필수과목인 민법, 헌법, 형법 특히 민법의 강조로 나타나고
상사법 과목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함.

3) 대응방안 I : 경영대 학생들에 대한 상사법 수요 유지

물론 경영대학과 같은 법과대학 외의 상사법수요를 법과대학 상법교수가 담당하므로, 상법교수들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지는 않음.

하지만,

기업체의 취직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4) 대응방안 II : 자율전공학생들에 대한 법대전공의 장려

한편 법대생들의 기반인 학생수를 늘이기 위한 자구노력도 병행 : 자율전공학생들에 대한 진로지도와 법학과 선택 권유

자율전공학생들이 법대전공을 선택할 경우 법대생들이 늘어나고 이에 기반하여 법대가 발전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

권유수단 : 높은 로스쿨 진학률 등

“로스쿨 진학의 활성화”로 많은 자율전공학생들이 법학전공을 선택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

이 경우 개별적 면담시 변호사로서의 활동을 위해 “사법전공”을 권유하고 있음

Ⅲ. 홍익대학교의 경영대학 등에서의 상사법 교육수요와 교수방법

1. 경영대학, 경제학과에서의 상사법 수요 - 회계사 시험 등과 관련하여

경영대학의 상당수 학생은 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때문에 1차시험 과목인 상법 수요가 있음.
회계사 시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홍익대 경영대학은 기업법을 3학년 전공과목으로 개설하고 있음.

기업법 강좌의 개설은 경영대학에서 하지만, 강사섭외는 법대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법대의 상법교수들이 경영대생들을 위해 개설한 기업법 강의를 담당.

경영대의 기업법 강좌에는 경제학과 학생들도 많이 수강함.

2. 다른 단과대학에서의 상사법 수요

경영대학을 제외하고는 상사법에 대한 수요는 뚜렷하지 않음

따라서 경영대학을 제외하면 기업법과목을 독자적으로 개설하고 있는 대학은 없음.

(1) 창업을 원하는 학생들 : 주로 공대생

하지만, 경영대학 이외의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상사법 과목에 대한 수요는 있음.

예를 들어, 공대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 창업을 하려는 학생들은 상사법 과목의 수강욕구가 있음.

이들 학생들은 (i) 경영대학에 개설된 기업법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도 있지만, (ii) 법과대학에 개설된 상사법과목을 수강하기도 함.

한편, 홍익대 공대의 경우 공학인증과목으로 지적재산권법 수강이 활발한 편임.

(2) 문화 예술 경영 전공 : 미대생 등

홍익대에서는 융합전공으로서 문화예술경영학과를 설치하여 운영중

미대생들의 미술품경매시장 기타 예술과 법 과목을 필수로 수강하고 있는데,

상법 교수들이 담당하고 있음.

(3) 기업법무 변호사의 길을 원하는 학생들 - 로스쿨 진학과 관련하여

또한 부모님이 법조인인 경우 등 기업법무 변호사의 길을 원하는 개별적 학생들이 다수 찾아옴.

이들 학생들이 속한 단과대학은 인문대학, 사범대학 등 모든 단과대학이 망라됨.

이들 “용감한”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성취동기가 강한 경우가 많고,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며, 이들 가운데 다수가 변호사로서 기업법무에 관심을 갖는 학생임.

이들에 대해 사법학과의 복수전공을 권유하고 있으며, 졸업 후 로스쿨 진학을 권유함.

3. 자율전공학생 중 법과대학을 진학하려는 학생들의 수요

홍익대학교는 300명 정도의 자율전공학생을 모집하는데

지금까지의 경향은 경영대학을 자기 전공으로 정하는 경향이 강하였음.

하지만, 최근 법과대학 학생들의 로스쿨 진출이 활발해 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변호사에 대한 꿈을 갖는 자율전공학생들의 비율이 서서히 늘고 있음.

이에 따라 법과대학을 자기 전공학과로 정하는 학생들이 서서히 늘고 있음.

예) 재작년 2명에서 작년 26명으로 증가

이들 학생 가운데 다수는 변호사로서 기업법무에 관심을 갖는 학생임

IV.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교에서의 상사법 교육 수요와 교수 방법에 관하여

1.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교에서의 상사법 교육수요와 대응방안

앞서 언급한 것처럼,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교에서도 홍익대학교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다른 단과대학에서 독자적인 상사법 교육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이러한 상사법 교육수요를 충족시키는 방법이 문제되는데, 각 단과대학 차원의 기업법 강의를 개설하고, 로스쿨의 상법교수들이 지원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됨.

2. 경영대학 혹은 경제학과에서의 상사법 수요

경영대학 혹은 경제학과와 같이 전공과 관련하여 상사법교육 수요가 큰 단과대학에서는 독자적으로 기업법 과목을 개설하고 또한 강사도 독자적으로 선임하여 수요를 해결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음.

하지만 경영대학 등에서 독자적으로 기업법 과목을 개설하는 경우에도, 강의지원은 로스쿨의 상법교수들이 담당하는 것이 보다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생각됨.

따라서 이러한 체제의 설정을 권고함.

3. 창업과 관련된 수요 : 공과대학에서의 상사법 수요를 중심으로

경영대학과 비교할 때 공대 등에서의 상사법수요는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창업을 위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경우, 창업과 관련해 상사법 수요가 있는 것은 분명함.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대의 어느 학부나 학과에서 개설되는 강좌가 아니라 공대 전체의 전공과목으로서 기업법을 개설하는 것도 한 방법임.

물론 강의 지원은 로스쿨의 상법교수들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한편, 기업법 강의와 병행하여 창업과 관련해 지적재산법 강의의 수요가 높음.

-> 따라서, 기업법강의와 지적재산권 강의를 어떻게 조합하여 수요를 충족시킬 것인가가 문제 될 수 있음.

V. 정리의 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의 대응방식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는 잘 모르겠으나, 취업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트랙별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음.

각 트랙 중 (i) 로스쿨진로트랙 및 (ii) 공무원트랙이 가장 활성화된 결과, 로스쿨진학을 위한 헌법, 민법, 형법 교육이 강화되고 상사법 교육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음.

마찬가지로, 공무원시험에서 필수과목으로서 중요한 행정법 등은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교과목으로서 활성화되고 있으나, 상사법과목은 주변과목으로서 활성화되고 있지 않음.

기업법무트랙은 현재 경제여건상 활성화되기 어려워 보이고, 활성화되는 경우에도 기업체에 서 상사법에 대한 강조가 약하기 때문에 상사법교과의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임

-> 기업체의 legal risk, 특히 회사법상 risk 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필요함.

한편 경영대학 등에서의 상사법교육 수요는 항상 존재하므로 법과대학 외에서의 수요를 창출하는 노력을 계속 하여야 할 것임.

학부 상사법 교육의 발전방향

- 홍익대학교의 경험을 중심으로 -

최 한 준*

1. 학부 법학과의 전반적인 위기감

- 현재 각 대학들이 ACE (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 사업, PRIME (Program for Industrial needs-Matched Education) 사업, LINC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사업 등에 선정됨에 따라 취업강화 내지 산학 연계형으로 대학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부 법학과가 없어지거나, 로스쿨로 인해 존재감이 약해진 학부 법학과의 정원이 감소됨.
- 졸업학점이 130학점으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수강생들이 한 학기에 수강신청하는 전공과목의 수가 축소됨. 이에 따라 설강기준인원 미달로 폐강과목이 늘어남.
- 전공필수 과목의 확대를 학교 당국이 반대하는 경향이고 오히려 축소를 권장하는 입장임. 입학시의 전공 외에 복수전공, 부전공, 자기주도전공(융합전공), 프로그램전공,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일학습병행제) 등 학점 이수의 다양한 형태가 존재함.
- (학교마다 구체적인 상황은 다르지만) 대략 학부 법학과 학생 중 반 정도가 전공심화과정을 선택하므로, 나머지 학생들은 대략 50학점 내외(3학점 기준으로 17과목 정도)만 이수하면 법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음.
- 4학년의 취업준비로 인해 각종 연습과목의 경우 설강이 거의 불가능함.
- 학교 당국의 학부 법학과에 대한 입장은, 학부 법학과가 로스쿨과 차별화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폐과시키거나 다른 전공과 합하여 새로운 전공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 (예를 들어,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법학과를 합쳐서 공공서비스학과 등)
- 학부 법학과 교수의 정년퇴임시 미충원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순천향대학교 법학과(상법, 엔터테인먼트법 담당)

2. 학부 법학과 상법 전공의 매우 심각한 위기감

- 현재 학부의 상사법 교육은 학부 법학과의 위기상황 가운데 가장 심각함.
- 공무원의 선호도가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공법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음.
- 같은 사법이라도 민법은 기본적인 일반법이므로 그 존재감은 어느 정도 유지됨.
- 상법은 로스쿨에서 배워야 할 특별법이라는 인식이 점차 커지고 있음.

3. 학부 상법교육의 발전방향

(1) 총론적 입장

- 학부 법학교육 특히 상사법교육은 로스쿨과의 차별화된 전략속에서 활성화될 수 있음.
로스쿨은 디테일하고 심도깊은 전문법학의 방향으로,
학부 법학과는 기초적이고 글로벌하고 흥미있게 그리고 잠재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서 대중법학, 실용법학, 교양법학의 방향으로 (발표자의 아래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음)

로스쿨에서의 상사법 교육 내용과 다른가?

*법과대학에서의 상사법 교육내용이 로스쿨에서의 상사법교육의 내용과 크게 다른가가 문제되는데,
로스쿨에서의 상법교육을 성공적으로 수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상법을 교육하므로 로스쿨 교육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따라서 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 상법과목의 외연확장에 대한 발표자의 아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함.

경영대학 등에서의 상사법교육 수요는 항상 존재하므로 법과대학 외에서의 수요를 창출하는 노력을 계속 하여야 할 것

(2) 각론적 입장

- 기존의 상법총론(상법총칙, 상행위), 회사법, 어음법, 수표법, 보험법, 해상법, 상법연습, 상법특강의 체계를 탈피할 필요
- 학생들이 상법일반론 과목을 이수하게 한 후, 민법 및 기타 법분야에 흥미로운 내용의 상법적 색채를 입힌 글로벌한 과목을 개설하여 수강하게 함 (예 : 소비생활과 법, 경제생활과 법, 지식재산과 법, 영상물 속의 금융사건¹⁾ 등)

1) 예를 들어, MBC 법정드라마 『개과천선』(2014년, 한국)은, 'KIKO 사건', '동양그룹 부실CP(기업어음) 사건', '진로-골드만삭스 매각 분쟁' 등 최근의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의미있는 금융사건에 관한 법리들을 흥미롭

- 글로벌한 전략의 실익 : 수준만 조금 낮추면 교양강의로의 전환도 가능함.
- 사법학입문 등과 상법과 민법을 통할하는 과목을 개발하여 담당할 필요.
- 타과에서 법학 과목이 필요할 경우 상법적 색채를 많이 가미하여 과목 개설²⁾
(아래와 같은 흥대의 사례는 좋은 아이디어)

문화 예술 경영 전공 : 미대생 등

흥익대에서는 융합전공으로서 문화예술경영학과를 설치하여 운영중
미대생들의 미술품경매시장 기타 예술과 법 과목을 필수로 수강하고 있는데,
상법 교수들이 담당하고 있음.

- 로스쿨에서는 시도하기 어려운,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교육, PBL (Problem-Based Learning), flip learning (거꾸로 학습) 등의 새로운 교육방법을 도입.³⁾ 특히 상사법 교육에 있어 PBL은 기업현장에서의 실무를 반영할 여지가 많음.

4. 결론

- 상법적 바탕 위에, 단계별 인식변화의 필요성

商法學 교수 → 私法學 교수 → 法學 교수 → 社會科學 교수 → 大學 교수

-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학부 법학과 상법담당 교수로서의 정체성에 관한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현실의 트렌드에 맞추지 않으면 점차 상법교육의 활성화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직시하여 신규과목개발 등의 노력 등으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타 전공분야에 비해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 현재의 위기가 미래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음.

계 다루는 좋은 작품이다.

2) 최한준, “엔터테인먼트법의 의의와 상법적 속성”, 『橫川 李基秀先生 停年紀念論文集(世界化時代の 企業法)』 (2010) 참조.

3) 최한준, “법학교육방법의 새로운 접근”, 『안암법학』, 제37호 (2012), 안암법학회 참조.

제4세션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 변호사시험

천 경 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 변호사시험

천 경 훈*

I. 서 설

(1)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 이후 그 순기능과 부작용에 관해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선발과정에서의 공정성이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고, 등록금이 과다하다거나 장학금 지급 비율이 당초 약속에 미치지 못하다는 점 등도 반복하여 문제로 제기되었다. 물론 이들 문제도 법률가 양성 제도의 안착과 사회적 신뢰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들에 가려서 오히려 더 근본적이고 어찌 보면 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의 문제, 즉 교육의 내용·방식과 그 질에 관한 문제이다. 사법시험을 대체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가장 큰 취지가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양성”에 있음을 고려하면, 이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교육성과를 좌우하는 내생변수로는 교원의 자질·열정, 효과적인 교과과정, 학생들의 자질·적극성, 교육시설과 기자재 등이 있을 것이고, 외생변수로는 사회경제적 수요 등이 있을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이에 더하여 변호사시험이라는 강력한 외생변수가 존재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근본적으로 교양교육 기관이 아닌 전문가양성 기관이어서, 졸업해도 변호사 시험에 불합격하여 법률가 자격을 얻지 못한다면 修學의 의미가 미미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은 물론 교수들도 변호사시험의 성패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변호사시험의 난이도, 내용, 형식 등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교수방법, 학습태도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¹⁾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박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이론교육과 실무교육”, 저스티스 제151호 (한국법학원, 2015), 342면.

(2)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는 이미 많은 선행연구가 발표되었다. 이러한 논의 중에는 (i)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당초 도입취지를 더 강하게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²⁾, (ii)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을 단일한 법률가 배출 통로로 하는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되 법학부의 병행적 부활 등 보완조치를 제안하는 입장³⁾, (iii) 법학전문대학원 이외의 법률가 선발제도의 병행을 주장하는 입장⁴⁾, (iv) 법학전문대학원의 폐지와 사법시험 존치를 지지하는 입장⁵⁾ 등이 모두 발견된다.

변호사시험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현행과 같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만 응시를 허용하는 변호사시험 자체가 위헌이라는 견해⁶⁾부터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여 더 쉽게 출제할 것을 주장하는 견해⁷⁾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관하여도 다양한 견해가 발표되었다.⁸⁾ 출제방식 및 문항구성에 관하여도 공법⁹⁾, 형사법¹⁰⁾,

-
- 2) 예컨대 김창록, “한국 로스쿨의 의의와 과제 - ‘로스쿨 시스템’을 로스쿨답게 만들어야”, 저스티스 제146-2호 (한국법학원, 2015.2.), 190-228면 (로스쿨 시스템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총입학정원 제도의 폐지와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용되고 있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주장함).
- 3) 예컨대 박찬운, “영국 법학교육의 현실과 그것이 한국 로스쿨 교육에 주는 함의”, 저스티스 제159호 (한국법학원, 2017), 398-428면 (로스쿨 체제를 유지·발전시켜 나가되 로스쿨을 설치한 대학에도 법학부를 부활하여 법학교육의 충실화를 도모하자고 제안함).
- 4) 예컨대, 곽창신·박영준, “한국 법조양성시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39권 제4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349-392면 (기회균등을 위하여 사시 존치 또는 일본식 예비시험 신설 등 로스쿨을 통하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5) 예컨대 이호선, “현행 로스쿨 운영 및 성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과 그 시사점”, 법과 정책연구 제15집 제2호 (한국법정책학회, 2015), 497-531면 (최선의 방안은 로스쿨의 폐지와 정원 2,000명의 사법시험으로의 전면 복귀이나, 현실적 대안은 사법시험을 존치시키고 소형 로스쿨들이 갖고 있는 정원 550명을 사법시험 정원으로 받아서 법학사들만 응시토록 하는 것이라고 함).
- 6) 김민섭, “현행 변호사시험법의 위헌성”, 법학논총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51-81면 (변호사시험법은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위헌 무효라고 함).
- 7) 진흥기, “변호사시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법조 제60권 제3호 (법조협회, 2011), 237-269면 (변호사시험은 응시자를 줄 세우기 위한 시험이 아닌 부적격자를 탈락시키는 시험이 되어야 하고, 변호사시험에 얽매인 교육은 지양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김창록, 전개논문도 같은 취지이다.
- 8) 자격시험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한 위 각주 7의 논문 외에, 김용섭,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의 현황과 과제”, 저스티스 제142호 (한국법학원, 2014), 188-214면 (입학정원 75퍼센트라는 합격기준 대신 일정 점수를 넘으면 합격시키는 절대평가제도를 도입하되, 그 절대평가의 기준은 최근 3-5년간 입학정원의 60-80% 범위 내에서 커트라인의 평균치로 정하여 상대적 요소를 반영하자고 제안함).
- 9) 이종수, “변호사시험의 방법과 범위: 공법의 경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제3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2012), 81-128면 김용섭,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의 바람직한 출제방향”, 법학연구 제53권 제3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285-309면; 박종보, “변호사시험에서 헌법판례의 출제방식”, 법학논총 제31집 제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283-308면; 정재황, “변호사시험의 공법형의 개선방안”, 세계헌법연구 제21권 제3호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15), 1-38면.
- 10) 원혜옥,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시험의 출제방향”, 형사법연구 제23권 제3호 (한국형사법학회, 2011), 413-428면; 김재봉,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시험의 출제방향”, 형사법연구 제23권 제3호 (한국형사법학회, 2011), 429-452면; 이호중,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문제에 대한 검토”, 형사법연구 제23권 제3호 (한국형사법학회, 2011), 467-476면; 김태명, “변호사시험제도의 개선방안 - 형사법 시험내용과 방법을 중심으로 -”,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제3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2012), 33-80면; 차정인,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통합사례형 문제 출제방향”, 법학연구 제53권 제3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335-364면; 윤태석,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의 출제 방향에 관하여”, 법조 제719호 (법조협회, 2016), 310-334면; 이창현, “변호사시험에서의 형사법 선택형 문제의 적합성 연구: 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시험의 1책형 21문과 40문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39권 제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협의의) 민사법¹¹⁾, 상사법¹²⁾, 선택과목¹³⁾ 등 과목별로 기존 문항을 분석하고 타당한 출제방향을 제시하는 다수의 선행연구가 발표되었다.

다만 개별 과목의 문항 분석을 넘어, 이제 6회까지 실시된 변호사시험이 실제로 어떠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경향이 학생들의 학습태도, 행동양식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도 좀 더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러한 영향이 당초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에 과연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해 냉철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변호사시험이 ‘상법’ 학습 및 교육에 미치는 영향”조차도 변호사시험 전체를 분석해야 이해할 수 있다. 학생들은 매우 한정된 시간을 여러 과목의 시험 준비에 분배하므로, 예컨대 헌법 공부에 투입하는 시간의 한계생산이 상법 공부에 투입할 경우보다 높으면 그 시간에 헌법을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달리 말하면, 학생들이 상법 공부에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어떤 방식으로 상법을 공부하는지는 궁극적으로는 변호사시험 전 과목이 어떻게 출제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도 상법과목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변호사시험 전반을 조감하여 그것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¹⁴⁾

(3)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는 당초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취지에 비추어 정당한가”라는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당시의 교육목표와 이상을 회고하여 원래의 지향점을 재확인하고(II), 현재 제6회까지 실시된 변호사시험의 현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몇 가지 경향성을 도출한다(III). 이러한 변호사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분석하고, 당초의 교육목표와 이상에 비추어 이를 평가한다(IV). 마지막으로 몇 가지 개선방향을 간략히 언급한다(V).

법학연구소, 2015), 187-205면; 이창현,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시험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외법논집 제40권 제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313-332면.

11) 지원림, “변호사시험의 방법과 범위: 민사법의 경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제3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2012), 1-32면; 이연갑, “변호사시험과 민사법 교육 - 민사법 기록형 문제를 소재로”, 법학연구 제53권 제3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311-333면; 이진기,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민법 사례형의 예시적 분석과 평가”, 민사법학 제76호 (한국민사법학회, 2016), 269-301면.

12) 전형배, “변호사시험과 상법 교육방법론”, 저스티스 제118호 (한국법학원, 2010), 277-303면; 최준선, “변호사시험과 상법교육의 방향”, 상사법연구 제30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 2011), 175-197면.

13) 김인재, “전문법률 과목의 정상적 교육을 위한 변호사시험제도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18집 제2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267-298면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시험의 폐지와 전문법률 과목의 학점 이수제의 도입을 제안함); 유사한 취지로, 임성권·이미현,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적정성”, 법학연구 제18집 제3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117-142면.

14) 즉 구체적인 상법 출제 문항의 분석, 상법 내 여러 과목 간의 적정한 문항수와 출제비율의 제안, 바람직한 상법 문제유형의 제시 등은 이 글의 목적이 아니며, 이에 관하여는 이번 학술대회 발표문을 비롯한 다른 분들의 후속 연구를 기대하기로 한다.

Ⅱ.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목표와 이상

1. 사법개혁의 일환으로서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도입되었으므로, 그 교육의 목표와 이상을 이해하려면 13년에 걸친 사법개혁의 대장정을 일별할 필요가 있다.¹⁵⁾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기성 법조계가 드러낸 문제점에 대한 비판과 반성에서 비롯된 사법개혁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3년의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시작으로, 19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으로 이어졌다. 노무현 정부에 들어선 2003년에는 대법원 산하에 사법개혁위원회가 설치되어 1년 이상 사법개혁의 기본방향을 논의한 후 2004년 말에 사법개혁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였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해나갈 기구로서 2004년 말에 국무총리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왕성한 활동과 방대한 결과물로 사법개혁의 피날레를 장식한 기구라 할 수 있다. 2005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국선변호제도 개선, 범죄피해자보호 강화, 공판중심주의 강화, 양형제도 개선, 국민참여재판 실시, 군사법원과 군검찰 중립성 강화, 변호사 윤리 강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방대한 분량의 개혁방안을 의결하였다. 의결사항 중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만 해도 25개에 달한다.¹⁶⁾

법조인 양성 문제는 이러한 사법개혁 논의의 단골 주제였다. 최초의 사법개혁기구인 1993년 사법발전위원회에서는 이 주제가 등장하지 않았으나, 19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는 ‘법률서비스 및 법학교육의 세계화’라는 주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졌고, 3년 또는 4년의 학부교육에 이어 3년간의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한국형 전문법과대학원’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1999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사법연수원을 2년제 한국사법대학원으로 전환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미국 로스쿨에 훨씬 근접한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즉 학부에 법학과를 두지 않은 대학교에 한하여 3년제 대학원 과정으로 운영하는 구조는 노무현 정부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마련되었다.

이처럼 기존의 법조인 양성제도가 사법개혁의 대상으로 빠짐없이 논의된 이유는 무엇인가? 기존의 법조인 양성제도는 “경쟁률이 매우 높은 사법시험을 통해 소수정예의 예비법조인을 선발하여,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엄격한 실무교육을 시킨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제도는 ① 법조인의 실무능력을 기본 수준 이상으로 균질하게 유지할 수 있고, ② 이로 인해 사법제도 운용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으며, ③ 무엇보다도 모든 응시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여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법률가가 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공정성을 달성하는 등 무시할

15) 사법개혁을 위한 다양한 추진기구의 변천과정에 관한 설명으로는 김선수, 사법개혁리포트, 박영사, 2008, 10-27면.

1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김선수, 상계서, 28-40면.

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다양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표 1>은 사법개혁위원이었던 김선수 변호사의 <사법개혁리포트>에서 당시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도의 문제점으로 기술한 것을 요약한 것이다.¹⁷⁾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들 문제점에 대한 일종의 반명제로서 제시된 것이므로, 당시 사법개혁 추진론자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문제로 인식하였는가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취지를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표 1> 과거 법률가 양성제도의 문제점

1. 법학교육의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학교육과 법률가 양성이 단절되어 법학교육이 표류하고 법과대학이 고시학원화함 ② 대학법학교육 파행화의 결과 경쟁력 있는 전문법조인의 부족을 초래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법률 수요에 부응하지 못함 ③ 상당수 대학이 영세한 규모와 미흡한 학사관리, 낮은 전공과목 이수학점 등으로 인하여 내실 있고 다양한 법학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④ 법조인 양성교육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함
2. 사법시험제도의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법시험은 원칙적으로 법률가 자격시험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판검사 채용시험의 성격으로 운용되어왔음 ② 응시자격 및 응시횟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과다한 응시생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 있는 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③ 법학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대학교육에까지 파행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 법학교육 이외의 인문교양 및 전공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선발된 법조인이 응용력,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점 ④ 1차 시험의 경우 객관식 시험만으로 미리 정해진 정원에 맞추어 합격자를 선발하는 데 치중하여 지엽적인 암기식 문제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
3. 사법연수원 제도의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법연수생 1,000명 중 700명이 변호사로 개업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재정적인 부담으로 변호사를 양성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 ② 유일한 법률가 양성 교육기관으로서의 사법연수원은 실무가를 위한 연수기능과 법률전문가로서의 소양을 위한 일반 교육기능이 혼재되어 있고, 실무가 중에서도 판검사를 위한 연수에 치우쳐 있다는 점 ③ 사법연수생들의 판검사 선호경향으로 말미암아 사법연수원이 또다른 고시학원하고 있고, 교육내용과 대다수 수료생의 진로가 불일치하며, 법원 및 검찰실무에 치우쳐 국제화, 전문화된 법조인을 충분히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④ 법조인들끼리의 동류의식 및 폐쇄적 집단의식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

사실 사법개혁의 긴 기간 동안 법조인양성제도에 대한 비판의 중점은 그때그때 차이가 있었다. 19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는 법조인들이 사법시험에 매달리느라 외국어 실력 등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주된 문제로 제기되었던 반면, 2003-2004년 사법개

17) 김선수, 상계서, 88-89면.

혁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는 전관예우를 가능케 하는 토양으로서의 획일성·폐쇄성이 더 큰 주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법개혁위원회에서는 이런 종래의 문제점이 모두 논의되었고, 이것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전문법) 제2조의 교육이념에 반영되기에 이른다.

2. 법학전문대학원법의 교육이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원안에 터 잡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전문법) 제2조는 그 교육이념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

미사여구를 모아놓은 느낌이 없지 않지만 대체로 다음 요소들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라는 인성적 측면이다. 이는 종래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지식인에게 요구되는 교양과 인문적 소양을 쌓을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다년간 시험 준비에만 몰두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만 이는 새로운 제도에 의하여 양성되는 법률가가 교양과 인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이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자체에서 반드시 교양교육과 인성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사람의 일반적인 발달 단계에 비추어 보면 ‘교양 및 인성’은 대학원 단계에서 새삼스럽게 많은 시간을 들여 교육할 사항이라기보다는, 중등교육을 거쳐 학부 졸업에 이르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즉 이 요소는 고등교육을 마친 학부 졸업생을 상대로 전문대학원에서 법학을 교육하기로 결단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 물론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압축된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교양 및 인성적 측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이라는 가치관적 측면이다. 이것은 법률가로서 가져야 할 근본적인 신념 내지 가치관에 관한 것으로서, 물론 그 바탕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에 형성되겠지만, 그 완성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위 첫째 요소인 일반적 ‘교양 및 인성’과는 다소 구분된다. 이를 위해서는 실정법에 대한 법리 학습과 아울러, 법철학·법제사 등의 기초법학을 통한 근본적 문제에 대한 고민의 기회, 리걸클리닉·법률봉사 등을 통한 예비법률가로서의 자기 정체성의 발견 등이 중요할 것이다.

셋째, “건전한 직업윤리관”이라는 윤리적 측면이다. 이를 위해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1학년 법조윤리 과목이 법정 필수과목으로 부과되어 있고 법조윤리 시험에 통과해야 변호사시험 응

시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를 통해 윤리관을 비약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현재의 법조윤리 시험은 변호사법 및 각종 하위규정에 대한 기계적인 암기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진정한 윤리의식의 함양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 그보다는 법학전문대학원 3년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직업윤리에 관한 주의를 환기하고, 스스로 이를 고민하고 깨우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좋은 롤 모델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이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은 거의 이 요소만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법적 분쟁의 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은 다시 다음 요소들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신속히 이해하고 요약 또는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 (ii) 사실로부터 쟁점을 파악하는 능력, (iii) 법리, 즉 조문, 학설, 판례에 대한 지식, (iv) 법리를 조사하고 기존 법리가 없는 영역에서 새로운 법리를 유추하는 능력, (v) 법리를 사실에 적용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리적이고 건전한 추리력, (vi) 고객 또는 당사자의 말을 잘 듣고 말과 글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소통능력, (vii) 이 모든 과정을 다른 사람과의 협업을 통해 원만히 이루어내는 리더십 내지 협동심.

이상과 같은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고 그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이상적인 모습이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훌륭한 실력과 열정을 가진 교원, 양질의 교재, 교원에 대해 신뢰를 갖고 배움에 응하는 우수한 학생이 모두 불가결한 존재가 된다. 또한 실정법의 철저한 교육과 기본 법리의 암기, 실정법의 이면에 위치한 대립되는 법이념에 대한 근본적인 재음미, 적나라한 인간상이 만들어내는 분쟁에 대한 현실적 인식, 엄밀한 분석능력, 유연하고 전략적인 사고, 기존 판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비판력 등을 담아내는 교과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교원, 교재, 교과과정이 모두 다 갖춰진다고 해도 변호사시험이라는 강력한 외생변수에 따라 그 교육의 내용과 질은 매우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법학전문대학원 3년 과정을 졸업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법률가로서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여 “3년 積功이 徒勞”인 형국이 되기 때문이다. 이 강력한 외생변수의 현상에 관해 절을 바꿔 살펴본다.

Ⅲ. 변호사시험의 분석

1. 현행 변호사시험의 형식과 범위

현행 변호사시험은 공법, 형사법, 민사법, 선택법의 네 영역에서 기록형, 선택형, 사례형의 3가지 유형(선택법은 사례형만 출제됨)으로 실시된다. 사법시험 1차에서 평가했던 선택형, 사법시험 2차에서 평가했던 사례형, 사법연수원 1년차 시험에서 평가했던 기록형을 한꺼번에 나흘 동안 치르는 형태이다. <표 2>는 과목별 배점, <표 3>은 시험 일정을 보여준다.

〈표 2〉 변호사시험 과목별 배점

	공법	형사법	민사법	선택과목
선택형	100	100	175	-
사례형	200	200	350	160
기록형	100	100	175	-
계	400	400	700	160
총계	1660			

〈표 3〉 변호사시험 시행 일정¹⁸⁾

시 험 일 자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험 과목	오 전		오 후	
		시간	문형(배점)	시간	문형(배점)
제1일	공법	10:00-11:10	선택형(100점)	13:30-15:30	사례형(200점)
				17:00-19:00	기록형(100점)
제2일	형사법	10:00-11:10	선택형(100점)	13:30-15:30	사례형(200점)
				17:00-19:00	기록형(100점)
제3일	휴 식 일				
제4일	민사법	10:00-12:00	선택형(175점)	14:30-17:30	기록형(175점)
제5일	민사법 ·선택법	10:00-13:30	민사법 사례형 (350점)	16:00-18:00	선택법 사례형 (160점)

공법에서는 헌법과 행정법을, 형사법에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민사법에서는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 민사소송법, 상법(총칙, 상거래법, 회사법, 어음수표법, 보험법)을 다룬다. 선택과목으로는 현재 국제법, 국제거래법, 세법, 노동법, 환경법, 경제법, 지적재산권법 등 7개 과목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 범위는 〈표 4〉와 같다.

18) 제6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에 따른 것으로서 제1회 때부터 큰 변동 없이 실시되고 있다.

〈표 4〉 선택법과목 출제범위¹⁹⁾

과목	출제범위
국제법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국제거래법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노동법	사회보장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포함한다.
조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지적재산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으로 한다.
경제법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환경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및 「환경분쟁조정법」으로 한다.

이상을 사법시험과 비교해 보면 시험 범위는 오히려 늘어났다. 종래 사법시험 2차 시험의 7개 과목(민법, 헌법, 형법,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사법시험에서는 1차 시험에서 선택형으로만 출제되었던 선택법이 사례형으로 출제된다. 또한 사법시험에 없던 기록형 시험이 도입되면서 기록형의 소재가 되는 형사특별법, 민사특별법, 개별행정법령 등이 대거 출제범위에 들어갔고, 특히 형사특별법²⁰⁾의 수험상 중요성이 매우 커졌으며, 사법시험에서 범위에 속하지 않던 민사집행법도 사실상 포함되게 되었다.

2. 현행 변호사시험의 유형별 검토

(1) 선택형

선택형은 공법, 민사법, 형사법 모두 판례나 법조문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가 주종을 이룬다. 특히 정답에 관한 시비를 피하기 위하여 판결요지 또는 법조문을 그대로 옮겨 놓은 지문들과 조금씩 틀리게 옮겨 놓은 지문을 섞어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고르게 하는 문제가 많다. 따라서 거의 모든 문제에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최근의 선택형 문제들은 옳은 진술의 조합 또는 옳지 않은 진술의 조합을 고르도록 하거나, 다섯 개의 진술 중 옳은 것 또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도록 하고 있는 유형이 많다. 그 진술의 출처는 대부분 조문 또는 판례(판결요지)이다. 즉 조문 또는 판결요지를 그대로 옮기거나, 약간

19) 2016.9.22. 법무부 제6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참조. 역시 제1회 시험부터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20)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단속법 등이 그 예이다.

변형하거나, 고의로 틀리게 변형한 진술들을 제시하고, 이들 중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도록 묻고 있다.

(2) 사례형

사례형은 공법, 형사법, 민사법 1500점 중 절반인 750점을 차지하고 있어 그 비중이 가장 높다. 사법시험과 같은 7법 체제가 아니라 3법 체제로 출제과목을 변경한 데에는 실체법과 절차법, 헌법과 행정법, 민법과 상법 등 과목 간 융합출제가 바람직하다는 사고가 깔려 있었고, 특히 사례형이 그와 같은 융합출제의 모범을 보여 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 단계에서 과연 무리해서 융합출제를 시도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지 의문이 있을뿐더러, 실제로 그것이 달성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민사법의 경우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의 융합출제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의 경향을 보면 사례형 1문과 2문은 민법을 주로 하되 민사소송법 쟁점을 다룬 소문항이 섞여 있고 3문은 상법, 그 중에서도 회사법을 위주로 하여 출제되고 있다. 다만 제6회 시험의 경우 3문에서 상법총칙, 상행위 편의 쟁점도 출제되었다.

이처럼 설문 단위로 '융합'의 외관을 추구하다보니, 여러 분야의 법을 포함시키기 위해 다수의 '소문항'이 등장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표 5>는 제1회부터 제6회까지 실시된 사례형 문제의 소문항 수와 문제의 글자 수²¹⁾를 정리한 표이다. 이에 의하면 민사법 사례형은 3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이를 구성하는 소문항의 수는 15→17→19→20→25→21개로 제6회에서 다소 완화된 것까지는 매년 증가하였다. 공법과 형사법도 각 2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소문항의 수는 7개(제6회 공법)에서 13개(제6회 형사법)에 이른다. 제5회의 경우 민사법 사례형 25 문제에 210분이 배정되었으므로 소문항당 8.4분이 주어진 셈이고, 공법 11 문제와 형사법 12 문제에 배정된 시간은 각 120분이므로 소문항당 공법 10.9분, 형사법 10.0분이 주어진 셈이다.

소문항이 늘어나다 보니 문항도 대체로 길어지는 추세이다. <표 5>에 나온 제1회와 제6회 시험 사례형 문제의 글자 수를 비교해보면 민사법(5,876자→6,993자), 형사법(2,148자→3,045자)은 크게 늘어났고, 다만 공법은 제6회에서 오히려 줄어들었다(1,755자→1,393자). 글자 수의 합계는 제3회에서 정점을 찍은 후로는 오히려 다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11,000내지 12,000자에 달한다.

21) 총괄 지문과 사례, 개별 소문항을 모두 통산하였으며 띄어쓰기는 포함하지 않았다.

〈표 5〉 변호사시험 회차별 글자 수 및 소문항 수

물음		1회(2012)		2회(2013)		3회(2014)		4회(2015)		5회(2016)		6회(2017)	
		글자 수	문항 수	글자 수	문항 수	글자 수	문항 수	글자 수	문항 수	글자 수	문항 수	글자 수	문항 수
민사법	1문	1,770	7개	3,293	9개	3,302	10개	3,512	10개	2,604	13개	3,442	10개
	2문	2,933	5개	2,526	4개	3,156	6개	1,450	6개	2,332	6개	2,222	6개
	3문	1,173	3개	1,419	4개	1,108	3개	1,183	4개	1,432	6개	1,329	5개
	계	5,876	15개	7,238	17개	7,566	19개	6,145	20개	6,368	25개	6,993	21개
형사법	1문	888	4개	1,034	5개	1,280	5개	1,017	5개	958	4개	1,260	5개
	2문	1,260	6개	1,380	4개	954	4개	1,182	6개	1,785	8개	1,785	8개
	계	2,148	10개	2,414	9개	2,234	9개	2,199	11개	2,743	12개	3,045	13개
공법	1문	845	3개	894	5개	1,329	5개	977	5개	1,072	4개	750	3개
	2문	910	9개	1,414	5개	1,248	6개	702	5개	1,236	7개	643	4개
	계	1,755	12개	2,308	10개	2,577	11개	1,679	10개	2,308	11개	1,393	7개
계		9,779	37개	11,960	36개	12,377	39개	10,023	41개	11,419	48개	11,431	41개

(3) 기록형

기록형은 공법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서, 행정소송에 관한 소장 및 집행정지신청서 등을 작성하게 하고, 민사법의 경우 소장, 반소장, 준비서면, 검토의견서 등을 작성하게 하며, 형사법은 사건에 관한 검토의견서, 변론요지서, 항소이유서 등을 작성하게 한다.

이러한 시험용 기록들은 수많은 실체법, 절차법적 쟁점을 집어넣어서 실제 동일 분량의 사건 기록에 비하여 훨씬 법리적 쟁점이 많은 “인위적 쟁점과다형” 기록의 형태를 띠고 있다. 특히 민사법의 경우 통상적인 서증만으로는 충분히 많은 쟁점을 포함한 복잡한 분쟁을 한정된 지면에서 표현해 내기 어려우므로, 변호사와의 상담록 또는 당사자 간의 내용증명 우편에서 각종 쟁점을 포함한 분쟁의 스토리와 당사자의 주장을 서술하는 방식을 즐겨 사용한다. 그러다보니 기록형 시험이 사실상 주요 법리에 관한 지식을 묻는 사례형 시험과 비슷해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공법 및 형사법 기록의 경우에도 유사한 현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민사법 기록형 시험은 “가능한 한 패소하는 부분이 없게 하라”는 단서를 달고 있어, 피고 등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항변, 재재항변까지 미리 고려하여 마치 판결문의 주문을 작성하듯이 승소가 확실한 범위로 청구를 최소화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가지는 문제점에 관하여는 후술한다.

3. 현행 변호사시험의 장점

후술하듯이 현행 변호사시험에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현재까지 치러진 변호사시험은 하나의 뚜렷한 성과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평가결과가 상당히 정확하고, 특히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학업 성과와 상당히 높은 동조 현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필자가 재직하는 서울대의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불합격 여부와 학교 성적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았다. 특히 3년 통산 성적보다 3학년 학교 성적과의 상관관계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i) 3학년이 되면 법학 선행학습 효과가 사라져서 오히려 진정한 법학실력은 3학년 성적과의 관련성이 높고, (ii) 3학년생들이 주로 수강하는 실무연습과목²²⁾들은 정해진 시험 범위의 지식을 암기하는 것으로 대처하기 어렵고 종합적 응용 능력을 요구하는 점 등이 그 원인으로 추측된다.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없지만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도 변호사시험 합격/불합격 여부는 학교 성적과 매우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이 정설로 보인다. 이는 변호사시험 선발결과가 우연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3년의 교육과정 동안 그 학생이 보여준 성취를 잘 반영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²³⁾

그 이유는 무엇일까? 변호사시험이 짧은 시간에 매우 다양한 요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하다 보니, 일종의 다면평가이자 대수의 법칙(rule of large number)이 적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민사법을 예로 들면, 70문제의 5지선다형 문제를 풀고, 장문의 사례형 문제 3개(소문항 기준으로 20-25개)를 풀고, 민사기록을 1권 검토하여 소장 등 실무문서 작성까지를 마쳐야 한다. 그러다 보니 합격할 실력을 가진 사람이 약간 실수한다고 불합격할 가능성도 낮고, 합격할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 운이 좋았다고 합격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물론 다른 가설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 및 정기고사가 변호사시험으로부터 강력한 영향을 받다보니 변호사시험과 정기고사의 동조화가 발생하고, 따라서 후자의 성과와 전자의 성과가 일치한다는 가설이다. 그런 측면도 있겠으나, 변호사시험과 평가내용과 방식이 전혀 다른 과목, 예컨대 보고서나 논문을 제출하게 하는 과목이나 기초법 과목 등에서 성과 역시 변호사시험 당락과 매우 관련성이 높아 보이는 점을 보면,²⁴⁾ 현행 변호사시험이 학업성취도를 상당히 정확히 평가한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종래 사법시험 체제의 문제로 지적되었던 정규 교육과정과 시험 준비의 분리 현상이 개선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²⁵⁾ 이는 결코 경시할 수 없는 현행 변호사시험의 큰 장점이다.

2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3학년 1학기에 헌법실무연습, 민사법실무연습, 2학기에 형사법실무연습, 행정법실무연습, 상사법실무연습을 개설하여 해당 법 분야의 쟁점을 개관하며 기록형 및 사례형 시험 대비를 겸하고 있다.

23) 물론 변호사시험을 잘 치를 수 있게 된 그 '성취'가 이들이 살아갈 시대가 요구하는 변호사로서의 자질을 잘 반영하는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24) 이에 관한 정량적 조사결과는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필자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학장으로 재직하면서 학점우수/저조학생들에 관한 자료 및 변호사시험 결과를 관리, 검토한 바에 의하면, 변호사시험 과목이든 그렇지 않은 과목이든 학교 교과과정에서의 성과가 변호사시험 결과와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5) <표1>의 1번 항목 참조.

4. 현행 변호사시험의 문제점

(1) 개관

그러나 현행 변호사시험은 심각한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우선 현재 출제 방식은 너무 많은 양의 정보를 얇고 넓게 암기하고 있을 것을 요구한다. 특히 정답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판례의 태도, 더 정확히는 명제로 요약된 판결요지를 절대시하다 보니, 법리적 견해의 차이와 미묘한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법학 및 법실무의 본질이 망각되고 있다. 현재의 기록형 시험도 결국 판결요지에 관한 지식을 묻는 시험으로 운용되고 있어 실제 변호사로서의 실무능력을 제고하는 데에 그리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출제 경향은 단편적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머릿속에 채워 넣는 학습태도를 야기하여 장기적 의미에서의 실무능력을 오히려 저하시키고, 인공지능 시대에 요구되는 법률가 상과는 반대 방향으로 유도할 위험이 있다.

(2) 피상적 지식의 과다한 암기

2016년 기준으로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생들은 변호사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몇 개 정도의 판례를 알아야(더 정확히는 요지를 암기하고 있어야) 할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 과목별 주요 수험서에서 사건일자와 번호가 언급된 판결의 수를 조사하였다. <표 6>은 과목별 판결례의 수이고, <표 7>은 조사의 대상이 된 수험서의 목록이다.

<표 7>에 나온 바와 같이 수험생들은 과목별로 수험서와 함께 최근 약 3년간의 판례를 정리한 이른바 ‘최신판례’라는 제목이 붙은 교재들을 많이 활용한다. 일반 수험서가 지금까지의 중요한 판례를 선별하여 수록한다면, 최신판례 교재는 최근 3년간의 대법원 판례를 거의 모두 수록한다.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불문하고 출제자의 입장에서 정답 시비를 피하면서도 기출문제를 피하려면, 최신 대법원 판결의 요지를 선택형 지문에 등장시키거나 그 사실관계를 활용하여 문항을 구성하게 된다. 이를 포착한 수험가에서는 사법시험 때부터 최신판례 특강 및 교재를 개발하여 왔다. 이 최신판례와 일반판례를 합하면, 발표자가 조사한 변호사시험 수험서에 판결번호가 언급된 판례만 해도 민사법, 형사법, 공법을 합하여 무려 12,581개에 달한다.

물론 수험서 수록 판례와 최신판례 중에 일부 중복이 있고, 어느 한 과목에 언급된 판례가 다른 과목에서 중복 언급된 경우도 있으며, 동일한 취지의 판시가 여러 판결례에서 반복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실제 학습해야 할 숫자는 이보다는 적다.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숫자는 충격적이고, 실제로 로스쿨 교수나 실무가들이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²⁶⁾ 더욱 심각

26) 특히 법학자들은 자신의 전공 분야만을 연구·교육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른 전공에도 많은 시간을 들여 공부해야 한다는 점을 잘 의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필자가 주위의 교수들에게 수험생들이 공부해야 하는 판례 개수의 추측치를 물었을 때에도 대체로 자신의 과목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정확한 수치를 제시했으나 전체 숫자는 그보다 훨씬 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 문제는 매년 새로운 판례가 나올수록 이 숫자는 끝없이 늘어갈 것이라는 점이다.

〈표 6〉 주요 수험서에 언급된 판례 수

구분	과목명	요약서판례	최신판례	합계
민사법	민법	2,887	673	3,560
	민사소송법	959	-	959
	상법	649	315	988
	민사법계			5,507
형사법	형법	2,766	365	3,131
	형사소송법	1,108	326	1,434
	형사법계			4,565
공법	헌법	1,364	395	1,759
	행정법	505	245	750
	공 법 계			2,509
총계				12,581

〈표 7〉 학습대상 판례 수 계산에 이용된 수험서 목록

구분	과목명	요약서 및 최신판례집
민사법	민법	박승수, 민법정리, 에듀비, 2016. 1. 1.
		윤동환, 최근 3년간 민법판례의 맥, 우리아카데미, 2016. 7. 19.
	민사소송법	이창한, 핵심정리 민소, 헬리오스, 2015. 11. 16.
	상법	김혁봉, 상법신강(14판), 여울, 2016. 4. 27.
이종모, 최근 3개년 상법 최신판례, 2016. 8. 1.		
형사법	형법	이용배, 팝형법, 우리아카데미, 2015. 12. 31.
		이용배, 최근 3년간 형법판례, 2016. 7. 13.
	형사소송법	정주형, 최종정리 형사소송법(제4판), 제이앤제이, 2016. 3. 18.
		정주형, 최근 3개년 형사소송법 판례 정리, 월비스, 2016. 7. 21.
공법	헌법	김유향,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2판), 월비스, 2016. 2. 22.
		선동주, 최근 3개년 헌법 판례 정리, 월비스, 2016. 7. 10.
	행정법	정선균, 행정법 엑기스(5판), 2014. 5. 17.
		박도원, 최근 3개년 행정법 판례 정리, 월비스, 2016. 7. 18.

이처럼 사례형만 해도 세 과목 합계 11,000자가 넘는 문제를 읽고, 읽는 시간과 쓰는 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소문항 당 10분 내외의 한정된 시간 내에, 세 과목 합계 45-50개의 소문항에 대한 답을 써내려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수험준비를 할 것인가? 학생들 입장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에 대비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가능한 한 짧고 간결한 명제를 많이 암기해서, 그때그때 논점에 맞춰 조건반사적으로 답안지에 쏟아 놓을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대립되는 입장의 논거를 비교·대조하고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은 어차피 소문항당 10분도 안 되는 시

간 내에 불가능하므로, 논점에 해당하는 피상적인 지식을 답안지에 쏟아 놓는 것이 수험생의 1차적인 목표가 된다. 물론 매우 우수한 극소수 학생들은 이러한 시간의 압박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논거제시와 추론을 간결하고 효과적으로 해내기도 하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이다.

이처럼 현행 변호사시험은 3년의 교육과정 동안 법학의 기초를 다지고, 사례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응용력을 키우며,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을 작성할 수 있는 기본적 실무 능력까지 닦을 것을 요구하면서, 그러한 능력의 평가를 위해 수천 개의 판결요지를 소재로 삼는 것이다. 이는 결국 학생들에게 법적인 사고를 연마하기보다는 판례요지를 얹고 넓게 암기하라는 메시지를 매우 강력하게 보내고 있는 셈이다.²⁷⁾

(3) 기록형 시험의 문제점

변호사시험에서 기록형을 출제하고 평가하는 취지는, 교육과정이 지나치게 이론에 치우쳐 실제로 이러한 법지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둔감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향후 각자가 진출한 영역에서 실무적인 법률문서 작성 능력을 함양할 기초를 다지게끔 돕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이 앞으로 작성해야 할 법문서는 실로 다양하다. 판결문, 소장, 준비서면, 공소장, 불기소장, 변론요지서 등 종래 사법연수원에서 교육하던 문서는 그 예일 뿐이고, 그 외에도 각종 의견서, 보고서, 신청서, 계약서, 프리젠테이션 자료, 서신, 규정안, 법률안, 고소장, 탄원서 등등 이들이 수행하게 될 영역에 따라 수없이 다양한 유형의 문서가 있는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러한 개별 문서작성 능력 배양에 집중할 여유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오히려 이들이 다양한 직역에 진출하여 그 직역에 특유한 문서작성 방식을 빨리 익힐 수 있는 기초 실력을 다져주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고, 기록형 출제의 취지도 이러한 교육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기본적인 리걸마인드와 논리적 추론능력, 문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한 유형의 문서작성 능력을 단시일 내에 함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변호사로서의 실무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려면 본안소송 외에도 가처분, 중재, 조정, 수사, 감사, 상담 및 자문, 행정청에서의 각종 절차, 국회에서의 입법절차, 기업인수합병, 경영권분쟁, 사내 변호사로서의 준법시스템 구축 등 실로 다양한 국면에서 다양한 문서작성이 필요하지만, 기술적인 작성 방식은 그때그때 선례를 참조하면 되므로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쟁점을 파악하는 센스, 독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소통능력, 독자를 설득하는 논리와 문장력이다. 오히려 과거의 기재례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창조적인 업무 추진을 방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법무사 등 인접직역에 비해 변호사가 가지는 탄력성이라는 장점을 퇴색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27) 민사법에 관하여 같은 문제의식으로 이진기, 전계논문, 299-300면 (세세하게 분화된 질문사항은 법률제도와 법이론의 본체에 대한 이해가 없이 즉답을 위하여 길러진 '잔 법률가'의 양성에나 적합할 것이라고 함).

이런 점을 고려하면 변호사시험에서 기록형이 필요한지에 관해 의문이 있을 뿐 아니라, 현재의 요구수준과 배점은 과도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변호사시험 기록형에서 “사법연수원 1년차 수준”의 기안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판검사 내지 송무변호사로서의 업무능력을 갖춰 주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였던 사법연수원의 교육 목표와 변호사로서의 소양을 기반으로 사회 각계각층에 진출하여 법치주의의 확산에 기여하는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목표의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다고 본다. 오히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기술적인 문서작성 능력은 각자 진출한 영역에서 선례를 참조하거나 별도 교육을 통해 추가로 익힐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사법연수생 수준의 기안 능력을 요구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 의도한 다른 교육목표의 희생을 가져올 수 있다. 예컨대 변호사시험에서 상대방의 잠재적인 항변, 그에 대한 재항변 등을 미리 감안한 복잡한 청구취지 작성 능력을 평가한다면 수험생들은 유형별 청구취지 기재례를 암기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는 3년의 한정된 교과과정이 의도하는 다른 목적을 희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²⁸⁾

더구나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되는 기록에는 같은 분량의 실제 사건기록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수의 법리적 쟁점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분쟁 양상과는 매우 다른 “인위적 쟁점과다형” 기록이라 부를 수 있다.²⁹⁾ 사법연수원 교육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였던 “인위적 쟁점과다형” 기록의 효율적인 처리 능력은 단기간 훈련으로 일시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기술적 능력에 불과하고, 실제 실무능력으로 직접 이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이것이 3년이라는 짧은 교육과정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한정된 교육과정상 이러한 능력의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면 필연적으로 다른 교육이 부실해지는 trade-off 관계가 있다. 따라서 기록형에서 과도하게 많은 쟁점을 포함시키는 출제방식은 피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³⁰⁾

또한 현재 민사법 기록형 시험은 “가능한 한 패소하는 부분이 없게 하라”는 단서를 달고 있어, 피고가 제기할 수 있는 항변, (그에 대한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피고의) 재재항변까지 미리 고려하여 마치 판결문의 주문을 작성하듯이 승소가 확실한 범위로 최소화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28) 실무적으로도 복잡한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에는 각종 실무편람 등의 책자를 참고하고 선례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것이 통례이고, 자신이 암기한 기재례를 믿고 작성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29) 형사법에서 이에 관한 지적으로, 이창현, 전제논문(형사기록형), 331-332면 (현재 변호사시험에서의 기록형 시험은 법률규정과 다양한 법리에 대한 평가를 위주로 하는 바람에 기록형 시험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2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많은 쟁점을 요구하는 것은 자제해야 하고, 법률규정과 법리 등은 기본적으로 사례형이나 선택형시험에 맡기고 기록형 고유영역에 적합한 문제를 계속 개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30) 기록형 시험을 어렵게 출제할 경우, 학생들은 기껏 공들여 마련한 특성화 과목을 비롯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과정은 소홀히 하고 기재례 암기에 골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로서 전통 송무 영역 이외의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독려해야 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을 다시 송무 영역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전통적인 송무 영역의 포화상태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차피 당장의 기안능력을 배양함에 있어서는 사법연수원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장점을 발휘하지 못하고 어설픈 연수원 흉내 내기에 그치게 될 위험도 크다.

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이에 대해 피고는 (...) 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 등과 같이 상대방이 할 항변을 청구원인에서 미리 언급하여야 그 부분에 할 당된 배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출제 및 평가방식은 채점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사법연수원의 판결문 작성실 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판사 선발시험이 아닌 변호사시험에서의 기록형이 이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물론 변호사가 증거와 법리로 뒷받침되지 않는 주장을 일삼는 것도 큰 잘못이지만, 아직 제기되지도 않은 상대방의 항변은 물론 ‘그에 대한 가상적인 재항변에 대한 상대방의 가상적인 재재항변’까지 감안하여 딱 승소할 만큼만 청구하는 것은 변호사의 직무를 다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변론주의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소송실무와도 전혀 다르다.³¹⁾ 공법 기록형 문제에서 소의 적법성에 관한 부분을 소장에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응시자의 법적 분석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나, 실제 변호사가 작성하는 소장과는 거리가 있다.³²⁾ 이런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면 굳이 기록형이 아닌 사례형으로도 족할 것이고, 기록형이라도 소장보다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4) 수기시험의 비효율성

수험자와 채점자의 입장에서 사소하지만 심각한 또 하나의 문제는 사례형, 기록형의 방대한 답안을 극히 짧은 시간 내에 “손으로” 작성하고, 그 손 글씨를 읽고 채점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아기부터 컴퓨터 등 전산기기를 다뤄온 요즘 수험생들은 긴 문장을 손으로 쓴 경험도 드물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따라서 이들의 글씨는 매우 느리고 약필이어서 판독이 어려울 뿐 아니라, 평소 사용하지 않던 근육부위를 급격히 사용함에 따라 관절염 등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이들이 변호사시험 이후 실무에서 손으로 긴 글을 쓸 일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손 글씨 쓰기 훈련이 이들의 장래에 일말의 도움이 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럼에도 엄청난 양과 속도의 손 글씨를 요하는 현행 평가방식 하에서 수험자와 채점자 모두 무용한 스트레스와 비효율에 시달리고 있다.

이 점은 미국 등에서 이미 10여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컴퓨터 입력방식 시험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이미 15-20년 전부터 많은 대학과 변호사시험 당국이 수험용 소프트웨어(이를 실행하면 답안작성을 위한 간단한 워드프로세서 화면이 열리고,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컴퓨터 내외부의 모든 정보에의 접근이 차단됨)를 사용하여 중간, 기말고사 및 변호사시험을

31) 같은 취지: 박준, 전계논문, 344-345면 (이는 오히려 재판실무와 유사하고 실제 소장과는 큰 차이가 있는 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하도록 하므로 학생들에게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함). 실제로 필자는 변호사들로부터 “왜 요즘 신입변호사들은 소장을 쓸 때 상대방이 할 얘기를 미리 다 쓰는가?”라는 불평을 여러 번 들었다. 이에 대해 “폐소하는 부분이 없게 하라”라는 기록형 시험 지침의 영향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하면,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변호사실무와는 동떨어진 지침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32) 박준, 전계논문, 345면.

치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험생들이 각자 지참한 컴퓨터에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할 수도 있고, 관리기관에서 수험용 컴퓨터를 단기임차하여 시험장에서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는 변호사시험이 손 글씨를 요구하므로 학교에서의 중간, 기말고사도 손 글씨로 실시되고 있는데, 변호사시험이 컴퓨터 입력방식으로 바뀌면 학교에서의 중간, 기말시험도 바뀔 수 있을 것이다.

IV. 현행 변호사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영향

변호사시험의 이와 같은 경향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것은 압축적 교육과정과 압박적 변호사시험의 존재로 인해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기본적인 법 지식을 상당히 신속히 익힌다는 것이다. 발표자가 재직 중인 서울대의 경우 학부 시절의 법학과와 법학전문대학원을 비교하면, 최상위층 학생들의 수준에는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학부 과정이 더 우수했던 면이 있으나, 중하위권끼리 비교하면 법학전문대학원생이 우수하다는 것이 교수들의 일반적인 평가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대부분의 과목에서 결석하는 학생이 드물 정도로 출석율이 높고, 3학년 2학기에 이르면 60-70% 이상의 학생들이 사례형 문제에서도 그럴듯한 수준의 답안을 작성해낼 능력을 보유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임을 고려하면 이것은 결코 가볍게 보지 못할 중요한 성과이다.

2. 부정적 영향

그러나 다른 한편 현행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서 변호사시험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것들과 일맥상통하지만 다시 언급해 본다.

(1) 피상적 지식 암기에의 치중

학생들이 기존 지식의 피상적 암기에 치우치다보니 근본적으로 깊게 사고하는 습관 및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소홀해진다. 실제로 짧은 시간에 답안지에 표현해 낼 수 있는 내용은 매우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와 같이 현출할 수 있는 짧은 명제 위주로 법을 이해하고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는 변호사시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시험으로 평가를 하는 체제

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으로서 사법시험에서도 존재하였던 한계이다. 그러나 사법시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던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재고를 요한다. 오히려 사법시험보다 변호사시험의 사례형 문제가 더 길고 더 많은 논점(소문항)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역설적으로 학생들은 더 피상적이고 더 안전지향적인 학습으로 대응할 우려가 있다.

(2) 판례의 무비판적 수용

이와 관련된 문제로서, 판례에 대한 무비판적 추종 현상, 더 정확히는 ‘판결요지’를 절대시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이 역시 변호사시험에 특유한 현상은 아니고 사법시험 시절, 특히 판례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정답 오류로 쟁송이 벌어지던 2000년대 초반부터 심화되어 온 현상이다.

원래 판례라는 것은 해당 사실관계에서 내려진 판결이 어느 정도 축적되어 일반적인 법리로 형성된 것을 의미하고, 개개의 판결은 어디까지나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선언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른바 “판례”라고 일컬어지는 판결요지를 명제처럼 암기하여 다른 사안에 적용하는 데에는 극도의 주의를 요한다. 사안에 따른 차이를 감별해 내고, 기존 판례 법리의 규범적 의미를 음미하여, 다른 사안에서의 기계적 적용을 자제하는 것이야말로 수준 높은 법률가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고, 아주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이 더 몸값이 높은 변호사들의 특징이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의 압박에 시달리는 학생들은 판례를 비판하거나 판례와 다른 견해는 ‘공부’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치부하게 된다. 수업 과정에서 판례의 이면을 들여다보려는 진지한 시도에 동참하는 학생의 수는 여전히 적지 않기는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초기보다는 줄어들고 있다. 오히려 개별 판례의 특수한 사정에 주목하거나 유사 판례와의 차별성을 분석하는 등 깊이 공부한 학생이 판결요지만을 외운 수험생들보다 답안작성에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³³⁾ 이러한 학생들의 태도를 비난하기도 어렵다.

판결요지를 절대시하는 것은 판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판례법 국가로 불리는 영미의 경우 교육과정에서 판례를 주된 학습소재로 삼아 사실관계와 주요 쟁점 등을 검토하지만, 판결요지를 암기의 대상으로 삼아 평가하는 예는 드물다. 예컨대 미국에서도 변호사 시험 준비 과정에서는 학교 교과과정과 달리 암기할 사항들이 늘어나지만, 합격에 요구되는 지식의 양이 한국 변호사시험에 비교할 수조차 없이 적어서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시험 준비 전체를 끝낼 수 있고, 선택형 문제조차도 판례의 입장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추론에 해당하는 선택지를 고르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판례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습성이 익혀질 겨를이 없다.

결국 현재의 변호사시험은 판례법 국가에서도 전례가 없을 정도로 판례를 맹신하는 특이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³⁴⁾ 그리고 이는 학습자들의 시야를 현행 대법원 판결에 국한시키고, 새로

33) 이진기, 전제논문, 296면.

운 사건을 만났을 때에 사건의 본질을 음미하기보다 기존의 판결요지에 끼워 맞추려는 매우 나쁜 실무 습관을 기르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실무적”이지도 않다.

(3) 변시 과목 위주의 학습 편향

학생들이 변호사시험 과목에 치중하게 되면서 다양한 선택과목이나 심화과목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고, 이런 경향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감소 및 성적 공개와 맞물려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초법을 비롯한 이른바 비변시과목은 폐강 위기에 몰려 있다.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은 서울대에서도 학생들의 변시 과목, 실무과목 쏠림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서, 졸업학점 150학점 중 전공필수 학점³⁵⁾과 변호사시험 대비를 위해 과반수가 수강하는 학점³⁶⁾을 제외하면 실제로 학생들이 변호사시험과 무관하게 선택하는 과목은 매우 적다.

물론 이른바 변시 과목인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은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법이므로, 한정된 교육기간 동안 이들 과목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만 이들 과목에 관하여는 수천 개의 판결요지를 외울 정도로 많은 양을 학습하면서 다른 법 과목에 관하여는 들어본 적도 없고 기본적인 개념조차 알지 못한다면 균형을 잃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변호사시험의 영향 하에 놓인 현재의 수강 및 학습 패턴 하에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민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 약 3,500개, 헌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약 1,500개를 학습하면서도, 변호사시험에서 해당 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한 저작권/특허권, 소득세/법인세, 단체협약/취업규칙, 공익채권/회생채권, 준거법 등의 개념도 모른 채 졸업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대부분 학교의 교과과정에서 법학개론이 사라지고 법철학, 법제사 수강생도 줄어들면서 법실증주의와 자연법,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 관습의 법제화와 외국법의 계수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의 기회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이론으로서의 법학의 약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실무능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고 본다.

34) 이진기, 전계논문, 272면은 이런 현상을 비판하여 “영미법계보다 더 영미법스러운 보통법계국가와 보통법교육”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강단을 점령하였다고 하는데, 문제의식에는 동의하지만 이러한 판결요지 추종적 태도는 보통법적인 것도 아니고 영미법적인 것도 아니라고 생각된다.

35) 서울대의 경우 공법 1, 2, 3, 민법 1, 2, 3, 민사소송법, 형법 1, 2, 법정 필수과목 5과목 (법률정보의 조사, 법조윤리, 법문서작성, 모의재판, 법무실습) 등 32학점의 전공필수 과목이 있고, 이에 더하여 기초법(로마법, 법사상사, 법사회학, 법인류학, 법정정책학, 법철학, 한국법제사, 법경제학) 1과목을 반드시 수강해야 하므로 35학점의 필수학점으로 운영된다.

36) 서울대의 경우 민법 4, 민사재판론(민사소송법 2에 해당),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헌법소송법, 행정구제법, 행정절차법, 회사법, 상거래법(상법총론과 어음수표법에 해당), 민사재판실무, 형사재판실무, 검찰실무 1, 임상법학, 민사법실무연습, 형사법실무연습, 헌법실무연습, 행정법실무연습, 상사법실무연습 등이 수강비율이 높다.

(4) 궁극적인 실무능력의 약화

위와 같은 현상, 즉 피상적인 암기, 판례 요지의 절대시, 맹목적인 기재례 암기, 다양한 선택 과목의 배척 등은 장기적으로 졸업생들의 실무 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는 물론 과거에도 변호사의 실무능력이 단순히 기존 판례를 맹종하고 기존 기재례를 답습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쟁송업무를 하는 이른바 송무변호사는 “때로는 기존 판례의 부당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새로운 판례를 만들 수 있는 개방적 사고”를 해야 하고, “소송이 아닌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창의력”을 갖춰야 한다.³⁷⁾ 쟁송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즉 이미 발생한 분쟁의 해결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이나 거래를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조언하거나 입법·정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리와 판례에 대한 지식과 분석력에 추가하여 대안과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개방적 사고와 창의성”을 필요로 한다.³⁸⁾ 이런 것들이 모두 진정한 실무능력이다.³⁹⁾

더구나 판례와 법령 등 수많은 법률정보를 손쉽게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게 된지 이미 오래되었고,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는 법률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의 폭발적 성장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파편적 법지식 자체보다 법의 기초이론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 메타지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법률실무 자체가 법적 지식의 활용보다는 현명한 조언 내지 전략 제공으로 무게를 옮겨갈 수밖에 없다.⁴⁰⁾ 그런데 앞서 본 변호사시험의 경향은 정확히 그 반대방향으로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유사 사안에 적용될만한 판례와 조문을 찾아내는 작업은 앞으로 인공지능이 가장 먼저 인간을 대체할 분야라 할 수 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판결요지와 조문을 암기하더라도 정보의 검색(search and retrieval) 영역에서는 인공지능에 도저히 승산이 없으므로, 장래의 법률가는 인공지능과 다른 국면에서 경쟁해야 한다. 그 ‘다른 국면’으로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① 인공지능의 앞단에서 인공지능을 설계하고 인공지능에게 주어질 과제와 정보를 설정하는 역할과 ② 인공지능의 뒷단에서 인공지능의 작업물을 자연인인 정보이용자에게 잘 설명하고 전략적으로 조언하여 현명한 결정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인공지능으로 대체 가능한 분야에서 직접 경쟁할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서비스 생산과정의 도구로 사용하는 지위를 점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하려면 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쟁점을 인지하고 적확

37) 박준, 전계논문, 324면.

38) 박준, 전계논문, 324면.

39) 박동진,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방향”, 저스티스 제124호 (한국법학원, 2011), 47면의 다음 진술도 참조: “법의 기초이론에 대한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무교육을 강조하면 단순한 기술적 능력만 교육하게 될 여지가 많다. 오히려 이는 유능한 법조인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인 창의적인 법적사고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

40) Richard Susskind, *Tomorrow's Lawyers - An Introduction to Your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2013에서도 법률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예측하며 미래의 법률가 교육은 법률지식의 전수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흡수하고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탄력성을 길러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 고객의 정서와 수요를 정확히 이해하는 공감능력, 인공지능의 작업물을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어 전달할 수 있는 구두 및 문서상의 소통능력, 인공지능의 작업물을 포함한 정보에 기대어 전략적으로 직접 판단하거나 고객의 판단을 도울 수 있는 판단력 등이 더욱 중요한 능력으로 부각될 것이다. 미래세대 변호사들, 특히 엘리트 변호사들의 진정한 '실무능력'은 판례를 많이 암기하고 관행대로 법률문서를 기안하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능력이 될 것이다.

이러한 쟁점 인지력, 공감능력, 소통능력, 판단력을 3년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서 획기적으로 신장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나, 적어도 이런 능력을 저해하거나 위축시키지는 말아야 한다. 그러나 끊임없이 머릿속에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의 교육과 학습, 10,000여 개의 판결요지를 의문 없이 외우는 방식의 학습은 이런 능력의 함양을 오히려 방해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적어도 일부 과목에서라도 생각거리와 시간을 주고 스스로 무언가를 고민하게 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현재의 변호사시험은 그럴 시간적, 정신적 여유를 완전히 갖아갈 수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학생들의 미래 경쟁력을 해치는 것은 아닌지 모두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발표자가 업무상 경험한⁴¹⁾ 영미권 변호사들 중에는 외국법은 물론 자국법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부정확하지만, 쟁점 인지력, 추리력, 소통능력, 리더십 등을 발휘하여 고객의 신뢰를 얻고, (자기보다 법을 더 많이 아는) 다른 여러 나라의 변호사들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지휘하는 고부가가치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조문과 판례를 더 많이 아는 아시아와 유럽 각국의 '우수한' 변호사들이, (극히 미세한 자신의 전문분야 이외에는) 실제법적 지식은 떨어지는 영미 로펌 파트너 변호사의 아웃소싱 내지 하도급 사업자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았다. 실제로 이러한 영미 로펌 파트너들은 금전적으로도 압도적인 보수를 받았고, 그러면서도 고객의 신뢰를 얻었다. 그들의 법률지식이 덜 완벽하고 법률가 특유의 논리에 덜 젖어있다는 점이 오히려 고객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프로젝트를 이끌고 소통하는 힘이 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다.

물론 그들이 누리는 영향력은 세계 비즈니스의 공용어가 영어라는 점, 영미법 자체가 가진 영향력, 영미 로펌의 오랜 전통과 시스템 등에 힘입은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 그들의 (법지식이 아닌) 자유로운 사고와 거리낌 없는 소통력도 인상적인 경우가 많았다. 그들 이상으로 활개를 치며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을 우리가 너무 많은 지식과 선례와 기재례로 질식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41) 발표자는 약 10년 4개월간 서울의 대형로펌에서 회사자문, 기업인수합병, 독점규제 등의 실무에 종사하였는데, 주로 외국 고객의 업무를 많이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영미 및 유럽의 우수 로펌 소속 외국 변호사 및 국내외 회사들의 사내변호사들과 협업하는 경험을 많이 가졌다.

3.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목표와의 관련성

여기서 다시 한 번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조를 본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라는 인성적 측면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새로 교육할 사항이라기보다는 학부교육을 정상적으로 마친 이들에게 법학교육을 함으로써 달성되는 가치라고 보았다(II. 참조). 변호사시험이 너무 어렵고 경쟁적이 되면 법학전문대학원 지망생들은 그들이 초·중·고교 때 익숙했던 방식대로 학부 때부터 사교육 등을 통해 법학 선행학습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학부과정에서 독서, 교우, 사회봉사 등을 통해 인성을 연마한 후에 본격적으로 법학공부를 하도록 한 당초의 취지를 퇴색시키게 될 것이다.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이라는 가치관적 측면 및 “건전한 직업윤리관”이라는 윤리적 측면은, 학생들에게 훌륭한 법조선배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좋은 역할모델을 제시하고, 리걸클리닉, 실무수습 등을 통해 각자 고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II. 참조). 발표자 개인적으로도 사법연수원 시절 온라인 법률상담 활동⁴²⁾, 검사직무대리로서의 수사 및 사체부검, 구치소 접견을 포함한 국선변호와 민사조정 등의 활동에 참여하면서, 인간의 적나라한 본성과 법의 의미에 관해 고민했던 기억이 있다. 요컨대 공부 외의 활동을 통해 전문을 넓힐 기회와 여유가 있어야 가치관과 직업윤리관을 다듬을 수 있을 터인데, 변호사시험의 부담이 너무 커지면 그런 기회에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기 곤란해질 것이다.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과 관련하여 현행 변호사시험은 짧은 시간 내에 학생들이 기본 법과목의 주요 법리와 판례를 습득하게 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큰 공헌이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전통적인 송무를 넘어 사회 각계에서 법치주의를 확산시키는 일을 하는 데에 필요한 문제인식력, 소통능력, 리더십 등을 계발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특히 기존 판례를 무비판적으로 암기하는 학습태도를 일반화시킴으로써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능력을 오히려 퇴화시키는 면은 없는지 우려된다.⁴³⁾

42) 1995년 3월 10명의 26기 사법연수생이 모여 당시 PC통신 하이텔에서 ‘사법연수생 열린마당’이라는 이름으로 공공기관 최초의 온라인 법률상담을 시작하였다.

43) 같은 취지: 박준, 전계논문, 343면 (“변호사시험 준비에 과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면, 실제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건에 부딪혀 전문성과 열린 사고를 기초로 사건을 분석하고 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파악하여 균형 잡힌 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교육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셈이다.”)

V. 결어: 몇 가지 제안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현행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학교육에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는 면도 있지만 경시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이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당초의 도입 목표에서 동떨어진 모습으로 왜곡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근본적으로 시험에 대한 우리 사회의 맹목적 신앙이 유지되는 한 변호사시험이 법학교육을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현상은 해소하기 쉽지 않을 것이고, 사회 전체적으로 충분한 신뢰자본이 축적되지 않는 한 ‘공정하고 어려운’ 시험에 대한 갈구는 쉽게 달래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서나마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여 사소하면서도 가능한 것 중심으로 몇 가지 개선방향을 생각해 본다.

(1) 일단 변호사시험에서 요구되는 조문과 판례의 암기량을 지금보다 훨씬 줄여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근본적인 내용을 똑바로 이해하고 있으면 잡다한 지식을 잔뜩 암기하지 않고도 풀 수 있는 문제, 다른 한편 근본적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판례를 많이 외우고 있더라도 풀기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여야 할 것이다. 발표자의 경험으로는 그렇게 출제하더라도 하위권을 가릴 수 있는 정도의 변별력은 충분하다고 본다.

(2) 암기할 판례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서, 필수판례 또는 중요판례를 과목에 따라 일정 수 지정하여 판례의 내용 자체를 묻는 문제는 그 범위에서만 출제하는 방안(“중요판례 지정제”)을 제안한다. 민·상사법은 물론 형사, 행정, 헌법까지 1만개가 넘는 판례를 암기하는 현재의 시험 준비 방식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소모적이다. 중요판례 지정제는 학생들이 법률문제를 피상적인 판결요지의 암기 및 적용으로 치환하여 논리적인 추론을 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오히려 학생들의 장기적인 실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이외의 판례는 실무 또는 연구를 하면서 찾아보면 족하다.

(3) 선택형의 경우 판례에 관한 지식을 묻는 문제에서 벗어나 출제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사후적인 관점에서 객관자적 지위에서 답을 고르도록 하는 지금의 문제유형 외에 예컨대 (i) 대립되는 두 견해를 제시하고 각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를 고르게 하는 문제, (ii) 사안을 제시하고 그 사안에서 특정 당사자가 승소하기 위해 취할 견해나 논거를 고르게 하는 문제 등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문제유형이 개발되면 중요판례 지정제를 실시해도 충분히 실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다양한 직역에서 활동할 변호사 양성이라는 새로운 제도의 취지에도 더 부합할 것이다.

(4) 이를 위해서는 특히 선택형의 경우 수준 높은 다수의 문제 풀을 평소에 구성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명망 있는 실무가와 교수들에게 충분한 시간과 대가를 제공하고 출제를 의뢰하여 풍부한 문제 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매년 시간에 쫓겨 문제를 만들다보면 어쩔 수 없이 조문 및 판례 위주의 출제에 의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교수들이 판결요지 위주의 출제 방식에 찬성하지 않으면서도 실제로는 그와 같은 출제에 이르게 되는 것은 축적된 양질의 문제와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 그런 한계 내에서는 판결요지를 그대로 문제화해야 정답 시비가 없다는 점 등에 기인한 것인데, 충분한 문제 풀이 마련된다면 이러한 문제가 다소 완화될 것이다.

(5) 사례 및 기록형의 경우 한 문제에서 다루는 쟁점 내지 소물음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때로는 10개도 넘는 쟁점을 억지로 하나의 사안에 우겨넣어 비현실적이거나 모순된 사실관계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출제자는 짧은 시간 내에 여러 쟁점에 걸쳐 응시자들의 지식과 이해도를 테스트해 보고 싶은 유혹을 느끼기 마련이나, 이런 출제방식은 출제자의 의도처럼 학생들이 여러 쟁점을 성실히 공부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여러 쟁점을 “아는 것처럼 보이도록” 유도하게 된다. 이런 학습태도가 일반화되면 아는 것인 양 현출하는 기술은 증가하는 반면, 현실에서 실제 쟁점을 만났을 때 끝까지 분석해내는 힘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이것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와 상반됨은 물론이다.

(6) 기록형을 지금과 같은 비중과 형식으로 유지할지는 심각한 재고를 요한다고 본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미래의 변호사들이 작성할 문서의 종류는 그가 진출하는 직업에 따라 실로 다양할 터인데, 그 중 특정한 몇몇 문서의 작성요령을 3년의 교육과정에서 익히도록 하여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게 지엽으로 흐르는 일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앞서 보았듯이 현재의 기록형은 실제로 있기 어려운 ‘인위적 쟁점과다형’으로서 오히려 학생들의 현실감각을 해하는 측면마저 있어 보인다.

(7) 마지막으로 사례형 및 기록형은 컴퓨터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손 글씨 작성에 따른 수험생과 채점자의 무용한 수고를 덜어줄 필요가 있다. 뉴욕주처럼 각자 위험 부담 하에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에 수험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가져오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주무부서에서 응시자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당일 임대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 변호사시험

윤 영 신*

- 변호사시험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념에 비추어 해결책을 제시함. 특히 변호사시험에 대해 실증적 분석을 함으로써 문제 제시가 특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음.
- 변호사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관계
 - 변호사 시험의 난이도, 형식, 내용 등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 영향을 미침
 - 변호사시험에 영향을 받은 교수 및 학습방법을 무시할 수 없어 역으로 다시 변호사시험에 영향
 - 변호사시험의 개선에서부터 법학교육의 정상화
- 변호사시험 개선방향
 - 현재 변호사시험이 방대한 양의 정보를 얇고 넓게 암기할 것을 요구하고, 판결요지를 절대시하다 보니, 법리적 견해 차이와 미묘한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법학 및 법실무의 본질이 망각될 수 있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
 - 로스쿨제도 도입 취지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념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음. 즉, 리갈마인드를
 - 법학교육 다양화를 위해
- 선택형 문제 개선방향
 - 판례에 관한 지식을 묻는 문제는 판례요지의 무비판적인 수용의 심각한 문제가 있음. 판결요지를 절대시하다 보니, 법리적 견해 차이와 미묘한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결론이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달라질 수 있다는 법학 및 법실무의 본질이 망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매우 적절하고, 여
기서 벗어나 출제 방식을 다양화 할 필요성 있다는 점 동감함. 필수판례 또는 중요판례
지정제를 실시하고 기본적 능력 측정 시험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사문제
출제에 대한 전향적 태도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 융합문제 출제방침 때문에 불필요하게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문제가 출제되는 결과 지양

○ 사례형 문제 개선방향

- 사례형 문제는 문항수 및 쟁점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함.

· 논리적 추론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점수가 정하여지기보다는 하나의 쟁점에 관하여
샘플 답안을 길이 별로 2-3개를 미리 외워 두었다가 최대한 신속하게 쏟아내는 학생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현실임.

- 쟁점제시형 설문의 문제

· 최근 변호사시험 사례형은 쟁점제시형이 많음.

· 쟁점제시형은 채점의 공정성을 기하기 쉽고, 하나의 쟁점을 놓친 경우 점수편차가 너무
많이 나는 복불복적인 요소가 적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작 실무에서 중요한 쟁점파악
능력을 측정할 수 없음.

· 또한 쟁점제시형 문제가 앞에서 말한 논리적 추론력과 무관하게 반복연습을 통한 조건
반사적 답안작성 문제를 심화시킴.

· 쟁점을 파악하는 문제, 어느 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를 구
성하라는 형식의 문제 등 문제 유형의 변화 필요함.

- 시험시간 조정

· 융합출제를 위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을 2시간 30분에 걸쳐서 시험을 실시함.

· 답안작성의 과목별 시간배분이 득점의 결정적 요소가 되어서는 곤란함. 상법은 사례형
에서 융합문제가 출제되고 있지 않고, 그 필요성도 크지 않으므로 시험을 분리하여 실
시하는 방안 검토필요.

○ 기록형시험

- 기록형 시험의 현재 요구수준과 배점이 과다하는 점에 동의

- 판결문 작성의 시각에서의 접근을 지양할 필요 있음

○ 변호사시험 과목 이외의 법학과목 학습

- 변호사시험 대비 학습부담이 너무 커서 변시 과목 이외의 법학과목 수강하지 못하는 현상
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음

- 선택과목 시험을 조정하거나 시험 대신 과목 수강을 요건으로 하는 등의 개선방향이 있을 수도 있으나, 어떠한 방식이건 왜곡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변호사시험의 과도한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임.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 변호사시험

정 응 기*

천경훈 교수님의 발표문은 실증적이면서도 면밀하고 신중한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발표문이야말로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법조인으로서의 미덕의 모범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합니다. 발표문에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 변호사시험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개선 방향의 제안 내용에 공감하면서 토론자의 의견과 소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실무에서 필요한 다양한 법률문서 중 특정한 몇몇 문서의 작성요령을 익히도록 하여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게 지엽으로 흐르는 일이므로 기록형 문제의 비중과 형식에 관하여 심각한 재고를 요한다는 발표자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덧붙여서, 상법 과목들이 기록형 문제에서 제외됨에 따라 학생들이 상법 공부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이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 비하여 축소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역할과 활동이 갈수록 중요하고 비중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관계를 다루는 상법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안은 발표자의 제안처럼 기존의 기록형 문제의 비중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 전에는 민사법 기록형 문제에 상법의 쟁점이 출제될 수 있도록 상법 교수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¹⁾ 물론 그 경우라도 상법의 지엽적인 쟁점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쟁점들을 중심으로 결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사례형 및 기록형의 경우 한 문제에서 다루는 쟁점 내지 소질문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타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실제로 기록형 문제에서 회사법의 쟁점(당사자를 주식회사로 설정하는 방법)이나 상행위법에 관한 쟁점(상행위의 특칙을 묻는 문제) 등이 작은 쟁점으로 결합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큰 쟁점이나 중간 정도의 쟁점으로 결합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당하다는 발표자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많은 쟁점이 결합된 비현실적인 사실관계를 만들어 내기 보다는 특정 쟁점을 풍부하게 분석하고 끝까지 검토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와 조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현재의 사례형 문제는 그에 부응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록형과 사례형 문제의 조화 또는 결합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1장짜리 사례가 아니라, 현재의 기록형 문제와 사례형 문제의 결합 또는 중간 형태로 하여 수페이지의 사례형 문제를 제시하고 양측의 주장가능한 논점들을 서술하고 검토한 후 본인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평가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3) 선택형의 경우에 발표자가 제시한 바와 같이, ① 암기할 판례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중요판례 지정제를 실시하고, ② 판례에 관한 지식을 묻는 문제에서 벗어나 출제 방식을 다양화하며, ③ 수준 높은 다수의 문제 풀이를 평소에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면 매우 좋다고 봅니다. 다만, 선택형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출제방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형의 경우에는 성질상 정답의 오류나 복수정답의 위험에서 자유롭기 어려워서, 기본적으로 법령의 내용과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묻는 문제 위주로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출제방식의 한계가 있는 선택형에서 좋은 문제들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기 보다는, 선택형의 변별력 또는 점수 차이를 줄이거나 과락제로 가는 방향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4) 위와 같은 출제방향과 아울러 선택형 시험의 시행 시기를 분리하여 2학년 과정이 끝난 후로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학년까지 공부하는 기초적인 내용을 선택형으로 평가하여 Pass/Fail 여부를 결정한 후, 3학년 과정에서는 판례의 결론의 단순 암기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논리적인 추론 능력 등 장기적인 실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부를 더 집중적으로 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선택형이 아니라 사례형 문제(또는 사례형과 기록형의 결합문제)로써 도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즉, 일단 조문과 판례의 기본적인 암기는 2학년 말에 선택형으로 평가하고, 근본적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판례를 많이 외우고 있더라도 풀기 어려운 문제는 현재와 같은 시기에 사례형으로(또는 일정기간 기록형과 함께) 평가하는 방안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방안은 현행의 시험방식 하에서도 큰 비용 없이 당장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5) 덧붙이자면 상법 분야의 판결례들은 그 나름대로의 고유한 쟁점에 관한 판단을 담고 있으므로 매우 지엽적인 판결이 아니라면 충분히 다양하게 많은 판례를 익힐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학생들은 실제로 단순히 판례의 결론을 암기하기 보다는 관련 쟁점에 관한 이론과

함께 공부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판례를 익히는 것 자체가 아니라 판례를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그치거나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저와 주변 친구들의 과거를 돌이켜 보았을 때에도 초심자들에게 일정기간 나타나는 현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공부가 깊어지고 실제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점차 극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는 전제에서, 학생들이 판결요지 중에서 한두 줄의 결론만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사실관계와 쟁점 및 그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살핀다면, 분명 초심자로서 당해 과목의 기초적인 법리를 생생하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법 분야에서 매년 새로운 내용의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서도 다른 과목에 비하여 기존의 판례를 익히는 것이 그리 큰 부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폭넓게 판례 사례를 공부하는 것의 중요성에 좀 더 강조점을 두고 싶습니다.

(6) 사례형 및 기록형을 컴퓨터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조속히 도입되기를 희망합니다.